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4310-01

농업인 관련 세계 개선을 위한 연구

2023. 2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업인 관련 세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2월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

연구진 명단

- 연구책임자
 - 조형태 교수(홍익대)

- 공동연구자
 - 김진태 교수(중앙대)
 - 차상권 박사(한양대)
 - 황선필 박사(홍익대)

<차례>

I. 서론	1
II. 제도검토	4
1. 국내세제	4
2. 해외세제	23
III. 문헌연구	38
1. 국내연구	38
2. 해외연구	44
IV. 전문가 인터뷰	48
V. 계량 분석	54
1. 타 직군의 자료 분석(국세청)	54
2. 농업인 자료 분석(통계청)	64
VI. 시사점	82
VII. 정책제언	94
VIII. 결론	101
<첨부1> 전문가 인터뷰 답변서	106
<첨부2> 해외제도 요약(OECD(2020))	124
1. 소득세	124
2. 부가가치세	128

I. 서론

- 저성장 시대 진입,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 기후변화, 제4차 산업혁명 등 농업경제는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 이러한 대외 여건이나 다른 국가의 변화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농업·농촌 부문에도 다양한 경로로 파급되므로 농업경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함

-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농업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농가의 고령화는 도시 보다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식량작물 생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우리나라 농가 가구수(농가인구)는 1970년 2,483,318가구(14,421,730명)에서 1980년 2,157,555가구(10,826,508명)으로 감소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 1,035,193가구(2,314,064명)에 불과한 수준임¹⁾
 - 2020년 우리나라 총 농가는 1970년을 기준으로 할 때 41.69% 수준이며, 농가 인구는 16.05% 수준임
 - 이처럼 농가 가구수 대비 농가인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감소한 것은 농가 가구원이 더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농가 가구 구성원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8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작물의 생산 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1,331,932ha, 5,759,440톤이었으나, 2022년 생산 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767,205ha, 3,917,223톤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²⁾

-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는 농가 및 농업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농가 및 농가인구 감소 대비 귀농가구 및 귀농인은 증가 수준이 미미함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귀농가구원은 연도별 각각 17,318명, 17,976명, 19,860명, 20,559명, 19,630명, 17,856명, 16,181명, 17,447명, 19,776명임
 - 즉,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귀농가구원이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한 후 2020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귀농가구원의 증가는 농가 및 농업인구 감소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이와 같은 농가 및 농업인구 순감소 원인 중의 하나가 농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준의 소득을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index/index.do), 농가 및 농가인구 추이 자료 참조

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index/index.do), 농작물 생산조사 자료 참조

확보하지 못하는 점이 될 수 있음

- 만약, 농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귀농희망가구가 귀농을 선택하도록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농업관련 정책은 필요한 자원의 배분을 원활하게 하고, 농업과 농민이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며, 소득불안정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양종관, 2006)
 - 농업관련 조세지원정책은 농업생산관련 가격신호의 왜곡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농업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의 축소 및 긍정적 외부성의 확대, 소득의 불안정성을 적절히 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양종관, 2006)

- 외부에서도 농업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농업인 소득안정계정' 등 다양한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 프로그램 도입 검토(KREI 5대 농정과제)를 요구하고 있음
 - 사회안전망에서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업 부문 세제 기반 구축을 5대 농정과제로 선정·요구

- 농업인에 대한 소득 안정 등의 정책을 이행하려면 세무신고에 기반한 소득 정보가 요구되고 세무신고의 기초가 되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나, 농업 분야에서 사업자등록은 소득세 비과세 및 부가가치세(또는 VAT, 부가세) 면제제도 등으로 인해 일정 수입금액 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농업인 중 식량작물 외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축산업 부업규모 초과소득 3천만원 초과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세 과세
 - 농업법인은 법인세법상 위와 같은 비과세 규정이 없이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과세
 - 사업자등록제도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인이 사업을 개시할 시 인적사항, 소재지, 업태 등 주요 사항을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제도

-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소득 정보를 집계하지 못하게 되고, 소득 정보에 기반을 둔 코로나 19 손실보전, 근로장려금 등의 재정 지원을 농업인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농업인도 손실보상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득세 비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지원받기는 어려움
 - 대다수의 사회보장·복지제도가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농업인은 매출·소득 입증 곤란으로 수혜 어려움

- 한편,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장부작성, 증빙자료 수취 및 보관,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 등 세법상 의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기계적으로 현행 사업자 등록 제도를 농업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에 잠재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
 - (부가세법)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매출액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교부, 교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무서 제출
 - 세금계산서 미교부,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시 공급가액 대비 일정 비율의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교부(소매업은 영수증 대체 가능),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세무서 제출, 사업장 현황신고 등
 - 사업자 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불성실시 미신고 혹은 신고미달 수입금액 대비 일정 비율의 가산세 등 여러 의무 및 가산세 규정이 있음
 - (기타) 농장 근로자 등의 소득세 원천징수·지급조서 제출 의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농업인 고용주 금전 부담 증가

- 따라서 농업인들도 소득 정보에 기반한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과약 및 집계 방안을 연구하되, 보다 정교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농업정책 개발 및 집행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기존 농정에서는 농업 생산성 및 소득 증진,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 농업·농촌 부문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여, 큰 사회 구성원인 국민(납세자), 소비자 등의 관점과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이명기 등, 2017)
 - 소득 과약이 가능하다면 농업인 소득 수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 개편과 세제 정보 기반 소득 안정 프로그램 도입이 가능해질 수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농업인에 대한 소득 과약이 가능하도록 현행 농업인 관련 세제를 분석하여 세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을 마련하기 위한 농업 정책을 이행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II. 제도검토

1. 국내세제

- 이하에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중 농업인³⁾과 관련된 세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소득지원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도 검토함
- 농업인 이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의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나, 이와 같은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에는 포함되지만 농업인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검토 대상에서 제외
-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가. 농업인 관련 세제

1) 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르면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과세제의 또는 비과세되는 범위가 아래와 같이 상당히 넓음
-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농업소득에서 제외⁴⁾
- 기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⁵⁾
-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⁶⁾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농업인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본 연구 목적상 고용된 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5)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 4

6) 소득세법 제12조 2호 가목

- 농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 제조·민박7)·음식물 판매·특산물8) 제조·전통차9) 제조·양어10)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의 소득11)은 비과세
 - 아래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가축별	규모
젓소	50마리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산양	300마리
면양	300마리
토끼	5,000마리
닭	15,000마리
오리	15,000마리
양봉	100군

주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주2) 성축을 기준.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 봄

주3)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함

- 축산 이외의 소득으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소득12)

□ 이러한 비과세 기준 제도 등으로 인해 비록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고, 사업자등록이 요구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실질적 유인은 없음

-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는 없음13)
- 비과세소득의 경우 소득세 신고 서식에 반영되지 않음14)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등을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15)

7) 민박이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임(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8)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9)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10) 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업 중 양식어업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11) 소득세법 제9조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 2

13) 서면-2015-소득-22431(2015.03.05.) 등

14) 별지 40호 서식상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음

“ ㉞ 사업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15)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¹⁶⁾
 -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함¹⁷⁾

-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예외가 있음
 -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이하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봄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 관리해야 하는 사업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됨¹⁸⁾

<표 2>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구분

업종 구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수입금액
[가군]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나군]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5억원 이상자	1.5억원 미만자
[다군]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	0.75억원 이상자	0.75억원 미만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모든 거주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¹⁹⁾이나, 추계과세(추계신고 및 추계결정 및 경정)도 허용됨
 - 납세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한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 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함²⁰⁾

16)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17)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18)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

19)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60조

20)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등의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²¹⁾

□ 추계 과세의 경비율 제도는 2002 귀속 사업연도부터 무기장사업자의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기준경비율제도를 근간으로 도입함.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 이거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표준소득률 방식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함²²⁾

<p>[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계산식]</p> <p>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주요경비)×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는 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p> <p>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p>
--

<표 3> 경비율 판단 수입금액(직전 연도) 기준

업종별	무기장 신고자(추계신고자) 수입금액 기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가군]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6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
[나군]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천 6백만 원 이상	3천 6백만 원 미만
[다군]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	2천 4백만 원 이상	2천 4백만 원 미만

□ 추계신고에 적용되는 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으며, 단순 경비율의 경우 농업에서는 약 90% 수준의 경비율을 보이고 있음

○ 단, 사업소득으로 열거되지 않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의 경비율은 0%임

2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표 4> 경비율 판단 수입금액(직전 연도) 기준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11000	농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	0	0
11001	농업/채소작물재배	93.5	9.5
11002	농업/화훼작물재배	93.5	6.3
11003	농업/종자 및 묘목생산	93.5	11.7
11004	농업/과실작물재배	93.5	6.3
11005	농업/음료 및 향신작물재배	93.5	9
11006	농업/기타 작물재배	93.5	9
11007	농업/콩나물재배	93.5	9
11008	농업/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시설재배	93.5	9
11009	농업/기타 시설작물재배	93.5	8.2
12101	축산 /육우	97.2	6.1
12102	축산/말, 양, 염소	91.8	9.6
12103	축산/사슴, 토끼, 개	88	5.7
12104	축산/젖소	97.2	8.6
12201	축산/양돈	96.5	7.8
12202	축산/양계	96.3	6.1
12203	축산/기타 가금류 및 조류	94.2	6
12204	축산/기타 축산	93.9	7.9
14300	농업/축산관련 서비스	93.7	15.6
14301	농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93.7	12
14302	농업/작물재배 지원서비스	93.7	11.4
14303	농업/농산물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후 서비스	93.7	12
15000	농업/수렵 및 관련서비스	80	14.3

-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소득세법상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됨

<표 5> 소득세 관련 가산세

구분	적요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를 포함)를 하지 않은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 : Max(1), 2) 1) 무신고납부세액 × 20% 2) 수입금액 × 7/10,000 -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자 무신고납부세액 × 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를 포함)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산세	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초과신고)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소득세의 납부(중간예납 포함)를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	$가산세액 = 1) + 2)$ 1) 지연이자분 : a)+b) a) 미납부·과소납부분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times 미납기간 $\times 0.022\%$ b) 초과환급분 초과환급받은 세액 \times 초과환급기간 $\times 0.022\%$ 2) 체납에 대한 제재분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 부분 세액 $\times 3\%$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액 = \text{Min}(1), 2)$ 1) a) +b) a)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times 3\%$ b)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times 미납기간 $\times 0.022\%$ 2) 한도 : 미납부 · 과소납부분 세액 $\times 50\%$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제출·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 $\times 1\%$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무기록, 미달기록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times 20\%$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소득금액 추계자 제외)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건당 3만원 초과인 경우로서 법정증명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미수취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는 경우	증명서류 미수령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times 2\%$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금융회사를 통한 대금결제시, 인건비 임차료 수수시 사업용계좌를 미사용한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times 0.2\%$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text{Max}(a), b)$ a)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 $\times 0.2\%$ b) 금융회사를 통한 대금결제 및 인건

	아니한 경우	비 임차료 수수 거래금액 합계액 × 0.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급 불성실 산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건별 거부금액,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1%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계산서 등 출 불성실 산세	계산서 부실기재시	공급가액 × 1%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시	공급가액 × 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시	공급가액 × 0.5%
	계산서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공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수, 위장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수	공급가액 × 2%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공급가액 × 0.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 0.5%
	사업자가 아닌 자가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공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 2%
지급명세서 출 불성실 산세	지급명세서 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a) 지급명세서: 미제출분 지급금액 × 1% b)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분 지급금액 × 0.25%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a) 지급명세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 × 1% b)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 × 0.25%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세서 제출 성실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a)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 1% b)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 × 1%

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²³⁾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²⁴⁾
 -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전기·가스·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과 권리(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를 말함²⁵⁾
 - 용역이란 재화 이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직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며, 이 같은 용역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직무와 그 밖의 행위임²⁶⁾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²⁷⁾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신청을 할 수 있음
 -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면세포기사업자 및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는 다를 수 있으나,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함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는 없으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등록은 해야 함
 - 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²⁸⁾
 - 면세포기사업자 및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영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23) 부가가치세법 제4조

24)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25)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6)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27)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28)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111조

-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이 고려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배제, 납부세액의 계산 편의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 사업자의 경우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됨
 - 직전 연도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받을 수 있음(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 다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함²⁹⁾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³⁰⁾
 - 다만,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³¹⁾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³²⁾

29)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30)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3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3. 재화 공급의 특례에 따른 재화의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및 폐업시 잔존재화
4.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등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5. 제3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가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

- 또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함³³⁾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³⁴⁾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³⁵⁾ 및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에 보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나, 식료품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³⁶⁾³⁷⁾(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

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8.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33)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

34)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

35) 이때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열거하고 있는 사업자로 한정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53조를 참조하기 바람

36)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미가공식료품)은 다음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 포함)
9. 생선류(고래 포함)

물,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³⁸⁾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함(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따라서, 농업인과 관련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미가공식료품)등은 부가가치세 면세됨
- 미가공식료품에는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등도 포함됨(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관련 별표1)

□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원가에 포함되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전가되게 되지만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과세사업자는 매입가액에 매입세액 상당액이 포함되더라도 매입세액이 거래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데 있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매입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부에 제출한 때에 한함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거래징수하지 아니함
- 공급받은 과세사업자 입장에서 공제될 매입세액이 없다는 의미는 재화나 용역을 다른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은 부담하되 거래징수를 기반으로 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을 의미함

□ 이처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 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라고 함

10. 패류

11. 해조류

12. 1부터 11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함)

37)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8)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2.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면세농산물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의미함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 100분의 50, 2억원 초과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³⁹⁾
- 업종별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6>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구 분		적용비율
음식점업	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과세유흥장소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주1)}
	다. 그 밖의 사업자(‘가’와 ‘나’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그 밖의 사업자(‘가’와 ‘나’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그 외의 사업		102분의 2

주1) 과세표준 2억 이하인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됨

39)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함

- 법인사업자 :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 음식점업 경영 개인사업자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그 밖의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5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표 7>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구분	적요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를 포함)를 하지 않은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 : Max(1, 2)) 1) 무신고납부세액 × 20% 2) 수입금액 × 7/10,000 -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자 무신고납부세액 × 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를 포함)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초과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납부지연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함)까지 소득세의 납부(중간예납 포함)를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	가산세액 = 1) + 2) 1) 지연이자분 : a)+b) a) 미납부·과소납부분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미납기간 × 0.022% b) 초과환급분 초과환급받은 세액 × 초과환급기간 × 0.022% 2) 체납에 대한 제재분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중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 부분 세액 × 3%
대리납부지연 가산세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은 용역 등에 대한 대리납부의 대리납부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가산세액 = Min(1, 2)) 1) a) +b) a)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3% b)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미납기간 × 0.022% 2) 한도 : 미납부 · 과소납부분 세액 × 50%
미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 × 1%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급가액 × 1%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 1%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	공급가액 × 2%

	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 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 1%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공급가액 × 0.3%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 × 0.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 ×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 ×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 2%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기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급가액 × 0.5%

	적혀 있는 경우 -지연제출: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 x 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지연제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경정기관의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수령 또는 선세금계산서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세금계산서의 사전발급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과다기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공급가액 x 0.5%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불성실 가산세	-지연제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서서를 예정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지 않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과다기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서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공급가액 x 0.5%

나.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의 의의

-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 및 환급해주는 제도임(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 즉,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임⁴⁰⁾

40)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lid=7781) 자료 참조

2)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 12월 31일 현재(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음

□ 가구원 요건은 다음과 같음

-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그 요건이 다름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임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00만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임
 -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임
- 여기서 총급여액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
 - 업종별 조정률은 업종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90%까지의 비율임
 - 또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인 경우는 제외됨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동일주소에 거주)인 경우 연령제한 없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함

〈표 8〉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주1)} , 부양자녀 ^{주2)} , 70세 이상 직계존속 ^{주3)} 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주4)} 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주4)} 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주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주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주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주4) 총급여액 등 :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어업, 광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0%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내고용활동	90%

□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음

-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합계금액을 말함
 - 기준금액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장려금 산정시 총소득금액 중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함

□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음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시 신청자의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함
 - 전세금 산정시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함
 - 단,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함

2) 연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 등이 4만원에서 2,200만원까지 최소 2.7만원에서 최대 150

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

- 홀별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4만원에서 3,200만원까지를 기준으로 최소 2.7만원에서 최대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
-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에서 3,800만원까지를 기준으로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

〈표 9〉 연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액⁴¹⁾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연간)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2.7 ~ 150만원
홀별이가구	4 ~ 3,200만원	2.7 ~ 260만원
맞벌이가구	600 ~ 3,800만원	3 ~ 300만원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를 하는 농업인의 경우 농업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지 못하며, 그 외의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더라도 소득금액이 높아 근로장려금 신청범위에 포함되지 못함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음
 - 사업소득으로 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으나⁴²⁾,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농업인의 경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를 통한 소득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그 외의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작

41) 국세청 장려세제 제도안내 리플릿 자료 참고(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42)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물재배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업의 업종별 조정률 30%를 적용하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대상이 안 됨

-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이때 기준금액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임

2. 해외세제

가. OECD 조사대상국

- OECD는 조세정책이 혁신, 구조적 변화를 통해 농업 분야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각국의 농업 분야 조세제도를 파악하였고, 2020년에 보고서를 발간함
 -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35개국이 조사대상국으로 포함되어 있음
 - 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아래 표에서 보듯이 소득세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농업분야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나 소득계산 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대다수의 경우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과세 제외 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소수임
 - 35개 조사대상국 중 코스타리카, 덴마크, 핀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는 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업분야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와 같이 농업분야 저소득자에게 과세제외 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는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로 총 5개국임
 - 대다수의 경우에는 소득계산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세제지원이 이뤄짐

<표 10> 국가별 소득세제 특례 현황

국가	세제혜택 없음	저소득 비과세/면제	소득평균화	현금주의 계산	추정 소득	기타 소득 계산 특례
호주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캐나다			●	●		●
칠레					●	
콜롬비아						●
코스타리카	●					
크로아티아		●				
체코						●
덴마크	●					
에스토니아						●
핀란드	●					
프랑스			●	●		●
독일			●			●
그리스						●
헝가리						●
아일랜드			●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일본						●
한국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멕시코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
노르웨이		●				●
폴란드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스페인					●	●
스웨덴	●					
스위스	●					
영국			●			
미국			●	●		●
합계	6	5	8	3	2	22

(출처) OECD(2020)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 수준 이하 소득에 비과세 제도를 취하는 나라는 소수이며, 과세를 하되 특정 소득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한다든지, 소득계산에 있어 특례제도(e.g. 현금주의 소득)를 적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비과세 기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임

- 일정수준 이하 매출 또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국가는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정도이며, 비과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의 비과세기준 금액이 비교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며, 1인당 GDP와의 비율을 보더라도 높은 수준임
 - 한국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아예 과세 제외됨

<표 11> 저수입/저소득 비과세 등 기준 현황 비교

국가	비과세 기준액 (a)	비과세기준 USD 환산액 (b)	1인당(GDP) (c)	비율 (d=b/c)	비고
한국	(작물) KRW 1,000,000,000	714,286	34,757.7	20.55	매출(sales)기준임
	(축산 등) KRW 30,000,000 ⁴³⁾	21,428	34,757.7	0.61	소득(income)기준임
크로아티아	HRK 300,000	41,265	17,398.8	2.37	소득(income)기준임
라트비아	EUR 3,000	3,125	20,642.2	0.15	소득(income)기준임
리투아니아	EUR 45,000	46,875	23,433.4	2.00	매출(sales)기준임
노르웨이	NOK 90,000	8,911	89,202.8	0.10	소득(income)기준임. NOK 90,000 이하에 대해 100% 공제(Deduction)

(주)

1. 한국의 곡물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은 과세에서 아예 제외되며, 상기 표의 작물 기준은 그 외의 작물재배업임
2. 1인당 GDP는 2021년 USD 기준임
3. 비과세 기준액의 USD 환산 적용 환율은 다음과 같음

43) 이 비과세 기준 금액은 다음의 농가부업규모 축산(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를 초과하는 소득이므로 실질적인 비과세 금액은 이보다 높다고 볼 수 있음

가축별	규모
젖소	50마리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산양	300마리
면양	300마리
토끼	5,000마리
닭	15,000마리
오리	15,000마리
양봉	100군

통화	환율
KRW/USD	1,400
HRK/USD	7.27
EUR/USD	0.96
NOK/USD	10.10

(출처)

1. 농업부문 비과세기준액: OECD(2020)
2. 1인당 GDP: Worldbank databas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view=chart>)

-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와 관련하여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분야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세제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낮은 VAT를 적용하고 있음
- 35개 조사대상국 중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와 관련하여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뉴질랜드가 매출세액(Output tax)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35개 조사대상국 중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23개국에 낮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우고 있음
 - 상당수의 유럽 소재 국가는 Flat Rate Scheme에서 보상 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표 1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특례 비교

	세제혜택 없음	면세 또는 No VAT	zero VAT	낮은 세율 (reduced VAT) 적용	FRS compensation
호주		●			
오스트리아				●	●
벨기에				●	●
캐나다			●		
칠레	●				
콜롬비아		●			
코스타리카				●	
크로아티아				●	
체코				●	
덴마크	●				
에스토니아	●				
핀란드				●	
프랑스				●	●
독일				●	●
그리스				●	
헝가리				●	
아일랜드			●	●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
일본				●	
한국		●			
라트비아				●	●
리투아니아					●

멕시코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폴란드				●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
스페인				●	●
스웨덴				●	
스위스		●		●	
영국			●		●
미국			●	●	
합계	4	4	6	23	12

(출처) OECD(2020) 참고하여 저자 작성

(주1) FRS: Flat Rate Scheme

- 우리나라와 같이 공급된 물품에 대해 완전 면세 등의 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이 소수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낮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움
- 낮은 VAT를 병행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도 있음

<표 13> 매출세액에서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국가의 세제 현황

국가	표준세율	매출세액	매입세액
호주	10%	- 대부분의 식품은 GST(Goods and service tax) 면제	- 일부 농지는 GST 면제
캐나다	5%	- 대부분의 농산물에 0의 연방 GST 적용	- 대부분의 농장 매입건에 대해 0의 GST 적용
콜롬비아	19%, 5%	- 대부분의 농가 생산품에 대해 VAT가 부과되지 않음	- 대부분의 농장 투입물과 농업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에 대해 VAT가 부과되지 않음
아일랜드	24%	- 0 또는 낮은 VAT를 식료품에 적용 - Flat rate scheme에 따라 농부들은 보상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 농업 관련 매입액에 0 또는 낮은 VAT 적용 - 농장 건물 및 구조물 등에 납부한 VAT를 환급 요청할 수 있음
멕시코	16%	- 농산물 생산품에 0의 VAT 적용	- 농업 투입물에 대해 0의 VAT를 적용
영국	20%	- 기본 식료품에 0의 VAT를 적용 - 농업에 두 가지 VAT 보상 제도: Agricultural Flat Rate Scheme(비 VAT 등록 농부) 또는 Flat Rate Scheme(모든 VAT 등록 사업자)	
미국	지방세	- 대부분의 주에서 가정용 식품에 대한 판매세의 일부 또는 전액 면제	

□ 기타 국가별 농업분야 세제 혜택은 <첨부 1> 참고

나. 일본⁴⁴⁾

□ 이하에서는 일본의 세제를 추가 검토함

□ 농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총수입금액은 농산물 판매금액에 가사 및 사업소비금액과 잡수입을 더하고 농산물의 기말 재고를 더한 뒤 기초재고를 제한 것임

○ 판매금액과 가사 및 사업소비금액의 산정은 농산물의 경우 수확시점에 축산물의 경우 판매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짐

○ 가사소비는 자가소비를 하거나 친척에게 증여한 것을 말하며 사업소비는 생산을 위해 투입된 것임

○ 잡수입은 농산물 판매수입 외에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수입으로서 농작물공제대금의 수취금, 출하장려금, 부산물 판매수입, 전작(轉作)장려금,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농업노임, 농기구, 차량 비품 등의 매각대금 등이 포함

□ 필요경비는 고용인 인건비, 소작료 및 임차료, 감가상각비, 대손금, 이자할인액, 기타 경비를 포함

○ 감가상각비는 농업용 건물, 농기구, 농업용 차량 등 농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이며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이 10만 엔 이상이면 감가상각대상임

○ 이자할인액은 농업관련 차입금 이자로서 원금 상환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기타 경비는 농업 관련 조세, 종묘비, 종축비, 비료비, 사료비, 농구비, 농약위생비, 자재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농업공제부금, 의류비, 포장운송수수료, 토지 개량비, 잡비 등임

○ 이외에도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세 가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데,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 필요경비 인정, 농지나 농업용 기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 육우의 매각에 따른 소득세 면제임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업전종자공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납세자가 백색

44) 임소영(2016), OECD(2020)을 참고함

신고자 또는 청색신고자임에 따라 공제내역이 다름

- 사업전종자(專從者)는 신고자와 생계를 전적으로 같이 하는 배우자 및 기타 친족이면서 당해 과세연도 연말 기준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고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는 사람임
 - 백색신고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사업전종자(專從者)공제액을 제한 부분이 농업소득으로 계산됨
 - 백색사업전종자공제액은 배우자의 경우 86만 엔, 배우자를 제외한 전종자는 1인당 50만 엔이 되며, 공제 적용 전의 사업소득액에서 전종자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것이 더 큰 경우 이를 적용
 - 청색신고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청색사업전종자공제액, 청색신고특별공제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이 농업소득이 됨
 - 청색신고자에게는 신고서에 작성된 청색사업전종자의 급여 전체를 필요경비를 인정(청색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일환)
 - 청색신고특별공제액은 65만 엔 또는 10만 엔이며 65만 엔의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 등과 관련 2) 복식부기 기장 3)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신고시 제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청색신고자의 손실은 사업손실을 3개년간 이연할 수 있음⁴⁵⁾
 - 이렇게 계산된 농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됨
- 소득세 납세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의 보관 및 장부 기장, 제출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우선 농가는 은행 정산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
 - 수입액과 관련하여 보관이 필요한 각종 서류는 일본농협(Japanese Agricultural Cooperatives: JA)으로부터 수취한 정산서 및 영수증, 농산물 수입 명세서 등이며 계좌이체를 한 사람은 명세서와 기장한 예금 통장을 보관
 - 농산물의 가내 소비 및 친척에 대한 증여도 수입으로 취급하는데 이때는 생산자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출
 - 경비를 위한 증빙 서류는 비료, 농약, 종묘, 철사, 비닐, 작업복, 농기구, 유류 등을 구입할 때 받은 영수증과 명세서와 재산세 통지서 및 농업용 차량의 자동차세 영수증, 토지개량 비용, 수리비용, 쌀 관련 기부금, 작업 위탁료 등의 명세서임

45) OECD (2020)

- 농가는 증빙서류의 보관과 함께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장하여야 하는데, 지자체 또는 국세청에서 서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 농가의 편의를 위해 각 지자체 또는 국세청은 농가가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수지거래일람표를 엑셀 자료로 제공
- 기장은 수입과 경비 부분을 나누어 수확량, 항목별 수입 및 지출 날짜와 금액을 기록하는 방식
- 친척 등에 대한 증여를 포함한 가사소비에 대해서는 생산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농산물 재고 또한 생산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

- 현재 일본 농업인은 기장을 바탕으로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를 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지는 않았고, 단계적으로 발전 과정을 거쳤음
- 1990년대 이전까지는 표준에 의한 과세를 실시
 - 표준에 의한 과세는 세무당국이 매년 조사를 통해 경지와 가축의 단위당 표준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납세자 개인의 경작면적과 사육두수에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과세하는 방식
- 1990년 이후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와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를 병행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신고는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회계장부를 이용해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연간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방식
 - 기준경비율은 4개 업종(논농업, 밭농업, 과수, 시설작물)별로 청색신고자의 과거 3년 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
 - 수지계산에 의한 소득신고는 신고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근거를 둔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산정하는 방식
- 200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
 - 최종 단계인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는 수입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짐
 - 연간 총수입이 400만 엔 이상인 신고자는 2002년부터 수지 계산
 - 총수입규모가 작을수록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방식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늦추어 2006년도부터는 모든 농업인이 수지계산에 의해 소득신고

- 청색신고자료는 농업수입보험 가입자가 소득이 감소하여 보상을 신청했을 때 근거 자료로 활용
- 2017년부터 청색신고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각 농가는 실제 소득에 근거해서 소득 감소분

만큼 피해 보전

- 과거에는 피해면적에 해당 지역의 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지역 내 모든 농가가 일률적인 단가를 적용
- 각 농가의 직불금은 전년도 소득과 연계되어 결정되는데, 이 때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소득은 청색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증빙으로 활용

다. 프랑스⁴⁶⁾

- 이하에서는 프랑스의 세제를 추가 검토함

- 프랑스는 일정 소득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 실제 소득에 따라 과세되며, 그 이하는 과거에 정액과세 적용
 - 1971년부터는 농업소득을 실제소득기준으로 실제소득과세
 - 일반소득세 내에서 농업소득을 산출하는 기준을 따로 적용하여 과세
 - 일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그 이상일 경우에만 실제소득과세를 하고 있으며 그 이하의 소득일 경우 과거에는 도 자치단체에서 정한 정액과세의 적용

- 농업소득세가 적용되는 농업소득이란 농장, 소작인, 반소작인 또는 농작 지주가 스스로 농촌상품 경작 또는 개발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다음의 소득을 포함함
 - 산림, 버섯, 양봉, 사육, 어업양식, 굴 양식, 조개양식, 각종 새로운 종의 식물 채취 또는 경작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 공연을 위한 마(馬)류의 훈련 및 준비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 건조 또는 젖은 동 식물류의 판매 소득
 - 개 조련 국가자격증을 갖춘 조련사의 개 경주 및 썰매활동과 같은 운송이나 스포츠 활동 또는 그에 대한 교육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 농업소득은 소규모 농업소득(micro-BA), 간소화한 실제기준세제(le reel simplifie), 일반 실제기준세제(le reel normal)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과세
 - 실제기준세제(le régime réel)의 경우는 농업소득으로 따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업 및 산업 소득(les bénéfiques industrielles et commerciaux, BIC)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

46) 임소영(2016), 조세재정연구원(2020), OECD(2020)을 참고함

- 소규모 농업소득(micro-BA)는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계산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임
 - 소규모 농업소득(micro-BA) 이전에는 정액과세가 있었는데, 정액과세는 조세일반법 제 64조를 근거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정액은 농업직업대표인과 과세행정 대표인을 모은 도 위원회(lacommission départementale)의 회의에서 결정되는 과세제도임
- 농업소득의 과세 카테고리 분류는 농업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짐
- 농업소득의 과세 카테고리 분류는 농업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는 이전 두 해 사업연도 평균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함

<표 14> 프랑스 농업소득 과세제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과세제도
82,800 유로 이하	소규모 농업소득(micro-BA)
82,800~352,000 유로 까지 ⁴⁷⁾	간소화 실제기준과세
352,000 유로 초과	일반 실제기준과세

(출처) 임소영(2016), 조세재정연구원(2020)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소규모 농업소득(micro-BA)’ 제도가 2016년에 신설되었으며, 이전의 정액과세 제도를 대체 하는 제도임
- 소규모 농업소득과세는 세금을 제외한 (hors taxe) 농업생산자의 매출(le chiffre d'affaires)이 82,800 유로 이하일 경우 적용 가능하며, 기준 매출금액은 3년을 평균으로 계산하며 3년마다 재평가
- 농업 생산자의 과세소득은 3년 평균 발생한 매출액에 비용(les charges)의 명목으로 87%를 공제(un abattement)하여 산출하게 되며 305유로가 최소 공제 금액
- 매출에는 경작활동에 관련된 재산 양도의 차익과 손실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으며, 소규모 농업소득과세의 적용을 받는 농산물 생산자는 자신의 농업소득을 정률법(le mode lineraire)에 의한 감가상각으로 간주하여 공제
- 농산물 생산자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시에 농산물 생산자의 소득과 관련된 회계자료, 증빙 서류와 영수증뿐 아니라 농업생산활동의 일지(le detail journalier)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일지는 간단한 출고 내역을 적은 서류임
- 실제기준과세는 간소화 세제(le régime réel simplifié)와 일반세제(le régime réel normal)로 나뉘어지는데, 일반 상업 및 산업 소득(les benefices industrielles et commerciaux, BIC)

47) OECD(2020) 에서는 EUR 350,000을 경계로 하고 있음

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되나, 다음의 차이가 있음

-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에 있어 재고평가기준에 차이가 있음
 - 간소화 세제의 경우 회계의무규정과 신고의무규정(les obligations déclaratives et comptables)이 일반세제에서보다 완화되어 있다는 점
- 프랑스 농업소득 계산시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규정이 존재함
- 청년농산물 생산자대상 소득공제(l'Abattement sur les bénéfiques des jeunes agriculteurs)로, 청년 농산물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이나 특별대출을 실제적으로 받은 청년 농산물 생산자만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 3년 평균과세(l'imposition sur une moyenne triennale)로 이전 두 해의 평균과 과세연도의 소득 평균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농산물 생산자는 3년 평균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은 5년간 유효
 - '특별소득분할(Etalement du revenu exceptionnel)'로 납세자는 2만 5천 유로가 넘는 소득 또는 이전 3년 사업연도의 결과의 평균의 1.5배를 사업연도 7년에 분할 할 수 있으며, 보건위생의 이유로 가축을 도살해야 할 경우 받는 보상금을 분할하는 때에도 적용 가능함
 - '손실이월과 '충당(les Imputation et report des déficits)'으로 농업활동에서 오는 손실은 전체 순 소득(le revenu net)이 10만 7천 75 유로를 초과할 경우, 과세가정의 소득에서 충당(l'imputation)이 불가하고, 6년의 사업연도 동안 소득공제(la déduction des bénéfiques)는 가능
 - '간소화 세제 내에서 회전이 낮은 재고에 대한 감면(Decote sur les stocks a rotation lente dans le regime simplifie)'으로 완성된 상품의 원가(prix de revient)는 판매 시 발생 가능한(susceptible d'être realise) 소득총액(benefice brut)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에 감면하여 정액으로 계산
 - '무공해 농업조세공제'로 농업회사의 수입 중 무공해 방식으로 생산한 것이 40%가 넘을 시에 2천 5백 유로의 조세공제가 주어짐

라. 독일⁴⁸⁾

- 독일에서도 농업 분야에 적용되는 세제 특례 조항이 존재함
- 장부 기록에 대한 특별 규정, 특별 면제 및 세율 인하, 소득 평준화,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율 조정 및 해당 부문의 세금 지출 측면에서 존재함

48) OECD(2020)을 참고함

- 독일에서의 농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며, 이에 따라 농민에 대한 소득세율은 다른 사업자의 세율과 동일하나, 소규모 저소득 농민에 소득 결정에 대한 특례 혜택이 존재함
- 독일 전체 토지 면적의 약 51%가 농업에 사용되고, 평균 크기가 60헥타르인 275,400개의 농장이 있고, 농장의 약 90%가 가족이 운영하는 형태임
- 소규모 저소득 농민의 경우 농민이 과세 소득을 추정하는 간소화된 절차("flat rate method")가 있음
 - 이 방법에서 과세소득은 법률에 명시된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농부는 계정을 유지할 의무가 없음
 - 20 헥타르 미만 또는 50 가축 단위 미만의 농가는 상기의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 또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간적이고 간소화된 현금 기준의 이익 결정 절차가 있음

- 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은 표준적인 방식으로 장부작성(standard bookkeeping)을 해야될 의무가 있음
- EUR 60,000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거나 EUR 600,000 이상의 매출액을 발생시키거나 EUR 25,000 이상의 귀속된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가 있는 농업인이 이해 해당함
- 2016년 현재 전체 농장의 약 57%가 이 범주에 속함

- 농업소득 계산 시 농업분야에 해당되는 특별한 공제 제도가 적용
 - 독신 농업인에게는 EUR 900이 적용되고, 부부 농업인에게는 EUR 1,800이 적용됨
 - 단, 독신 농업의 경우 수익이 EUR 30,700미만이고, 부부 농업인의 경우 수익이 EUR 61,400 미만일 때 해당 공제 제도가 적용됨

- 시장 및 기후로 인한 이익 변동성에 대응하여 2016년 말에 세무 목적으로 농업 이익의 소득 평준화 제도(income smoothing)가 도입됨
 - 이는 이미 시행 중인 2년간의 수익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 과세의 기준이 되는 농업인의 소득은 세 가지 특정 과세 기간(기간 2014-16, 기간 2017-19 및 기간 2020-22)에 고르게 분배됨

- 독일에서의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9%이며, 농업 분야를 위한 부가가치세율이 특례가 적용되고 있음
- 식품, 음료, 기타 기본 상품 및 서비스에는 7%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
- 농업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률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매입 거래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10.7% 매출세액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세제는 농가의 66%가 사용하고 있음
- 기타 전기, 오일, 가스 사용에 부가하는 기타 소비세 역시도 낮은 세율을 부담함

마. 미국⁴⁹⁾

- 농장 조직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개인 기업은 개인 수준에서 과세
 - 2017년 농업 자원 관리 조사에 따르면 개인 소유 농장이 전체 농장의 89%를 차지
 - 파트너십 및 S corporation 또한 과세 목적으로 개별 파트너 또는 주주에게 전달되는 농장 소득으로 개인 수준에서 과세
 - 파트너십은 농장의 약 6%를 구성하고 기업은 약 4%를 차지(S corporation 2% 및 C corporation 2%)
 - 전체 농가의 약 97%가 법인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세로 과세된다.
- 농업인은 모든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세금 조항과 특별히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의 혜택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농업 소득은 다른 많은 사업 소득보다 더 유리하게 과세
 - 일부 특정 조항에는 특정 자본 비용의 공제, 농장 자산 매각 수익금의 자본 이득(Capital gain) 처리, 현금 회계(Cash accounting) 및 농업소득 평준화(Income averaging)가 이에 포함됨
 - 이러한 조항과 기타 조항은 농장 소득 과세 기준을 줄이고 일부 농장 소득에 대해 감세율을 적용하며 연간 소득 변동을 완화하는 데 기여
- 토양, 지하수 또는 환경 보호, 야생 동물 또는 산림 관리에 대한 국가 보조금은 세금 면제 가능
 - Conservation Reserve Program(CRP)은 환경에 민감한 토지를 생산에서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CRP로부터의 지급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
 - CRP는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을 계산하기 위해 순 소득에 사용되지만 연방 소득세의 대상이 아님

49) OECD(2020)을 참고함

- 특정 조건에서 농업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며 대신 자본 이득세(Capital gain tax)로 과세됨
 - 그러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농장 자산 중에는 농지, 건물, 기계류 및 초안, 유제품, 사육 또는 스포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축이 있음
 - 적격 가축이 되려면 판매로 발생한 소득이 장기 자본 이득 처리 대상이 되고 낮은 세율 또는 0의 세율로 과세되기 전에 최소 기간(필요한 보유 기간) 동안 가축을 보유하여야 함

- 비용이 발생하거나 지급되는 과세 연도에 특정 농장 자산 개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 생산 전 개발 비용으로 낙농, 번식 또는 가축을 성숙한 용도로 키우는 것, 농작물을 생산할 준비가 되기 전에 과수원과 포도원을 돌보는 것, 토지를 개간하고 석회, 비료 및 기타 재료를 이용하여 장기적인 토양 비옥도를 구축하는 것 등이 공제 가능함

- 현금주의 회계 적용 가능
 -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세금 목적으로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사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농장 개인 소유주는 현금 회계 방식을 사용
 - 많은 수의 농장 파트너십과 소기업도 현금 방식을 사용
 - 1975년 이후 시작되는 모든 과세연도에 총수입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법인(가족법인 제외) 또는 1985년 이후의 모든 과세연도에 총수입액이 2천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가족법인만 발생주의 회계 적용
 - 현금주의 회계를 사용하는 주요 이점은 세제 혜택이 발생주의 회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적용된다는 점

- 토양 및 물 보존 지출에 대한 공제 가능
 - 토양 및 물 보존 또는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침식 방지를 위한 특정 유형의 지출에 대해 즉각적인 공제 청구 가능
 - 비용의 예로는 평탄화, 정지 작업, 계단식 논, 맞춤형 고랑, 방풍림 심기, 전환 수로, 배수로, 관개용 도랑, 흙담, 수로, 배수구 및 연못의 건설, 통제 및 보호가 포함됨

- 소득 평준화(Income averaging) 가능
 - 농업인은 토지를 제외한 농장 자산 매각 차익을 포함한 특정 금액의 농장 소득을 이전 3

년으로 이전하고 매년 적용되는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전된 현재 소득은 3년 동안 균등하게 분배됨

- 이전 연도 중 한 해 이상 동안 한계 세율이 더 낮았다면 농부는 소득 평균을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이는 가변적인 농장 소득과 누진 세율 구조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높은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TCJA(The Tax Cuts and Jobs Act)는 이 조항을 유지하고 있음

□ 이 외에도 농업인은 구매 첫 해에 자본 구매 상각을 효과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TCJA가 수정한 자본 투자에 대한 세금 처리를 포함한 다양한 일반 조항의 혜택을 받음

- 자본 구매에는 사육 가축과 착유장, 농장 장비가 포함

□ 미국에서 부가가치세에 대응되는 판매세(Sales tax)는 주 및 지방 소비세이며, 1% 미만에서 10% 이상까지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가정용 식품에 대한 판매세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면제됨

□ 연료에 대해서도 판매세/소비세가 부과되나, 농업인이 매입하는 연료에 대해서는 면제혜택이 부여됨

- 농업에서 사용되는 염색 디젤 연료(dyed diesel fuel)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농업에서 사용되는 가솔린과 염색되지 않은 디젤 연료(undyed diesel)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및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Ⅲ. 문헌연구

1. 국내연구

- 농업관련 조세제도의 선행연구는 주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에 국한되거나, 농지를 대상으로 한 조세제도(eg, 자경농지의 취득 및 양도소득세)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는 자연인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자 함
- 농업인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행됨(양종관, 2006; 서희열 등, 2008; 장태평 등, 2011; 홍정학과 권승구, 2016; 임응순 등, 2017 등)

가. 농업관련 조세제도

- 소득세법 제12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제외 및 비과세되는데,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음
 - 2015년 이전에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에서 제외하였으나, 2015년 1.1일부터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 과세로 전환
 - 세부적으로 ① 곡물 및 기타식량 작물재배업의 소득은 과세에서 제외하나 ② 기타작물재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10억원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 농산물 유통은 일반적으로 “생산자(단체)-산지상인(산지수집상 등)-도매시장-소매상-소비자”로 이어지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주체는 세법상 사업자로 납세의무 가지는데(홍정학과 권승구, 2016), 농업인에 대한 과세제외, 비과세 사업소득 제도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비과세 사업소득 범위 상이로 인한 과세불형평성의 문제점, 소득금액 산출과정의 불투명성의 문제점이 내재(박주철 등 2021).
 - 특히 수입금액 계산을 소득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자가 비과세범위에 속한다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세원 파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박주철 등 2021).

- 임소영 등(2016)은 농업관련소득세제의 소득세 과세 확대 시 나타날 수 있는 쟁점과 보완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음
 - 과세 전환시 나타나는 농가의 세부담증가, 조세저항, 행정비용, 납세협력비용의 증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대농과 고소득 농가의 출현으로 농가과세는 필요함
 - 농가경영체 등록, 국세청이나 지자체의 세무행정력의 증가로 납세관련 행정비용은 절감될 수 있으며, 저소득 농가의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의 세액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지원액이 납세액보다 많아 소득신고가 유리함
 - 농업소득과세는 사회적 형평성 제고로 인한 후생증가, 농가경영의 효율화, 투자기회확대, 사업자등록 등으로 인한 판로 확대 등의 편익이 있을 수 있음

- 이명기 등(2017)은 농업 경쟁력 강화의 방안으로 세계 정비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농업인 소득 신고 확대를 위해 소득 신고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가 요구되며, 대부분 사업자가기 때문에 비용 공제가 가능하며 과세기록을 기초로 근로장려세제(EITC), 보험 등에서 편익이 증대할 수 있음을 주장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어느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함

- 임응순 등(2017)은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용작물 등에 따라 고소득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농업소득세를 재도입하여 과세할 것을 제안하였음
 - 지방세 및 보통세였던 농지세는 농지를 이용하여 획득한 소득에 대한 과세이나, 농지에 대한 재산세의 개념과 혼용될 여지가 있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
 - 농업소득세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과세중단 되었으며 2010년도에 폐지
 - 농업경영 규모가 영세하여 전체 농가의 1~2%만 과세대상이고 세수도 연간 총 27~30억 원에 불과하여 징세의 비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으며, 농업소득세는 시·군이 관장하는 지방세로, 읍·면 직원이 현지에 나가 농가별로 영농실태를 확인해야 하는 번잡성 존재
 - 과거 농업소득세가 폐지된 주요 사유는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성실납부자가 적어 징수율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추후 농가소득세를 재도입하는 경우 성실납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1차산업 종사자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 1차산업에서의 사업·부동산임대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과 농가부업소득을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농업소득세에 포함하여 과세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함

- 임소영 등(2019)은 농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분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필요하며, 농산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은 농업기자재 및 농산물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계장부 작성으로 매출액 신고가 이루어지면, 매출기록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 지원 정책도 가능해질 것이라 주장함
 - 임소영 등(201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면세 농산물을 구매한 제조업자 또는 외식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로서, 영세업자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정성 및 한도에 대한 논란, 업종별 차별, 국내산 역차별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함.

- 박주철 등(2021)은 현행 소득세법령 상 농어업관련 사업소득 비과세범위에서 농업소득과 어업소득간에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광범위한 비과세 범위가 존재하는 농어업 사업소득은 농업인이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원파악이 어려워 소득이 있지만 과세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 박주철 등 (2021)은 농어업 관련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신의 소득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인한 과세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박주철 등(2021)은 농어업 관련 사업소득의 비과세범위 기준을 수입금액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농어업 관련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성실신고 유도 및 과세누락 방지를 위해 비과세 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함

- 장태평 등(2011)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큰 농업소득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의 농업소득 평준화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
 - 농업의 특성상 병충해,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소득의 변동이 심하며, 다년생 작물의 재배시 수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생산기간이 장기간인 농작물의 경우에는 생산원가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비용처리가 되더라도, 당해 회계연도에 반영할 수 없는 자본 비용 등으로 인하여 생산기간에는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소득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농산업손실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의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농업소득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는 농업소득평준화제도를 제시함
 - 농업은 그 특성상 연도별 소득의 변동이 심한데(서희열과 정규언, 2006), 미국의 경우 소득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반 사업에서 발생된 순영업손실(NOL)에 대해서는 2년

간 소급공제(carry back)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난이나 재해로 인한 손실(Eligible Losses)에 대해서는 3년간 소급공제가 가능하고, 농업손실(Farming Loss)에 대해서는 5년간의 소급공제가 가능(IRS, 2009).

나. 작물재배업의 조세제도

- 소득세법 제12조에 의거 논밭을 작물 생산을 위해 이용하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나,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농업소득은 일정 부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 작물재배업과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제외되며, 이는 농업생산 촉진 및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이루어짐
 - 2015년부터 채소,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커피 등),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기타 작물재배업(인삼 등), 시설작물재배업(콩나물 등)은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
 - 이 외에도 농가부업소득(연 3,000만원), 전통주제조소득(연 1,200만원), 산림 소득 등에 대해서도 비과세

- 임소영 등(2016)은 작물재배업의 조세제도는 타 산업간의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
 - 작물재배업 소득이 2010년부터 농업소득세의 폐지와 함께 비과세로 전환되었으나, 식량작물재배업을 제외한 2015년 작물재배업 소득분에 대해 수입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 납부를 하고 있음
 - 수직적 공평성에 맞도록 소득세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작물재배업 전체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은 저소득 농가에 비해 고소득 농가가 잠재적으로 더 큰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임소영 등 2016)

- 작물재배업 관련 비과세를 다룬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서희열 등(2008)은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업사업자의 경우 현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과세관청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음. 또한 농업인이 재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판매에 큰 제약이 있는 상황임
 - 안종석 등(2010)는 작물재배업 비과세는 과세 형평성 저해, 농산물 유통질서 왜곡, 농업정책의 실효성 약화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한편, 시설작물재배 농가에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우리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박상원(2011)은 작물재배업만 과세 제외 되는 근거 부족, 타 산업과의 형평성 침해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 작물재배업에 대한 비과세의 계기가 된 농업소득세 폐지 이유는 세수는 미미한데 반해 납세행정비용은 높았다는 것인데, 이는 농업소득세라는 별도의 세목만을 따로 분리해서 평가했기 때문이며, 만약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이었다면 해당 논리는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함.
 - 김미복과 김수석(2011)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이 품목 간 과세 불균형을 야기하며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농가 소득에 대한 공인된 정보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농업소득의 세원 누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 홍정학과 권승구(2016)는 농산물 유통 단계에서 농업인의 농업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하는 등 과세특례로 인하여 농산물의 기초가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여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저해됨을 지적함
- 작물재배업 관련 비과세를 다룬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서희열 등(2008)은 사업자등록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발행,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와 일치하게 세무서를 통한 등록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매출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김미복과 김수석(2011)은 EITC의 확대 도입과 함께 농가가 복지정책에 보다 활발하게 편입되기 위해서는 농가의 경영정보가 필요하며, 작물재배업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종합소득세 과세를 통해 농업부문을 제도의 틀 내부로 편입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소득세 확대 부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과세 후 공제나 감면을 이용해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홍정학과 권승구(2016)는 과세형평성의 문제와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 강화, 농업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여기서 과세는 농업인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 보다는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 향상과 농업인에 대한 수입과 소득에 대한 데이터 축적으로 정책활용, 농업인의 가격교섭력, 실질소득 향상, 영세농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함.

다. 농업인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근거하는데 두 개의 법률 중 하나만 적용되더라도 해당 납세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현재 농산물 생산자는 면세사

업자여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의무를 갖지 않고,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되면 소득세법에 사업자 등록 의무를 가지게 되나(임소영 등 2016), 과세 제외 또는 비과세 기준 금액으로 인해 사업자 등록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않음

- 식량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상 아예 사업소득에서 제외되고, 기타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이하인 경우 비과세 되는 등의 비과세 범위가 상당히 넓음
-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업사업자는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며, 과세관청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인 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수 없어 소비자 직판매에 제약이 있음(서희열 등 2008). 일부 농업인의 경우 생산 작물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나, 소득세 과세문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 불이익이 있는 등 불합리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서희열 등 2008)

□ 이러한 문제점을 다수의 연구자가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자등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김태용(2004)의 연구에서는 세무협력의무만 부과하고 일정금액이상의 매출일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농가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농가 사업자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 농협중앙회 세무회계단(2004)에서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작물재배업 및 농가부업규모의 소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사업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서희열·정규언(2006)에서는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의 경우에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농작물의 판매시 계산서 교부 의무와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는 세무협력의무만을 부과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 일정규모 이하의 매출에 대해서는 전액을 농업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본인의 생산한 농작물 판매라고 보기 어려운 일정규모 초과분의 매출에 대해서는 초과분 전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함

□ 서희열 등(2008)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통신판매업자로 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
-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 가산세의 대상이 됨.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나, 거래내용을 입증하는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꺼려하는 현재의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음

라. 농업인 납세협력비용

- 임소영 등 (2019)의 연구는 농산물의 과세 전환은 소비자와 농업인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을 불러일으켜, 납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
 - 임소영 등 (2016)은 작물재배업에 대한 비과세는 형평성 뿐만 아니라, 소득신고 부재로 인하여 장부기장과 경영기록의 소홀히 하는 문제를 제시함
 - 임소영 등(2019)은 농산물의 과세 전환으로 인한 편익은 비가시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반면, 비용은 가시적이고, 즉각적으로 나타남
 - 농산물의 과세전환은 농산물 소비감소, 농업인의 납세협력비용 증가, 소비자 세부담 등의 비용을 일으킬 수 있음

- 서희열 등(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의 경우 소비자 직거래시 신용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납품처가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나, 세무신고의 어려움,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재배작물의 소득세 비과세를 증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함
 - 이와 유사하게 장태평 등(2011)은 농촌 인력이 노령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합원 스스로 전자적 접근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며, 계산서 발행 등 추가인력이 소요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함

2. 해외연구

1. 농업 분야의 조세지원에 관한 견해에 관한 연구

- 경제학자들은 몇 가지 점에서 농업 조세지원의 활성화를 비판해 왔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농업 조세지원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납세자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부유한 농지 소유자와 농장 운영자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음
 - 둘째, 특정 분야에 조세지원을 집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사회의 다른 분야에 부과하며, 명확한 광범위한 사회적 이익이 없다는 시각이 있고(Alston and James 2002).
 - 셋째, 그들은 농업에 조세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방적인 국제 무역을 방해하여 세계 경제

에 순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함(Johnson 1991; Sumner 2003).

□ 반면, 농업 조세지원의 지지하는 관점도 존재함

- 농업 조세지원 정책은 농산물 시장을 안정시키고, 저소득 농부들을 돕고, 농촌 개발을 돕고, 농장 투입 공급과 농업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국가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함(Gardner 1992; Johnson 1991; Wright 1995).
- 또한 정부가 조세지원을 하는 이유는 시장의 실패를 조정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원을 통한 소득 이전 기능을 통해 분배의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함임

□ 1930년대 초부터, 주요국의 정부는 농부들을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하였으나, 인구의 많은 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가 농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경향이 있음(Sumner, 2008)

- 미국과 대만과 같은 나라에서 소득이 증가하고 농장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서, 보조금 등을 이용하여 그들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전향함
- 개도국에서 부과하는 농업세는 주로 토지와 같은 자원의 저활용이나 비효율적인 사용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임
- 농업세로 증과되는 토지세는 역설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유휴 경작 토지를 매각하게 함으로써 더 나은 투자처를 모색하게 유도하는 것임

2. 농업 분야의 조세지원 특징에 관한 연구

□ 만성적 빈곤층이 가장 많은 분야가 농업이기 때문에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필수로 여겨져 왔음

- 이로 인해 과거에는 농업분야의 상품에 대한 세율을 낮추거나 면제하여 구매를 촉진하고 농업분야의 소득을 진작시키는 정책을 펼쳐왔음

□ Heady(2002)는 주요국의 조세지원은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를 낮추고, 세금 체계를 단순화하며, 소득 보장(income security)에 관한 제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주장함

- Krueger et al.(1988)은 선진국은 농업 분야에 적극적인 조세지원을 하는 것과는 달리 개도국은 농업 분야에 과세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함

- 재산을 증식할 목적으로 캐나다의 경우 미국에서 운용 중인 NISA와 유사한 순소득안정계정을 운용하고 있음
 - NISA는 농업인 저축 프로그램으로 매년 5,000달러 또는 농업 매출의 2% 중 낮은 금액을 예금할 수 있음
 - 해당 예금은 농업분야의 5년 평균 매출의 150%를 초과할 수 없고, 농가 소득이 정부가 설정한 기준(established thresholds) 이하로 감소하면 출금 가능함

3. 농업 분야의 조세지원에 관한 연구

- Bird(1974)의 연구는 농업은 가장 대부분의 국가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필연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주장함
 - 농업 분야의 정부의 재정 지원은 매우 중요한데, 특히 조세제도를 이용한 방식은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음
 - 농업 분야는 실제로 대부분 국가에서 비교적 가벼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농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의도가 없음
 - 그 이유는 농업 생산성을 저해하므로 농업 생산성의 성장률이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임
-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보면, 조세제도를 통한 농업 분야의 지원은 단순히 특정 세금(e.g 소득세)이 아닌 전체 조세제도의 변화(소비세, 재산세 등)가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함
 - OECD(2010)는 소득세(법인세)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조세 구조가 성장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함을 주장함
- 조세 정책은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농업의 환경적 결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Durst and Monke(2001)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의 양도소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토지 가격의 상승을 통한 이익 실현이 가능한 대규모 농민에게 유리하였기 때문에 농지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주장
- 소득세 측면에서 농업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위 계층에 속하는 농가에 하위 계층에 속하는 소규모 농가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소득

이 적은 농업인에 관한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을 수 있음(Durst & Monke, 2001).

- 미국의 경우 주된 농업이 아닌 소규모 농장 운영하는 경우, 비과세로 인해 조세절감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숫자가 증가했음(Durst & Monke, 2001; Hoppe & Banker, 2010)
- 농업 외의 소득이 있는 비농업인이 소유한 소규모 농장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 비농업소득에서의 과세소득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었고, 소규모 농장 소유로 인해 비농업인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농업에 조세 혜택을 주는 것이 농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Durst & Monke, 2001; Hoppe & Korb, 2004)

4. 농업 분야의 조세지원으로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연구

- 일반적으로, EITC 포함한 조세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Berube & Tiffany, 2004).
 - 대도시의 가정이 EITC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시골 지역의 가정이 그 뒤를 이으며, 비교적 작은 도시 지역과 큰 교외 지역의 가정이 EITC를 받을 가능성이 낮음(Berube & Tiffany, 2004).
- Vilsack(2017) 연구는 EITC는 소득이 도시 지역보다 낮은 경향이 있고 빈곤율이 더 높을 수 있는 일부 시골 지역에서 특히 중요할 수 있음을 제시함
 - 이러한 세액공제는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상당한 수의 근로자의 임금을 근본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농촌 근로자와 그 가족, 특히 농촌 빈곤층에 주요 소득원이 되었음(Durst, 1996)
 - 그 이유는 농촌 빈곤율이 더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농촌 지역은 저임금 일자리가 더 많기 때문임
 - 따라서 농촌의 납세자들은 저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e.g EITC)에서 가장 많은 혜택이 있음
 - 미국의 경우 자녀가 없는 저소득 근로자는 약 90만 명이었으며(96년 기준), 이러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비중은 총 EITC의 3% 미만이었음

IV. 전문가 인터뷰

- 전문가 인터뷰는 실무, 연구기관, 학계에 소속된 전문가를 중심으로 서면 질의 및 회신 방식으로 수행함
 - 회계/세무 전문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원, 교수 등 전문가 총 10명에게 11월 9일(수)에 1차 질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추가 질문을 포함한 질문서를 11월 12일(토)에 발송함
 - 이중 총 7명에게 회신을 받음
 - 각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의 전문 취합본은 <첨부 2>를 참고

- (농업인 소득 미과약 원인) 현재 농업인이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근본 원인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는 농업인에 대한 일반적인 세제 미적용이 문제인 것으로 평가함
 - 농업인의 소득 상당 부분이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되고, 생산되는 농산물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 점에 기인한 것으로 답변함
 - 이로 인해 농업인이 자신의 소득을 굳이 과세관청을 포함한 정부 기관에 알릴 필요가 없게 되어 정부 역시 관련 정보를 취합할 수 없게 됨
 - 그 밖에 농업인의 상당수가 고령이고, 영세하며, 농업소득 계산의 성격(수입 비용 과약의 불분명함, 지인과의 거래, 품앗이 등)도 원인으로 지적함

- (과세/영세율 전환 효과) 농산물 등을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영세율로 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증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효과를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적용되고 있는 농어업 기자재 영세율 제도 등의 이유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답변이 다수임
 - 농산물을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고 영세율로 전환할 경우 매입세액 환급이 증가하여 사업자등록이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으나, 이미 매입시 매입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는 조세특례제한법⁵⁰⁾상의 거래(e.g. 농약, 비료, 농업용 기계 등)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답변이 다수임
 - 또한 과세(영세율)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의제매입세액공제간의 조율 문제, 높은 인건비 비중, 농업인의 고령화, 영세성, 과세 전환으로 인한 농업인의 심리적 위축 등으로 사업자등록의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50)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과세(영세율) 제도가 효과적일 것이고, 농업인의 세무 업무 노출로 인한 세무 인식 제고, 거래의 투명성, 부정 유통의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 부분도 있음
- (사업자 등록 방법) 농업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1) 농업인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 2) 대리인이 수행 3) 홈택스 이용” 중 어느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냐는 질문에는 연령, 농업 규모 등에 따라 선택되는 방법이 달랐고, 대리인을 활용할 경우 농협 등의 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 귀농인, 청장년층의 농업인, 규모가 있는 농업인의 경우 1), 3)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변이 많았음
 - 고령층이고 영세한 농민의 경우 2)의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답변이 많았는데, 지역의 농협을 대리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복수의 답변이 있었음
- (직불금 등과의 연계)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는 질문에는 직불금 제도의 취지 및 직불금 수혜 농민의 영세성, 사업자 등록의 수용 때문에 적절치 못할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음
 - 해당 방안이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을 높일 수는 있겠으나, 영세소농에게 일정한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등록과 연계하는 것은 공익직불금 등의 취지를 볼 때 부적절하다고 보는 답변이 많았음
 -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거나, 금융지원, 정책보험의 가입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 농업경영체등록과 사업자등록을 연계하는 제안도 있었고, 과세 연계 시 충분한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공무원 활용) 사업자등록시 각 지역의 공무원(e.g. 농업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홍보 이상의 역할을 부담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지역 농협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높았음
 - 공무원을 활용할 경우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인상, 농업직 공무원의 세무 분야 이해도, 인력 상황 및 업무 강도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역할은 안내 또는 홍보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 공무원 보다는 지역의 농협 조직을 활용하여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복수의 답변이 있었음

- 기존의 경영체등록과 같이 행정을 통한 등록이 효과적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 (소득지급자 활용) 농업인 본인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가 어려울 경우 농업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농업인의 매출을 과세관청에 통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 농산물 거래방식의 다양성, 거래처의 행정비용 증가, 복잡한 유통경로,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농업인의 수용성 등을 감안할 때 해당 방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높았음
 - 농업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범위 문제를 거론한 의견도 있었음
 - 단, 농산물도매시장, 농협과 같이 큰 거래처의 경우 계산서를 역발행하게 하여 농업인이 이를 근거로 소득신고를 하고, 다른 거래의 경우 농업인이 직접 계산서 등의 증빙을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를 제안한 의견이 있었고, 위의 방법이 농업인의 직접 소득 신고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 (추계자료 활용) 농업인의 비용을 추계율(e.g.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활용하여 정하되, 실제 증빙으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하는 방안에는 지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추계율이 농업의 경비 수준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관점도 있었음
 - 과세 제도 도입 초기 그리고 중소영세 농가에 추계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단, 추계율이 농업의 비용을 충분히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음
 -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 청년농의 경우 실제 증빙을 통해 비용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투명하고 객관화된 경영장부 작성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소득 대용치) 농업인의 소득과 가장 관련이 높은 대용치(proxy)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의 표준소득자료, 재배면적, 재배작물, 수확량, 표준소득자료 등 다양한 대안들이 있었으나 각각의 대안에 한계는 존재함
 -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평균치를 적용함에 따른 편차 문제, 품목수 제한의 문제 등의 한계가 언급되었음
 - 이 밖의 재배품목과 수확량에 평균 가격을 반영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었으나, 개별농가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근로장려세제) 현재의 근로장려세제를 농업인에게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재산

요건(2억원)에 인한 농업인의 배제 우려가 높았음

- 현재의 근로장려세제에서 토지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데, 농업인의 상당수가 토지(농지)를 기반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있어 재산요건을 적용할 경우 많은 농업인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 그 밖에 현재의 조정을 30%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적격증빙 발급) 농업인들의 매출 결제를 신용카드 등 추적 가능한 적격증빙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 또는 강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과세체계의 편입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용카드 등의 적격 결제 수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과세 체계 편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소규모 영세농까지 강제하기 어려우니 일정규모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하고, 정책 보험 등의 지원 제공시 적격증빙자료에 의한 수입만을 인정한다면 적격증빙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음
- 다음과 같이 출하처별로 적격 증빙을 달리 집중하는 방법도 제안됨
 - 농산물도매시장, 공판장, 농협 및 축협: 거래처에서 계산서 역발행
 - 사업자판매분: 거래상대방의 계산서 요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 정발행
 - 인터넷판매, 소비자직거래: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 기타거래분: 무통장입금, 현금거래분—전체 농산물 판매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기타 비용) 농업인들이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납부하는 세금 외에 어떠한 비용이 있을 것인 지라는 질문에는 세무대리인 비용, 자료 준비 및 기장 업무에 따른 비용 등이 언급되었음

- 세무신고, 장부기장 등의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함에 따른 직접적 비용, 카드수수료, 카드결제기 구입에 따른 비용, 장부기장 자료 준비 및 정리를 위한 기회비용이 있었음
 - 단, 농협이 세무업무를 일정부분 지원한다면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건강보험료 등의 발생, 과세 편입에 대한 소통 비용 등의 의견이 있었음

□ (비과세 기준 하향 및 소득세 면제) 소득세법 개정방안의 하나로 비과세 수입 기준금액을 하향(현 10억-> 1억)하고, 1억에서 10억까지는 비과세가 아닌 소득세 면제(소득신고 의무부여)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으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면제의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세무 신고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고, 건강 보험 등의 보험료 증가 부담도 있어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타 산업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 면제보다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농업인의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나올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음
- 소득세를 면제하더라도 면제 기준 금액인 10억 역시 하향시킬 필요가 있고, 농업 소득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1억원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음

□ (인센티브) 농업인에게 사업자등록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주로 정책지원 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타 정책 지원과의 연계, 대행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음

- 신용평가시 신용가점 부여, 정책자금수여, 로컬푸드 입점 등에 우선권 부여, 정책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등의 의견이 있었음
- 금리 인하, 대출 한도 증액, 대출 기간 연장 등의 금융 혜택 제언도 있었음
- 농업수입보장 보험 등 소득안정제도 적용시 사업자등록자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방안, 농업 소득안정 정책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부여하자는 답변도 있었음
- 소득세 신고 비용지원, 신고대행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음

□ (개정세목 선택) 농업인 소득 파악에 실효성이 높은 방안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소득세법 개정 중 무엇이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 대다수의 답변이 소득세법 개정을 선택하였음

- 소득 파악의 관점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제외, 비과세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답변임
-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도 농업인의 소득파악,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로 인한 농산물 유통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물가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부가가치세 과세기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음

□ (기타) 기타 농업인들의 소득 파악을 위한 제안으로 실질적인 과세 제도로의 편입, 납세의

편의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조세지출지원을 재정사업지원으로의 전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

- 과세가 없는 상황에서는 소득신고의 필요성이 없고, 실질적인 검증 및 확인도 어렵기 때문에 농업인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되, 납세의 편의성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고의 편의를 위해 지역대학 및 농협, 농업인 단체, 세무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음
-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현재의 조세지출지원에서 재정지출지원으로 전환하고, 농업분야 추가세수를 기반으로 재정사업 지출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음
- 농업 소득의 연도별 편차가 크므로 과세연도 단위를 다년간으로 확대하고, 결손금 소급 공제 기한도 넓혀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대규모 전업농이나 축산농가,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마을 단위 사업체 등에 우선적으로 개정제도를 적용하고 확대하는 방향을 제안한 답변도 있었음

V. 계량 분석⁵¹⁾

1. 타 직군의 자료 분석(국세청)

- 이하에서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NTS DATA LAB)에서 수령한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
 - 국세청 국세통계센터에서 온라인 자료 신청하여 주무부처(i.e. 근로장려금 관련 부서, 소득세 관련 부서)에서 승인을 받은 자료임

- (표본 추출) 본 연구의 국세청 분석대상 자료는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납세자 수준의 데이터로 표본 데이터임
 - 해당 표본은 납세자 개인 수준(individual-level)의 미시자료로 귀속연도는 2018년에서 2020년임
 - 전수 데이터가 아닌 표본 데이터로 표본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음
 - 총화 임의 추출 10% 기준 적용(국세청 제시 표본 기준)
 - 총화기준은 근로장려금대상 사업소득 5분위 기준(국세청 제시 표본 기준)
 - 추출된 데이터 중 다음의 데이터는 고려하지 않음
 - 사업소득자가 아닌 자(e.g.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자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자

- (표본 특성) 분석 대상 표본 개수는 159,732개로 각 기준별 표본의 비중은 다음과 같음
 - 근로장려금 목적 업종 조정률 중 90%를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비중: 59%)
 - 90% 조정률을 적용하는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업
 - 반면 30% 조정률을 적용하는 업종은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임
 - 단독, 홀별이, 맞별이 중에는 단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비중: 58%)
 - 재산의 경우 5천만원~1억원 구간 비중이 가장 높음(비중: 33%)

51) 본 계량분석에서 제시된 자료 분포 현황(평균, 최소값, 1분위, 중위수, 3분위, 최대값 등)은 분석 대상의 각 항목별(e.g. 결정세액, 근로장려금 등)로 별도로 정렬하여 표시한 것임

<표 15> 분석대상 근로장려금 수령자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전체
표본수	49,036	51,529	59,167	159,732
조정률				
20%(도매업)	1,759	1,711	1,790	5,260
30%(농업 등)	4,742	4,230	4,506	13,478
45%(제조업 등)	7,083	7,030	7,692	21,805
60%(상품중개업 등)	3,579	3,377	3,530	10,486
75%(서비스업 등)	4,786	4,484	4,873	14,143
90%(부동산임대업 등)	27,087	30,697	36,776	94,560
단독 여부				
단독	26,488	29,914	36,931	93,333
홀벌이	17,416	16,854	17,378	51,648
맞벌이	5,132	4,761	4,858	14,751
재산				
5천만원 이하	13,723	14,737	16,536	44,996
5천만원~1억원	16,244	17,174	19,824	53,242
1억원~ 1억 5천만원	11,144	11,584	13,203	35,931
2억원 이하	7,925	8,034	9,604	25,563

- (평균 기준 현황) 분석대상 표본의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목적상), 근로장려금을 평균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표본 전체의 총수입금액(평균)은 21.4 백만원이고, 결정세액(평균)은 63천원이며, 근로장려금(평균)은 1.1백만원, 홀벌이가구가 수령하는 근로장려금이 가장 높음
 - 표본 중 조정률 30%가 적용되는 신청자의 경우 총수입금액(평균)은 평균 37.3 백만원이며, 결정세액(평균)은 65천원이며, 근로장려금(평균)은 1.3백만원이며, 홀벌이가구가 수령하는 근로장려금이 가장 높음

<표 16> 분석대상 근로장려금 수령자 평균 총수입금액, 결정세액, 근로장려금 현황

구분		단독	홀벌이	맞벌이	전체
전체	표본수	93,333	51,648	14,751	159,732
	총수입금액	16,300,000	28,900,000	27,700,000	21,400,000
	소득금액	4,042,743	5,770,972	6,288,270	4,808,922
	결정세액	55,499	72,125	81,731	63,298
	총급여액등	9,261,793	14,200,000	16,600,000	11,500,000
	근로장려금	920,317	1,550,631	1,373,648	1,165,988
30% 조정률	표본수	6,994	5,164	1,320	13,478
	총수입금액	31,000,000	44,100,000	44,200,000	37,300,000
	소득금액	3,868,549	5,663,251	6,288,864	4,793,216
	결정세액	52,295	81,681	76,697	65,944
	총급여액등	8,906,400	12,900,000	15,900,000	11,100,000
	근로장려금	999,201	1,657,550	1,498,818	1,300,374

- (전체) 아래 표는 표본 전체의 근로장려금 수령자에 대한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의 연도별 분포임
- 총수입금액의 평균치는 21.4백만원(중위수: 17백만원), 소득금액의 평균치는 약 4.8백만원(중위수: 약 3.9백만원), 결정세액의 평균치는 약 63천원(중위수: 0원), 총급여액 등의 평균치는 11.5백만원(중위수: 10.8백만원), 근로장려금의 평균치는 약 1.1백만원(중위수: 약 1.1백만원)임
 - 최소값, 최대값은 국세통계센터의 반출 불허로 NA 처리함(이하 동일)

<표 17> 근로장려금 수령자_전체

구분	2018	2019	2020	전체
표본수	49,036	51,529	59,167	159,732
총수입금액				
평균	22,300,000	21,800,000	20,400,000	21,400,000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11,000,000	10,600,000	9,650,000	10,300,000
중위수	17,800,000	17,400,000	16,100,000	17,000,000
3분위	27,500,000	26,900,000	24,800,000	26,300,000
최대값	NA	NA	NA	NA
소득금액				
평균	4,902,792	4,892,817	4,658,061	4,808,922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2,550,000	2,580,000	2,420,000	2,510,000
중위수	3,980,000	3,990,000	3,790,000	3,910,000
3분위	6,330,000	6,280,000	5,980,000	6,180,000
최대값	NA	NA	NA	NA
결정세액				
평균	59,248	68,230	62,358	63,298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	-	-	-
중위수	-	-	-	-
3분위	70,000	80,000	70,000	70,000
최대값	NA	NA	NA	NA
총급여액 등				
평균	11,800,000	12,000,000	10,900,000	11,500,000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6,300,000	6,550,000	5,490,000	6,080,000
중위수	11,000,000	11,300,000	10,000,000	10,800,000
3분위	16,600,000	16,700,000	15,700,000	16,300,000
최대값	NA	NA	NA	NA
근로장려금				
평균	1,200,508	1,143,288	1,157,148	1,165,988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630,000	570,000	610,000	600,000
중위수	1,170,000	1,090,000	1,130,000	1,130,000
3분위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최대값	NA	NA	NA	NA

□ (단독 가구) 아래 표는 표본 중 근로장려금 수령자 중 단독 가구 유형의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의 연도별 분포임

○ 총수입금액의 평균치는 약 16.3백만원(중위수: 약 13.8백만원), 소득금액의 평균치는 약 4백만원(중위수: 약 3.5백만원), 결정세액의 평균치는 약 55천원(중위수: 0원), 총급여액 등의 평균치는 약 9.2백만원(중위수: 약 8.8백만원), 근로장려금의 평균치는 약 0.9백만원(중위수: 0.9백만원)임

<표 18> 근로장려금 수령자_단독

구분	2018	2019	2020	전체
표본수	26,488	29,914	36,931	93,333
총수입금액				
평균	16,600,000	16,600,000	15,900,000	16,300,000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9,000,000	8,780,000	8,200,000	8,590,000
중위수	14,100,000	14,200,000	13,200,000	13,800,000
3분위	19,900,000	20,000,000	19,200,000	19,700,000
최대값	NA	NA	NA	NA
소득금액				
평균	4,046,918	4,093,651	3,998,513	4,042,743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2,340,000	2,370,000	2,260,000	2,310,000
중위수	3,510,000	3,550,000	3,420,000	3,490,000
3분위	5,300,000	5,360,000	5,190,000	5,270,000
최대값	NA	NA	NA	NA
결정세액				
평균	54,622	59,521	52,872	55,499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	-	-	-
중위수	-	-	-	-
3분위	70,000	80,000	60,000	70,000
최대값	NA	NA	NA	NA
총급여액 등				
평균	9,344,361	9,782,479	8,780,818	9,261,793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5,400,000	5,650,000	4,680,000	5,200,000
중위수	8,930,000	9,340,000	8,210,000	8,820,000
3분위	13,400,000	13,900,000	12,900,000	13,400,000
최대값	NA	NA	NA	NA
근로장려금				
평균	927,419	895,770	935,106	920,317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520,000	480,000	520,000	500,000
중위수	930,000	870,000	940,000	900,000
3분위	1,490,000	1,460,000	1,500,000	1,490,000
최대값	NA	NA	NA	NA

□ (홀벌이 가구) 아래 표는 표본 중 근로장려금 수령자 중 홀벌이가구 유형의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총급여액 등, 근로 장려금의 연도별 분포임

- 총수입금액의 평균치는 28.9백만원(중위수: 23.6백만원), 소득금액의 평균치는 약 5.7백만원(중위수: 약 4.6백만원), 결정세액의 평균치는 약 72천원(중위수: 0원), 총급여액 등의 평균치는 14.2백만원(중위수: 13.9백만원), 근로장려금의 평균치는 약 1.5백만원(중위수: 1.43백만원)임

<표 19> 근로장려금 수령자_홀벌이

구분	2018	2019	2020	전체
표본수	17,416	16,854	17,378	51,648
총수입금액				
평균	29,300,000	29,200,000	28,100,000	28,900,000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15,700,000	15,100,000	14,300,000	15,000,000
중위수	23,900,000	24,000,000	22,900,000	23,600,000
3분위	36,700,000	36,700,000	35,200,000	36,200,000
최대값	NA	NA	NA	NA
소득금액				
평균	5,770,946	5,883,720	5,661,649	5,770,972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2,810,000	2,910,000	2,750,000	2,820,000
중위수	4,630,000	4,760,000	4,540,000	4,640,000
3분위	7,690,000	7,710,000	7,360,000	7,580,000
최대값	NA	NA	NA	NA
결정세액				
평균	62,665	75,262	78,563	72,125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	-	-	-
중위수	-	-	-	-
3분위	50,000	70,000	70,000	70,000
최대값	NA	NA	NA	NA
총급여액 등				
평균	14,100,000	14,600,000	13,900,000	14,200,000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8,100,000	8,530,000	7,790,000	8,100,000
중위수	13,900,000	14,300,000	13,600,000	13,900,000
3분위	20,200,000	20,700,000	19,900,000	20,300,000
최대값	NA	NA	NA	NA
근로장려금				
평균	1,564,535	1,524,830	1,561,719	1,550,631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910,000	840,000	910,000	890,000
중위수	1,480,000	1,390,000	1,450,000	1,430,000
3분위	2,440,000	2,400,000	2,450,000	2,440,000
최대값	NA	NA	NA	NA

□ (맞벌이 가구) 아래 표는 표본 중 근로장려금 수령자 중 맞벌이가구 유형의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총급여액 등, 근로 장려금의 연도별 분포임

○ 총수입금액의 평균치는 약 27.7백만원(중위수: 약 22.7백만원), 소득금액의 평균치는 약 6.3백만원(중위수: 약 5.2백만원), 결정세액의 평균치는 약 81천원(중위수: 0원), 총급여액 등의 평균치는 16.6백만원(중위수: 16.5백만원), 근로장려금의 평균치는 약 1.4백만원(중위수: 약 1.2백만원)임

<표 20> 근로장려금 수령자_맞벌이

구분	2018	2019	2020	전체
표본수	5,132	4,761	4,858	14,751
총수입금액				
평균	27,500,000	28,400,000	27,300,000	27,700,000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16,300,000	16,400,000	15,600,000	16,100,000
중위수	22,700,000	23,000,000	22,200,000	22,700,000
3분위	32,900,000	33,900,000	33,100,000	33,300,000
최대값	NA	NA	NA	NA
소득금액				
평균	6,374,072	6,406,276	6,081,978	6,288,270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3,275,000	3,250,000	3,120,000	3,210,000
중위수	5,330,000	5,250,000	5,030,000	5,190,000
3분위	8,420,000	8,280,000	7,840,000	8,190,000
최대값	NA	NA	NA	NA
결정세액				
평균	71,534	98,061	76,499	81,731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	-	-	-
중위수	-	-	-	-
3분위	80,000	100,000	90,000	90,000
최대값	NA	NA	NA	NA
총급여액 등				
평균	16,400,000	16,900,000	16,500,000	16,600,000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10,200,000	10,500,000	10,200,000	10,300,000
중위수	16,400,000	16,800,000	16,400,000	16,500,000
3분위	22,400,000	23,000,000	22,500,000	22,600,000
최대값	NA	NA	NA	NA
근로장려금				
평균	1,374,649	1,347,816	1,397,907	1,373,648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650,000	580,000	660,000	630,000
중위수	1,230,000	1,200,000	1,260,000	1,230,000
3분위	2,050,000	2,020,000	2,070,000	2,050,000
최대값	NA	NA	NA	NA

□ (30%_전체) 아래 표는 전체 표본 중 30%의 조정률이 적용되는 표본 전체의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의 연도별 분포임

○ 총수입금액의 평균치는 약 37.3백만원(중위수: 약 33.6백만원), 소득금액의 평균치는 약 4.8백만원(중위수: 약 3.8백만원), 결정세액의 평균치는 약 66천원(중위수: 0원), 총급여액 등의 평균치는 11.1백만원(중위수: 10.2백만원), 근로장려금의 평균치는 약 1.3백만원(중위수: 1.3백만원)임

<표 21> 근로장려금 수령자_조정률 30%_전체

구분	2018	2019	2020	전체
표본수	4,742	4,230	4,506	13,478
총수입금액				
평균	36,700,000	38,600,000	36,700,000	37,300,000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21,500,000	22,900,000	21,200,000	21,800,000
중위수	33,200,000	35,200,000	32,600,000	33,600,000
3분위	48,400,000	50,000,000	48,500,000	48,900,000
최대값	NA	NA	NA	NA
소득금액				
평균	4,699,426	4,917,236	4,775,493	4,793,216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2,400,000	2,540,000	2,420,000	2,450,000
중위수	3,700,000	3,890,000	3,790,000	3,790,000
3분위	5,930,000	6,210,000	5,950,000	6,030,000
최대값	NA	NA	NA	NA
결정세액				
평균	48,754	69,135	81,039	65,944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	-	-	-
중위수	-	-	-	-
3분위	40,000	50,000	50,000	50,000
최대값	NA	NA	NA	NA
총급여액 등				
평균	11,000,000	11,500,000	10,900,000	11,100,000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6,120,000	6,550,000	5,930,000	6,160,000
중위수	9,980,000	10,700,000	9,900,000	10,200,000
3분위	15,000,000	15,600,000	14,900,000	15,200,000
최대값	NA	NA	NA	NA
근로장려금				
평균	1,336,693	1,287,773	1,273,981	1,300,374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750,000	740,000	730,000	750,000
중위수	1,300,000	1,300,000	1,295,000	1,300,000
3분위	1,560,000	1,500,000	1,500,000	1,500,000
최대값	NA	NA	NA	NA

- (30%_단독) 아래 표는 전체 표본 중 30%의 조정률이 적용되는 표본 중에 단독 가구 유형의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총급여액 등, 근로 장려금의 연도별 분포임
- 총수입금액의 평균치는 31백만원(중위수: 28.8백만원), 소득금액의 평균치는 약 3.8백만원(중위수: 약 3.3백만원), 결정세액의 평균치는 약 52천원(중위수: 0원), 총급여액 등의 평균치는 8.9백만원(중위수: 8.5백만원), 근로장려금의 평균치는 약 1.0백만원(중위수: 약 1.0백만원)임

<표 22> 근로장려금 수령자_조정률 30%_단독

구분	2018	2019	2020	전체
표본수	2,336	2,180	2,478	6,994
총수입금액				
평균	30,300,000	31,600,000	31,100,000	31,000,000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18,700,000	19,500,000	18,900,000	19,000,000
중위수	28,100,000	29,700,000	28,700,000	28,800,000
3분위	40,600,000	42,800,000	42,100,000	41,800,000
최대값	NA	NA	NA	NA
소득금액				
평균	3,717,885	3,876,170	4,003,874	3,868,549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2,210,000	2,265,000	2,180,000	2,220,000
중위수	3,200,000	3,405,000	3,365,000	3,310,000
3분위	4,730,000	5,060,000	5,070,000	4,980,000
최대값	NA	NA	NA	NA
결정세액				
평균	46,271	47,917	61,824	52,295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	-	-	-
중위수	-	-	-	-
3분위	50,000	50,000	50,000	50,000
최대값	NA	NA	NA	NA
총급여액 등				
평균	8,731,147	9,182,578	8,828,644	8,906,400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5,265,000	5,585,000	5,110,000	5,330,000
중위수	8,360,000	8,800,000	8,545,000	8,560,000
3분위	12,300,000	12,900,000	12,600,000	12,600,000
최대값	NA	NA	NA	NA
근로장려금				
평균	1,017,877	984,606	994,435	999,201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680,000	600,000	610,000	630,000
중위수	1,110,000	1,050,000	1,060,000	1,080,000
3분위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최대값	NA	NA	NA	NA

- (30%_홀별이) 아래 표는 전체 표본 중 30%의 조정률이 적용되는 표본 중에 홀별이 가구 유형의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의 연도별 분포임
- 총수입금액의 평균치는 44.1백만원(중위수: 40.2백만원), 소득금액의 평균치는 약 5.6백만원(중위수: 약 4.3백만원), 결정세액의 평균치는 약 81천원(중위수: 0원), 총급여액 등의 평균치는 12.9백만원(중위수: 12.0백만원), 근로장려금의 평균치는 약 1.6백만원(중위수: 약 1.6백만원)임

<표 23> 근로장려금 수령자_조정률 30%_홀별이

구분	2018	2019	2020	전체
표본수	1,927	1,617	1,620	5,164
총수입금액				
평균	43,400,000	45,600,000	43,500,000	44,100,000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24,900,000	27,300,000	24,100,000	25,400,000
중위수	39,700,000	42,000,000	39,400,000	40,200,000
3분위	60,400,000	61,600,000	59,900,000	60,600,000
최대값	NA	NA	NA	NA
소득금액				
평균	5,509,144	5,855,022	5,655,148	5,663,251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2,610,000	2,790,000	2,660,000	2,680,000
중위수	4,230,000	4,540,000	4,320,000	4,360,000
3분위	7,200,000	7,590,000	7,165,000	7,300,000
최대값	NA	NA	NA	NA
결정세액				
평균	49,964	89,555	111,549	81,681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	-	-	-
중위수	-	-	-	-
3분위	20,000	50,000	50,000	40,000
최대값	NA	NA	NA	NA
총급여액 등				
평균	12,700,000	13,300,000	12,700,000	12,900,000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6,990,000	7,680,000	6,815,000	7,120,000
중위수	11,800,000	12,600,000	11,600,000	12,000,000
3분위	18,100,000	18,700,000	18,200,000	18,300,000
최대값	NA	NA	NA	NA
근로장려금				
평균	1,671,209	1,648,850	1,649,988	1,657,550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1,060,000	1,040,000	990,000	1,030,000
중위수	1,640,000	1,580,000	1,560,000	1,590,000
3분위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최대값	NA	NA	NA	NA

- (30%_맞별이) 아래 표는 전체 표본 중 30%의 조정률이 적용되는 표본 중에 맞별이 가구 유형의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의 연도별 분포임
- 총수입금액의 평균치는 44.2백만원(중위수: 41.2백만원), 소득금액의 평균치는 약 6.3백만원(중위수: 약 5.0백만원), 결정세액의 평균치는 약 77천원(중위수: 0원), 총급여액 등의 평균치는 15.9백만원(중위수: 15.3백만원), 근로장려금의 평균치는 약 1.5백만원(중위수: 약 1.4백만원)임

<표 24> 근로장려금 수령자_조정률 30%_맞별이

구분	2018	2019	2020	전체
표본수	479	433	408	1,320
총수입금액				
평균	40,900,000	47,900,000	44,200,000	44,200,000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24,800,000	29,300,000	25,800,000	26,700,000
중위수	38,700,000	43,800,000	40,300,000	41,200,000
3분위	53,400,000	59,400,000	57,700,000	56,700,000
최대값	NA	NA	NA	NA
소득금액				
평균	6,228,768	6,656,559	5,969,191	6,288,864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3,160,000	3,430,000	3,135,000	3,235,000
중위수	4,880,000	5,340,000	5,015,000	5,015,000
3분위	8,500,000	8,720,000	7,325,000	8,310,000
최대값	NA	NA	NA	NA
결정세액				
평균	55,992	99,700	76,593	76,697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	-	-	-
중위수	-	-	-	-
3분위	50,000	80,000	50,000	60,000
최대값	NA	NA	NA	NA
총급여액 등				
평균	15,100,000	16,400,000	16,400,000	15,900,000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8,970,000	10,300,000	10,500,000	9,840,000
중위수	14,300,000	15,900,000	16,200,000	15,300,000
3분위	20,700,000	22,600,000	22,000,000	21,500,000
최대값	NA	NA	NA	NA
근로장려금				
평균	1,545,762	1,465,704	1,478,848	1,498,818
최소값	NA	NA	NA	NA
1분위	790,000	700,000	700,000	735,000
중위수	1,480,000	1,400,000	1,340,000	1,420,000
3분위	2,290,000	2,160,000	2,300,000	2,240,000
최대값	NA	NA	NA	NA

2. 농업인 자료 분석(통계청)

- 이하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을 가정하여 농업총소득, 결정세액, 근로장려금을 추정·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현행 농업인 비과세 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세청 자료를 활용할 수 없음을 따라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의 농가소득자료를 활용함
 - 농가경제조사는 통계청에서 농가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농가원부를 통해 자산, 부채에 대한 정보와 농가소득, 농작물수입, 농업잡수입, 농업외수입, 농업외지출, 농업노동 투입내역 등이 확인 가능
 - 농가경제조사는 전국 표본 농가 3,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며,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https://mdis.kostat.go.kr/index.do>)를 활용하여 데이터 추출함
 - 농가경제조사는 매 5년마다 농가의 모집단 변화를 반영하여 표본을 개편하고 있으며, 2018년 표본이 개편됨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의 자료를 활용함
- (추정농업총소득)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청의 농가소득 관련변수는 다음과 같음
 - 농업총수입금액: 농가가 당해 연도의 농업경영결과로 얻은 총수입으로 농축산물판매수입, 생산물 중 자가소비 평가액, 대동식물 증식액, 재고농산물 증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농업경영비용: 농업경영에 투입된 일체의 비용으로 농업지출현금, 현물지출 평가액, 대농기구 등 농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 재고생산자재 증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자가생산하여 재투입된 중간생산물은 농업경영비에서 제외)
 - 추정농업총소득은 농업총수입금액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값
- (추정세액) 상기 추정농업총소득을 통해 추정세액을 산출함
 - 추정세액 : 추정농업총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각 연도별 세율을 곱한 값
 - 연도별 세율은 다음과 같음

<표 25> 연도별 세율

소득구간	2018-2020	2021
1,200만원 이하	6%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42%
10억원 초과	42%	45%

- (추정근로장려금) 제도분석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요건(단독가구, 홀별이 가구, 맞별이 가구),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추정함
 - (가구 구분) 농어가경제조사의 통계청 자료 중 가구원현황의 가구원자료를 통해 단독가구, 홀별이 가구, 맞별이 가구를 분류함
 - 통계청 자료의 가구원 구성현황은 매월 조사 및 집계되고 있으므로 12월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을 파악함
 - 단독가구는 통계청자료의 집계코드를 통해 구분
 - 가구원현황에서 경영주와의 관계 중(1. 경영주, 2. 배우자, 3. 미혼자녀, 4. 기혼자녀, 5. 손자녀, 6. 부모, 7. 조부모, 8. 미혼 형제자매, 9. 기타) 2. 배우자의 취업상태를 통해 맞별이 여부를 파악함
 - 취업상태는 1. 근로자, 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 무급가족종사자, 5. 학생, 6. 무직으로 구분되며, 배우자의 취업상태가 1, 2, 3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하므로 맞별이로 판단함⁵²⁾
 - 이외의 경우 모두 홀별이로 가정
 -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통계청 자료를 통해 배우자와의 합산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농업총수입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가정하여 업종별 조정률(30%)를 가정하여 산출함
 - 조정률: 농/임/어업, 광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은 30%
 - (재산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시 신청자의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요건을 고려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농가자산⁵³⁾을 기준으로 재산요건을 고려함
 - 농가자산은 농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용역편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자원을 말하며 농가자산은 크게 고정자산(유형자산과 무형자산)과 유동자산(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함

52) 2018년도 가구원현황의 취업상태코드는 1. 근로자, 2. 자영업자, 3. 무급가족종사자, 4. 학생, 5. 무직이며, 배우자의 취업상태가 1과 2에 해당하는 경우 맞별이로 구분함

53) 근로장려금 제도 하의 재산 요건에서 고려되는 항목과 통계청의 농가자산 항목은 일치하지 않으나, 농가자산 내의 자산 식별의 문제, 데이터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통계청의 농가 자산이 근로장려금 제도의 재산 항목에 부합한다고 가정하고 연구를 전개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한계임

- 상기 가구구분,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을 추정함
- (추정순장려금) 추정순장려금은 추정근로장려금에서 추정세액을 차감한 값으로, 양(+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추정세액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 분석 대상 표본 개수는 11,892 가구·연도⁵⁴⁾이며, 각 기준별 표본의 비중은 다음과 같음
 - 일부 농업총수입 및 농업경영비 변수의 결측이 존재하며, 이를 제외한 최종 표본은 2018년 2,972가구, 2019년 2,794가구, 2020년 2,972가구, 2021년 2,974가구임
 - 농업에 전업 혹은 겸업으로 하는 종사자의 분포를 보면 전업이 5,420가구로 가장 큰 비중(45.58%)을 차지하며 '1종겸업' 2,712개, '2종겸업' 3,760개임
 - '전문농가'는 4,097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34.45%)을 차지하며, '일반농가'는 3,221가구, '부업농가'는 3,376가구, '자급농가'는 1,198가구임
 - 영농형태별로 살펴보면, 종겸업이 3,760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31.62%)이며, 채소 3,032가구, 논벼 1,925가구, 축산 1,191가구, 과수 1,139 가구 순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0.5ha 미만인 3,509가구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0.5~1ha 구간이 2,790가구, 1.0~1.5ha 구간이 1,613가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10ha 이상의 규모의 농가도 존재함(183가구)
 -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함
 - 60대 이상 4,106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34.52%)을 차지하고 있으며, 50대(3,326가구), 40대(1,193가구) 순으로 나타남. 30대 이하는 22명으로 청년 농업인은 매우 희소함.
 - 가구별 농가소득 인원별로 살펴보면, 홑벌이가 9,146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맞벌이가 2,369가구, 단독가구는 377가구임.
 - 재산이 2억 이상인 가구가 9,286가구로 78% 비중을 차지하여, 대부분의 농가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인 2억 이상의 농가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분석은 다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통계청 제시 농업소득만 고려되었고, 해당 농업소득 전체가 현재 과세제외 또는 비과세 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를 과세하였을 경우를 가정하고,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세액 등을 계산
 - 통계청 제시 타 소득 즉 겸업소득, 사업외 소득은 고려되지 않음
 - 비과세 기준, 통산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 소득 성격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본 분석에서 타 소득은 고려되지 않음

54) 통계청 조사 자료는 가구 단위 패널 자료로서 본 연구 대상은 기본적으로 가구-연도 표본(family-year observation)임. 단, 용어 사용의 편의를 위해 이후부터는 "가구"로 명명함.

<표 26> 분석대상 농가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전체
농가수	2,972	2,974	2,972	2,974	11,892
전겸업별					
전업	1,374	1,338	1,374	1,334	5,420
1종 겸업	692	662	652	706	2,712
2종 겸업	906	974	946	934	3,760
주부업별					
전문농가	1,059	999	1,012	1,027	4,097
일반농가	811	812	790	808	3,221
부업농가	796	844	872	864	3,376
자급농가	306	319	298	275	1,198
영농형태별					
논벼	487	472	471	495	1,925
과수	292	271	284	292	1,139
채소	791	717	777	747	3,032
특작	46	40	30	53	169
화훼	25	23	23	21	92
전작	85	97	90	82	354
축산	290	304	299	298	1,191
기타	50	76	52	52	230
중겸업	906	974	946	934	3,760
경지규모별					
0.5ha 미만	884	871	866	888	3,509
0.5~1.0 미만	700	690	700	700	2,790
1.0~1.5 미만	411	405	397	400	1,613
1.5~2.0 미만	239	244	250	256	989
2.0~3.0 미만	323	312	304	294	1,233
3.0~5.0 미만	234	259	251	243	987
5.0~7.0 미만	88	85	94	85	352
7.0~10 미만	51	59	63	63	236
10 이상	42	49	47	45	183
경영주 연령별					
30대 이하	14	10	6	6	22
30대	118	100	97	76	273
40대	480	460	394	339	1,193
50대	1,144	1,122	1,111	1,093	3,326
60대 이상	1,216	1,282	1,364	1,460	4,106
단독 여부					
단독	92	93	95	97	377
홀벌이	2,246	2,306	2,295	2,299	9,146
맞벌이	634	575	582	578	2,369
재산					
2억 미만	706	674	634	592	2,606
5천만원 이하	60	73	58	52	243
5천만원~1억원	151	133	135	123	542
1억원~1억 5천만원	238	226	215	199	878
1억 5천만원~2억 미만	257	242	226	218	943
2억원 이상	2,266	2,300	2,338	2,382	9,286

- 아래 표는 분석대상 농가 중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인 2억원을 초과하는 농가의 분포이며, 분석대상 농가 11,892 가구 중 9,286가구(78.09%)는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 대상임.
- 연도별로는 2018년 2,266가구(76.24%), 2019년 2,300가구(77.34%), 2020년 2,338가구(78.67%), 2021년 2,382가구(80.09%)이며, 재산요건을 초과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표 27> 분석대상 농가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전체
농가수	2,972	2,974	2,972	2,974	11,892
2억원 미만	706	674	634	592	2,606
2억원 이상	2,266	2,300	2,338	2,382	9,286
2억원 이상 비중	76.24%	77.34%	78.67%	80.09%	78.09%

- 지리적 위치에 따라 토지 등의 시가가 차별적이므로, 대도시권 농업인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원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바,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초과하는 가구비중을 지역별로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 광역시 501가구 중 421가구가 2억원을 초과(84.03%)하며, 도 11,391가구 중 8,865가구 (77.82%)가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광역시의 경우 약 6.21%p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782가구 중 713가구(91.18%) 2억원 초과
 - 경기도의 경우 1,347가구 중 1,180가구(87.60%) 2억원 초과
 - 전라남도의 경우 1,433가구 중 976가구(68.11%) 2억원 초과

<표 28> 지역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초과 비중

시/도구분	계	2억원 미만	2억원 초과	2억원 초과 비중
전국	11,892	2,606	9,286	78.09%
광역시	501	80	421	84.03%
도	11,391	2,526	8,865	77.82%
부산광역시	64	4	60	93.75%
대구광역시	75	14	61	81.33%
인천광역시	116	17	99	85.34%
광주광역시	56	14	42	75.00%
대전광역시	65	10	55	84.62%
울산광역시	86	5	81	94.19%
세종특별자치시	39	16	23	58.97%
경기도	1,347	167	1,180	87.60%
강원도	1,165	251	914	78.45%
충청북도	1,164	309	855	73.45%
충청남도	1,329	275	1,054	79.31%
전라북도	1,334	369	965	72.34%
전라남도	1,433	457	976	68.11%
경상북도	1,523	382	1,141	74.92%
경상남도	1,314	247	1,067	81.20%
제주특별자치도	782	69	713	91.18%

가. 1안: 농업인에 대한 현행 소득세 및 근로장려금 제도 전면 적용

- (전체) 아래 표는 농업인에 대해 현행 소득세 및 근로장려금 현행 제도를 전면 적용하는 경우, 농업총수입금액, 추정농업총소득(농업총수입금액-농업경영비), 추정세액, 추정장려금, 추정순장려금(추정장려금-추정세액)의 연도별 분포임
 - 표본 전체의 농업총수입금액(평균)은 50.1백만원,이고, 추정농업총소득(평균)은 16.1백만원이며, 추정세액(평균)은 약 3.0백만원으로 나타남. 추정장려금(평균)은 217,194원이며, 추정장려금과 추정세액을 차감한 추정순장려금(평균)은 약 -2.9백만원임
 - 추정장려금은 최소값, 1분위, 중위수, 3분위 모두 0(영)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근로장려금의 상한액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
 - 추정순장려금(평균)은 약 -2.9백만원으로 순현금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9> 분석대상 농가 현황_재산고려_전체

구분	2018	2019	2020	2021	전체
농가수	2,972	2,974	2,972	2,974	11,892
농업총수입					
평균	48,600,000	47,800,000	50,200,000	53,800,000	50,100,000
최소값	4,800	15,000	31,250	34,000	4,800
1분위	5,492,105	5,215,000	5,149,525	5,686,530	5,378,890
중위수	16,300,000	14,900,000	15,000,000	15,900,000	15,500,000
3분위	49,400,000	44,800,000	47,500,000	52,500,000	48,500,000
최대값	1,560,000,000	2,090,000,000	2,520,000,000	2,860,000,000	2,860,000,000
추정농업총소득					
평균	16,600,000	13,900,000	15,900,000	18,200,000	16,100,000
최소값	-340,000,000	-161,000,000	-355,000,000	-110,000,000	-355,000,000
1분위	634,343	28,450	353,400	796,813	435,707
중위수	5,018,880	3,467,542	4,192,828	5,030,656	4,452,420
3분위	18,200,000	14,600,000	16,700,000	18,900,000	17,200,000
최대값	750,000,000	825,000,000	887,000,000	1,000,000,000	1,000,000,000
추정세액					
평균	3,093,871	2,639,704	3,127,773	3,533,646	3,098,744
최소값	0	0	0	0	0
1분위	38,061	1,707	21,204	47,809	26,142
중위수	301,133	208,053	251,570	301,839	267,145
3분위	1,648,443	1,106,045	1,421,593	1,751,610	1,495,453
최대값	280,000,000	311,000,000	337,000,000	386,000,000	386,000,000
추정장려금					
평균	248,844	218,939	203,343	197,664	217,194
최소값	0	0	0	0	0
1분위	0	0	0	0	0
중위수	0	0	0	0	0
3분위	0	0	0	0	0
최대값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추정순장려금					
평균	-2,845,028	-2,420,765	-2,924,430	-3,335,982	-2,881,550
최소값	-280,000,000	-311,000,000	-337,000,000	-386,000,000	-386,000,000
1분위	-1,529,615	-936,508	-1,271,959	-1,604,274	-1,322,030
중위수	-167,056	-111,471	-151,834	-204,613	-157,341
3분위	0	0	0	0	0
최대값	3,000,000	2,867,809	2,769,482	2,958,184	3,000,000

- (단독) 아래 표는 근로장려금의 가구요건 중 단독가구에 대한 농업총수입금액, 추정농업총소득(농업총수입금액-농업경영비), 추정세액, 추정장려금, 추정순장려금(추정장려금-추정세액)의 연도별 분포임
- 농업총수입금액의 평균치는 13.1백만원(중위수: 5.4백만원)이고, 추정농업총소득의 평균치는 약 3.8백만원(중위수: 2.0백만원), 추정세액의 평균치는 429,716원(중위수: 121,763원), 추정장려금의 평균치는 321,159원(중위수: 75,000원), 최대값은 1.5백만원(단독가구의 최대값)임
- 추정순장려금의 평균은 -108,557원이나, 중위수는 75,000원임

<표 30> 분석대상 농가 현황_재산고려_단독가구

구분	2018	2019	2020	2021	전체
농가수	92	93	95	97	377
농업총수입					
평균	15,000,000	11,900,000	12,700,000	12,800,000	13,100,000
최소값	415,000	357,750	290,950	109,000	109,000
1분위	2,219,289	2,361,975	2,584,060	2,782,825	2,448,100
중위수	5,397,787	5,462,680	5,329,970	5,421,001	5,421,001
3분위	12,400,000	12,800,000	13,600,000	12,100,000	13,000,000
최대값	325,000,000	234,000,000	182,000,000	272,000,000	325,000,000
추정농업총소득					
평균	5,968,215	2,517,959	3,105,774	3,561,667	3,776,595
최소값	-16,500,000	-31,200,000	-11,200,000	-14,900,000	-31,200,000
1분위	719,622	508,800	43,850	524,391	427,470
중위수	2,427,710	2,104,573	1,471,658	1,931,400	2,029,390
3분위	4,576,376	4,236,791	4,166,055	4,081,202	4,236,791
최대값	137,000,000	37,400,000	48,700,000	91,700,000	137,000,000
추정세액					
평균	791,207	242,531	310,025	383,548	429,716
최소값	0	0	0	0	0
1분위	43,177	30,528	2,631	31,463	25,648
중위수	145,663	126,274	88,299	115,884	121,763
3분위	274,583	254,208	249,963	244,872	254,208
최대값	32,500,000	4,528,652	6,463,307	15,400,000	32,500,000
추정장려금					
평균	325,022	349,774	329,074	282,309	321,159
최소값	0	0	0	0	0
1분위	0	0	0	0	0
중위수	169,000	150,000	75,000	0	75,000
3분위	563,000	563,000	488,000	375,000	525,000
최대값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추정순장려금					
평균	-466,185	107,243	19,049	-101,238	-108,557
최소값	-32,500,000	-4,528,652	-6,463,307	-15,400,000	-32,500,000
1분위	-145,618	-126,274	-143,075	-168,395	-150,198
중위수	128,586	113,000	63,442	0	75,000
3분위	368,816	338,954	375,000	296,186	351,265
최대값	1,466,572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 (홀별이) 아래 표는 근로장려금의 가구요건 중 홀별이가구에 대한 농업총수입금액, 추정농업총소득(농업총수입금액-농업경영비), 추정세액, 추정장려금, 추정순장려금(추정장려금-추정세액)의 연도별 분포임
- 농업총수입금액의 평균치는 54.9백만원(중위수: 18.5백만원)이고, 추정농업총소득의 평균치는 약 18.1백만원(중위수: 약 5.6백만원), 추정세액의 평균치는 약 3.5백만원(중위수: 336,807

원), 추정장려금의 평균치는 248,592원이며, 최소값, 1분위, 중위수, 3분위 모두 0원으로 홀별이가구의 경우 극히 일부만 장려금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임

- 추정순장려금의 평균은 약 -3.2백만원, 중위수가 -199,289원으로 홀별이 가구는 단독가구에 비해 더 많은 순현금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 분석대상 농가 현황_재산고려_홀별이가구

구분	2018	2019	2020	2021	전체
농가수	2,246	2,306	2,295	2,299	9,146
농업총수입					
평균	53,300,000	52,200,000	54,500,000	59,400,000	54,900,000
최소값	4,800	143,000	36,500	34,000	4,800
1분위	6,694,571	5,771,010	6,004,750	6,555,000	6,217,000
중위수	19,900,000	17,500,000	18,200,000	19,500,000	18,500,000
3분위	55,400,000	52,400,000	55,500,000	59,900,000	55,700,000
최대값	1,560,000,000	2,090,000,000	2,520,000,000	2,770,000,000	2,770,000,000
추정농업총소득					
평균	18,400,000	15,700,000	17,600,000	20,700,000	18,100,000
최소값	-121,000,000	-161,000,000	-355,000,000	-110,000,000	-355,000,000
1분위	833,350	306,166	701,215	1,158,230	715,200
중위수	6,250,730	4,492,166	5,426,421	6,348,567	5,613,443
3분위	21,000,000	17,200,000	20,300,000	22,600,000	20,200,000
최대값	750,000,000	825,000,000	887,000,000	1,000,000,000	1,000,000,000
추정세액					
평균	3,437,311	2,993,897	3,427,060	4,022,210	3,469,964
최소값	0	0	0	0	0
1분위	50,001	18,370	42,073	69,494	42,912
중위수	375,044	269,530	325,585	380,914	336,807
3분위	2,076,520	1,499,955	1,960,075	2,316,540	1,955,423
최대값	280,000,000	311,000,000	337,000,000	386,000,000	386,000,000
추정장려금					
평균	288,091	253,069	233,136	220,942	248,592
최소값	0	0	0	0	0
1분위	0	0	0	0	0
중위수	0	0	0	0	0
3분위	0	0	0	0	0
최대값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추정순장려금					
평균	-3,149,220	-2,740,828	-3,193,924	-3,801,268	-3,221,372
최소값	-280,000,000	-311,000,000	-337,000,000	-386,000,000	-386,000,000
1분위	-1,860,675	-1,325,483	-1,792,095	-2,223,553	-1,795,496
중위수	-199,526	-135,487	-199,982	-274,785	-199,289
3분위	0	0	0	0	0
최대값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 (맞별이) 아래 표는 근로장려금의 가구요건 중 맞별이가구에 대한 농업총수입금액, 추정농업

총소득(농업총수입금액-농업경영비), 추정세액, 추정장려금, 추정순장려금(추정장려금-추정세액)의 연도별 분포임

- 농업총수입금액의 평균치는 37.6백만원(중위수: 28.8백만원)이고, 추정농업총소득의 평균치는 약 10.6백만원(중위수: 약 2.1백만원), 추정세액의 평균치는 약 2.1백만원(중위수: 130,073원), 추정장려금의 평균치는 79,434원이며, 최소값, 1분위, 중위수, 3분위 모두 0원으로 맞벌이가구도 극히 일부만 장려금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임
- 추정순장려금의 평균은 약 -2.1백만원, 중위수가 -114,568원으로 홀벌이 가구와 유사하게 순현금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표 32> 분석대상 농가 현황_재산고려_맞벌이가구

구분	2018	2019	2020	2021	전체
농가수	634	575	582	578	2,369
농업총수입	36,800,000	35,900,000	39,400,000	38,600,000	37,600,000
평균	90,270	15,000	31,250	70,000	15,000
최소값	4,340,618	3,829,150	3,907,560	4,343,500	4,191,973
1분위	9,843,898	8,805,850	9,500,889	10,200,000	9,441,117
중위수	32,800,000	27,300,000	27,200,000	29,200,000	28,800,000
3분위	1,040,000,000	1,760,000,000	2,440,000,000	2,860,000,000	2,860,000,000
최대값					
추정농업총소득					
평균	11,800,000	8,275,288	11,100,000	11,000,000	10,600,000
최소값	-340,000,000	-111,000,000	-72,500,000	-92,800,000	-340,000,000
1분위	136,503	-928,503	-889,050	-193,007	-412,790
중위수	2,831,796	1,711,920	2,104,697	2,297,670	2,167,886
3분위	12,100,000	8,611,550	8,282,332	9,325,234	9,549,378
최대값	391,000,000	373,000,000	603,000,000	955,000,000	955,000,000
추정세액					
평균	2,211,346	1,606,950	2,407,538	2,119,026	2,090,323
최소값	0	0	0	0	0
1분위	8,190	0	0	0	0
중위수	169,908	102,715	126,282	137,860	130,073
3분위	741,006	516,693	496,940	559,514	572,963
최대값	131,000,000	124,000,000	218,000,000	366,000,000	366,000,000
추정장려금					
평균	98,752	60,903	65,340	90,869	79,434
최소값	0	0	0	0	0
1분위	0	0	0	0	0
중위수	0	0	0	0	0
3분위	0	0	0	0	0
최대값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추정순장려금					
평균	-2,112,594	-1,546,048	-2,342,198	-2,028,158	-2,010,889
최소값	-131,000,000	-124,000,000	-218,000,000	-366,000,000	-366,000,000

1분위	-644,571	-480,358	-444,956	-474,128	-500,641
중위수	-145,284	-91,176	-116,173	-121,308	-114,568
3분위	0	0	0	0	0
최대값	3,000,000	2,867,809	2,769,482	2,958,184	3,000,000

- 종합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현행 소득세 및 근로장려금 제도를 전면 적용하는 경우, 농업인 가구 입장에서 평균적으로는 순현금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이는 근로장려세제의 재산요건(2억원 미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단독 가구의 경우 추정순장려금의 중위수가 0 이상이어서 납부한 소득세액보다 수령한 근로장려금이 큰 가구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이하에서는 전체적인 장려금 수혜 농가 수와 분석대상 표본의 추정총세액, 추정총근로장려금의 연도별 분포를 분석함
 - 현재의 재산요건(2억원)이 고려되어 재산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세제 혜택에서 제외됨

- 장려금을 수혜 받은 농가의 수는 전체 11,892 가구 중 2,066가구로 17.37% 임.
 - 2018년 548가구(18.44%), 2019년 550가구(18.49%), 2020년 503가구(16.92%), 2021년 465가구(15.64%)로 연도별로 감소하고 있음. 이는 재산요건을 초과하는 가구의 수 증가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홀별이는 19.81%, 맞벌이는 2.53%가 근로장려금을 받음. 그러나 단독가구의 경우 약 51.46%가 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분석표본을 대상으로 과세를 가정할 경우, 2021년에 분석대상 가구로부터의 총세액은 105억 수준이며, 지급할 총근로장려금은 5억8천8백만원으로 근로장려금보다 부담세액이 99억 1천 2백만원 높게 나타남
 - 그러나 단독가구에서는 2019년과 2020년은 세액보다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영세한 단독가구에서 혜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표 33> 분석대상 농가 현황_재산고려_전체

구분	2018	2019	2020	2021	전체
전체 농가수	2,972	2,974	2,972	2,974	11,892
장려금 수혜 농가 수	548	550	503	465	2,066
비중	18.44%	18.49%	16.92%	15.64%	17.37%
총세액(A)	9,190,000,000	7,850,000,000	9,300,000,000	10,500,000,000	36,900,000,000

총근로장려금(B)	740,000,000	651,000,000	604,000,000	588,000,000	2,580,000,000
차이(A-B)	8,665,000,000	7,199,000,000	8,696,000,000	9,912,000,000	34,530,000,000
단독가구					
농가수	92	93	95	97	377
장려금 수혜 농가 수	51	51	49	43	194
비중	55.43%	54.84%	51.58%	44.33%	51.46%
총세액	72,800,000	22,600,000	29,500,000	37,200,000	162,000,000
총근로장려금	29,900,000	32,500,000	31,300,000	27,400,000	121,000,000
차이(A-B)	42,900,000	-9,900,000	-1,800,000	9,800,000	41,000,000
홀별이					
농가수	2,246	2,306	2,295	2,299	9,146
장려금 수혜 농가 수	477	489	440	406	1,812
비중	21.24%	21.21%	19.17%	17.66%	19.81%
총세액	7,720,000,000	6,900,000,000	7,870,000,000	9,250,000,000	31,700,000,000
총근로장려금	647,000,000	584,000,000	535,000,000	508,000,000	2,270,000,000
차이(A-B)	7,073,000,000	6,316,000,000	7,335,000,000	8,742,000,000	29,430,000,000
맞별이					
농가수	634	575	582	578	2,369
장려금 수혜 농가 수	20	10	14	16	60
비중	3.15%	1.74%	2.41%	2.77%	2.53%
총세액	1,400,000,000	924,000,000	1,400,000,000	1,220,000,000	4,950,000,000
총근로장려금	62,600,000	35,000,000	38,000,000	52,500,000	188,000,000
차이(A-B)	1,337,400,000	889,000,000	1,362,000,000	1,167,500,000	4,762,000,000

나. 2안: 농업인에 대한 현행 소득세 및 근로장려금 제도_재산요건 미적용

- 1안에서 농업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을 전면 적용하는 경우, 추정순장려금(추정장려금-추정세액)이 음(-)의 값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
- (전체) 본 절에서는 2억원 재산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농업총수입금액, 추정농업총소득(농업총수입금액-농업경영비), 추정세액, 추정장려금, 추정순장려금(추정장려금-추정세액)의 연도별 분포를 분석함
 - 재산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표본 전체의 추정장려금(평균)은 약 1.1백만원이며, 추정장려금에서 추정세액을 차감한 추정순장려금(평균)은 -2.0백만원으로 나타남
 - 추정장려금은 1분위는 75,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중위수는 788,000원으로 나타남. 추정순장려금의 평균치는 약 -2.0백만원이며 중위수는 375,000원으로 재산요건을 적용하는 경우보다는 순장려금이 영(0) 이상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표 34> 분석대상 농가 현황_재산미고려_전체

구분	2018	2019	2020	2021	전체
농가수	2,972	2,974	2,972	2,974	11,892
농업총수입					
평균	48,600,000	47,800,000	50,200,000	53,800,000	50,100,000
최소값	4,800	15,000	31,250	34,000	4,800
1분위	5,492,105	5,215,000	5,149,525	5,686,530	5,378,890
중위수	16,300,000	14,900,000	15,000,000	15,900,000	15,500,000
3분위	49,400,000	44,800,000	47,500,000	52,500,000	48,500,000
최대값	1,560,000,000	2,090,000,000	2,520,000,000	2,860,000,000	2,860,000,000
추정농업총소득					
평균	16,600,000	13,900,000	15,900,000	18,200,000	16,100,000
최소값	-340,000,000	-161,000,000	-355,000,000	-110,000,000	-355,000,000
1분위	634,343	28,450	353,400	796,813	435,707
중위수	5,018,880	3,467,542	4,192,828	5,030,656	4,452,420
3분위	18,200,000	14,600,000	16,700,000	18,900,000	17,200,000
최대값	750,000,000	825,000,000	887,000,000	1,000,000,000	1,000,000,000
추정세액					
평균	3,093,871	2,639,704	3,127,773	3,533,646	3,098,744
최소값	0	0	0	0	0
1분위	38,061	1,707	21,204	47,809	26,142
중위수	301,133	208,053	251,570	301,839	267,145
3분위	1,648,443	1,106,045	1,421,593	1,751,610	1,495,453
최대값	280,000,000	311,000,000	337,000,000	386,000,000	386,000,000
추정장려금					
평균	1,123,323	1,093,378	1,081,630	1,077,100	1,093,855
최소값	0	0	0	0	0
1분위	75,000	113,000	51,000	0	75,000
중위수	840,500	788,000	788,000	783,000	788,000
3분위	2,154,000	2,080,000	2,043,000	2,043,000	2,080,000
최대값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추정순장려금					
평균	-1,970,548	-1,546,325	-2,046,143	-2,456,546	-2,004,889
최소값	-280,000,000	-311,000,000	-337,000,000	-386,000,000	-386,000,000
1분위	-196,666	-32,415	-126,282	-232,954	-130,746
중위수	351,059	420,993	375,000	374,686	375,000
3분위	1,094,002	1,189,426	1,116,801	1,060,677	1,117,819
최대값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 (단독) 아래 표는 재산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단독가구에 대한 농업총수입금액, 추정농업총소득(농업총수입금액-농업경영비), 추정세액, 추정장려금, 추정순장려금(추정장려금-추정

세액)의 연도별 분포임

- 재산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단독가구 추정장려금의 평균치는 705,854원, 중위수는 563,000원, 최대값은 1.5백만원(단독가구의 최대값)임. 추정순장려금의 평균은 276,138원이며, 중위수는 402,535원임

<표 35> 분석대상 농가 현황_재산미고려_단독가구

구분	2018	2019	2020	2021	전체
농가수	92	93	95	97	377
농업총수입					
평균	15,000,000	11,900,000	12,700,000	12,800,000	13,100,000
최소값	415,000	357,750	290,950	109,000	109,000
1분위	2,219,289	2,361,975	2,584,060	2,782,825	2,448,100
중위수	5,397,787	5,462,680	5,329,970	5,421,001	5,421,001
3분위	12,400,000	12,800,000	13,600,000	12,100,000	13,000,000
최대값	325,000,000	234,000,000	182,000,000	272,000,000	325,000,000
추정농업총소득					
평균	5,968,215	2,517,959	3,105,774	3,561,667	3,776,595
최소값	-16,500,000	-31,200,000	-11,200,000	-14,900,000	-31,200,000
1분위	719,622	508,800	43,850	524,391	427,470
중위수	2,427,710	2,104,573	1,471,658	1,931,400	2,029,390
3분위	4,576,376	4,236,791	4,166,055	4,081,202	4,236,791
최대값	137,000,000	37,400,000	48,700,000	91,700,000	137,000,000
추정세액					
평균	791,207	242,531	310,025	383,548	429,716
최소값	0	0	0	0	0
1분위	43,177	30,528	2,631	31,463	25,648
중위수	145,663	126,274	88,299	115,884	121,763
3분위	274,583	254,208	249,963	244,872	254,208
최대값	32,500,000	4,528,652	6,463,307	15,400,000	32,500,000
추정장려금					
평균	680,967	732,054	694,653	715,309	705,854
최소값	0	0	0	0	0
1분위	263,000	263,000	225,000	263,000	263,000
중위수	581,500	563,000	563,000	600,000	563,000
3분위	956,500	1,258,000	1,013,000	1,125,000	1,088,000
최대값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추정순장려금					
평균	-110,240	489,523	384,628	331,762	276,138
최소값	-32,500,000	-4,528,652	-6,463,307	-15,400,000	-32,500,000
1분위	189,919	219,414	153,003	213,763	202,580

중위수	369,736	430,246	389,978	411,463	402,535
3분위	641,846	808,000	693,431	838,823	802,556
최대값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 (홀별이) 아래 표는 재산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홀별이가구에 대한 농업총수입금액, 추정농업총소득(농업총수입금액-농업경영비), 추정세액, 추정장려금, 추정순장려금(추정장려금-추정세액)의 연도별 분포임
- 재산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홀별이가구 추정장려금의 평균치는 약 1.2백만원, 중위수는 약 1.1백만원, 최대값은 2.6백만원(홀별이가구의 최대값)임. 추정순장려금의 평균은 -2.3백만원이며, 중위수는 525,812원임

<표 36> 분석대상 농가 현황_재산미고려_홀별이가구

구분	2018	2019	2020	2021	전체
농가수	2,246	2,306	2,295	2,299	9,146
농업총수입					
평균	53,300,000	52,200,000	54,500,000	59,400,000	54,900,000
최소값	4,800	143,000	36,500	34,000	4,800
1분위	6,694,571	5,771,010	6,004,750	6,555,000	6,217,000
중위수	19,900,000	17,500,000	18,200,000	19,500,000	18,500,000
3분위	55,400,000	52,400,000	55,500,000	59,900,000	55,700,000
최대값	1,560,000,000	2,090,000,000	2,520,000,000	2,770,000,000	2,770,000,000
추정농업총소득					
평균	18,400,000	15,700,000	17,600,000	20,700,000	18,100,000
최소값	-121,000,000	-161,000,000	-355,000,000	-110,000,000	-355,000,000
1분위	833,350	306,166	701,215	1,158,230	715,200
중위수	6,250,730	4,492,166	5,426,421	6,348,567	5,613,443
3분위	21,000,000	17,200,000	20,300,000	22,600,000	20,200,000
최대값	750,000,000	825,000,000	887,000,000	1,000,000,000	1,000,000,000
추정세액					
평균	3,437,311	2,993,897	3,427,060	4,022,210	3,469,964
최소값	0	0	0	0	0
1분위	50,001	18,370	42,073	69,494	42,912
중위수	375,044	269,530	325,585	380,914	336,807
3분위	2,076,520	1,499,955	1,960,075	2,316,540	1,955,423
최대값	280,000,000	311,000,000	337,000,000	386,000,000	386,000,000
추정장려금					
평균	1,254,755	1,206,955	1,204,021	1,188,027	1,213,199
최소값	0	0	0	0	0

1분위	375,000	362,000	338,000	338,000	338,000
중위수	1,126,000	1,040,000	1,050,000	975,000	1,050,000
3분위	2,229,000	2,138,000	2,124,000	2,118,000	2,153,000
최대값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추정순장려금					
평균	-2,182,556	-1,786,942	-2,223,038	-2,834,182	-2,256,764
최소값	-280,000,000	-311,000,000	-337,000,000	-386,000,000	-386,000,000
1분위	0	120,145	0	-328,278	0
중위수	523,681	578,977	525,358	493,978	525,812
3분위	1,200,565	1,270,964	1,214,034	1,141,377	1,213,006
최대값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 (맞벌이) 아래 표는 재산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맞벌이가구에 대한 농업총수입금액, 추정농업총소득(농업총수입금액-농업경영비), 추정세액, 추정장려금, 추정순장려금(추정장려금-추정세액)의 연도별 분포임
- 재산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맞벌이가구 추정장려금의 평균치는 694,847원, 중위수는 0원, 최대값은 3.0백만원(맞벌이가구의 최대값)임. 추정순장려금의 평균은 약 -1.4백만원이며, 중위수는 -32,512원임

<표 37> 분석대상 농가 현황_재산미고려_맞벌이가구

구분	2018	2019	2020	2021	전체
농가수	634	575	582	578	2,369
농업총수입					
평균	36,800,000	35,900,000	39,400,000	38,600,000	37,600,000
최소값	90,270	15,000	31,250	70,000	15,000
1분위	4,340,618	3,829,150	3,907,560	4,343,500	4,191,973
중위수	9,843,898	8,805,850	9,500,889	10,200,000	9,441,117
3분위	32,800,000	27,300,000	27,200,000	29,200,000	28,800,000
최대값	1,040,000,000	1,760,000,000	2,440,000,000	2,860,000,000	2,860,000,000
추정농업총소득					
평균	11,800,000	8,275,288	11,100,000	11,000,000	10,600,000
최소값	-340,000,000	-111,000,000	-72,500,000	-92,800,000	-340,000,000
1분위	136,503	-928,503	-889,050	-193,007	-412,790
중위수	2,831,796	1,711,920	2,104,697	2,297,670	2,167,886
3분위	12,100,000	8,611,550	8,282,332	9,325,234	9,549,378
최대값	391,000,000	373,000,000	603,000,000	955,000,000	955,000,000
추정세액					
평균	2,211,346	1,606,950	2,407,538	2,119,026	2,090,323

최소값	0	0	0	0	0
1분위	8,190	0	0	0	0
중위수	169,908	102,715	126,282	137,860	130,073
3분위	741,006	516,693	496,940	559,514	572,963
최대값	131,000,000	124,000,000	218,000,000	366,000,000	366,000,000
추정장려금					
평균	721,902	696,327	662,170	696,600	694,847
최소값	0	0	0	0	0
1분위	0	0	0	0	0
중위수	0	0	0	0	0
3분위	1,772,000	1,243,000	686,000	1,000,000	1,258,000
최대값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추정순장려금					
평균	-1,489,444	-910,623	-1,745,368	-1,422,426	-1,395,476
최소값	-131,000,000	-124,000,000	-218,000,000	-366,000,000	-366,000,000
1분위	-310,539	-166,154	-205,062	-262,522	-237,185
중위수	-60,048	0	-20,181	-41,154	-32,512
3분위	0	0	0	0	0
최대값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 이하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전체적인 장려금 수혜 농가 수와 분석대상 표본의 추정총세액, 추정총근로장려금의 연도별 분포를 분석함
 - 현재의 재산요건(2억원)이 고려되지 않아 재산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도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가정

- 장려금을 수혜 받은 농가의 수는 전체 11,892 가구 중 7,671가구(64.51%)로 재산요건을 고려한 경우보다 약 47.14%p 증가함 (17.37%→64.51%)
 - 2018년 1,881가구(63.29%), 2019년 2,001가구(67.28%), 2020년 1,922가구(64.67%), 2021년 1,867가구(62.78%)
 - 근로장려금의 수혜 가구는 홀별이는 74.85%로 재산요건을 고려한 경우보다 55.04%p 증가하였고(19.81%→ 74.85%), 맞벌이는 19.76%로 17.23%p 증가함(2.53%→ 19.76%)
 - 단독가구의 경우 94.69%로 재산요건을 고려한 경우보다 43.23%p 증가하여 대부분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51.46%→94.69%)

- 본 분석표본을 대상으로 과세를 가정할 경우, 2021년 총세액은 105억 수준이며, 재산요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급할 총근로장려금은 32억원(재산요건 미고려)으로 증가함. 따라서 순세액은 73억 원 수준

- 단독가구에서 2018년~2021년간 부담할 추정총세액은 1.62억원이나, 수령할 추정총근로장려금은 2.66억원임

<표 38> 분석대상 농가 현황_재산미고려_전체

구분	2018	2019	2020	2021	전체
전체 농가수	2,972	2,974	2,972	2,974	11,892
장려금 수혜 농가 수	1,881	2,001	1,922	1,867	7,671
비중	63.29%	67.28%	64.67%	62.78%	64.51%
총세액(A)	9,190,000,000	7,850,000,000	9,300,000,000	10,500,000,000	36,900,000,000
총근로장려금(B)	3,340,000,000	3,250,000,000	3,210,000,000	3,200,000,000	13,000,000,000
차이(A-B)	5,850,000,000	4,600,000,000	6,090,000,000	7,300,000,000	23,900,000,000
단독가구					
농가수	92	93	95	97	377
장려금 수혜 농가 수	86	90	89	92	357
비중	93.48%	96.77%	93.68%	94.85%	94.69%
총세액	72,800,000	22,600,000	29,500,000	37,200,000	162,000,000
총근로장려금	62,600,000	68,100,000	66,000,000	69,400,000	266,000,000
차이(A-B)	10,200,000	-45,500,000	-36,500,000	-32,200,000	-104,000,000
홀벌이					
농가수	2,246	2,306	2,295	2,299	9,146
장려금 수혜 농가 수	1,672	1,788	1,720	1,666	6,846
비중	74.44%	77.54%	74.95%	72.47%	74.85%
총세액	7,720,000,000	6,900,000,000	7,870,000,000	9,250,000,000	31,700,000,000
총근로장려금	2,820,000,000	2,780,000,000	2,760,000,000	2,730,000,000	11,100,000,000
차이(A-B)	4,900,000,000	4,120,000,000	5,110,000,000	6,520,000,000	20,600,000,000
맞벌이					
농가수	634	575	582	578	2,369
장려금 수혜 농가 수	123	123	113	109	468
비중	19.40%	21.39%	19.42%	18.86%	19.76%
총세액	1,400,000,000	924,000,000	1,400,000,000	1,220,000,000	4,950,000,000
총근로장려금	458,000,000	400,000,000	385,000,000	403,000,000	1,650,000,000
차이(A-B)	942,000,000	524,000,000	1,015,000,000	817,000,000	3,300,000,000

VI. 시사점

1. 과세 미편입으로 인한 거래투명성 저하 및 소득 집계 미진

- 대부분의 농업인의 수입은 과세제외, 비과세 기준점(10억 등) 이하로 인해 소득세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거래 증빙을 발급 및 수취할 유인이 없게 됨
 - 앞선 통계청 자료 분석에서 농업총수입 평균값(약 50.1백만원)과 3분위 값(약 48.5 백만원)은 상당히 많은 농업인이 비과세 기준 등으로 인해 세무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
 - 농업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인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방법이 없음
 - 홍정학과 권승구(2016)은 농업인이 계산서 등 거래증빙을 교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농산물의 기초가격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게 되고 이후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농업인이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판매에 큰 제약이 있으며, 사업자등록 문제로 인터넷 판매에도 제약이 있어도·소매 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음(서희열 등 2008)

- 농업인이 농산물 출하시 매출 증빙을 발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농산물을 매입하는 유통인의 경우 정규증빙(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정당한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짐(홍정학과 권승구, 2016)
 - 산지상인은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탈루 또는 농업인에 대한 매입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탈루하거나, 농산물의 1차적인 유통과정에서 불투명한 거래로 소득 탈루를 위한 무자료,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 등이 발생할 가능성(홍정학과 권승구, 2016) 존재

- 만약 농산물 등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유지하되, 농업과 관련된 소득을 소득세법상 전면 과세한다면 농업인에게 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거래투명성이 제고되어 농업인의 소득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함
 - 공급가액
 - 작성연월일
 - 기타 참고사항

2. 소득자료 부재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정책 수행 문제

- 농업 관련 예산의 대부분은 농가의 소득 안정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해당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정책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사업의 금액 등에 있어 농업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정보 파악이 필수적이거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많은 선행연구에서 비판되고 있음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 복지 및 개발 등 농업경영체의 소득 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에 농업 예산의 상당부분이 사용됨
 -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단기적이고 시혜적으로 추진되어 농업경쟁력의 제고와 농가소득의 증진 등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평가 받기도 함(장태평 등, 2011)
 - 농업정책의 핵심목적이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제까지의 농업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된 금융지원 정책 등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했다고 평가 받음(장태평 등, 2011)
 - 임소영 등 (2016)은 작물재배업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신고기록의 부재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 추진 시 공신력 있는 행정자료가 부재함을 언급함
- 정책 대상자의 수입과 지출 및 소득관련 자료는 국세청의 행정자료를 통해 수집되고 있으나, 농업인에 대한 수입과 지출 및 소득금액에 대한 정보는 매년 통계청이 전국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면접방식에 의해 실시하는 농가경제조사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홍정학과 권승구, 2016)
 - 임소영 등 (2016)은 정부의 정책 추진시 수혜자의 소득을 증빙하는 공신력있는 기록의 부재로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

- 농업인에 대한 소득 통계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현 상황은 농업관련 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농업인에 대한 정확한 소득 및 통계의 집계는 농업인 관련 복지지원 및 정책효율화의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에 대한 소득통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농업 지원정책은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지원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 또한 미흡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됨(홍정학과 권승구, 2016)

- 국세청에 관련 농업인의 소득이 다뤄지지 못하여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적 보호장치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홍정학과 권승구, 2016)
 - 작물재배업 등의 과세제외 또는 비과세 기준 등으로 인해 농업인은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3. 면제/비과세 기준점

- 우리나라의 세제는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10억원까지 소득세법상 비과세, 시행령상의 농가부업규모 축산 소득은 전액 비과세, 초과 규모의 축산소득 및 기타부업 소득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고,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처리하고 있음
 - 이러한 비과세 기준 금액 아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할 유인이 없음
 -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별지 제40호서식(1))에 아예 기록되지 아니함
 - 간접적으로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매출액-매입액)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농산물의 판매는 면세로 처리되어 농업인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유인이 없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이에 따라 과세 관청 및 행정 관청에서 농업인에 대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게 되어 농업인의 소득 기반 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됨

- 반면 해외 국가의 세제를 비교해 보면 농업분야의 소득에 대해 일단 과세의 테두리에 두고 그 안에서 소득이나 소득세 계산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음
 - OECD(2020)에서 조사되었던 해외국가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국가가 과세를 하되 소득 계산특례 등의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소득세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

도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소득 기준점을 주어 비과세 면제하는 국가를 살펴봐도, 그 기준점이 높을 경우에도 1인당 GDP의 약 3배 이하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20배(매출기준)가 넘음

□ 위와 같은 현상은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유사함

-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의 경우에도 조사 대상국 중 대부분은 특례세율 등을 적용하여 농업분야 생산물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고, 아예 세제혜택이 없는 경우도 있음
-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농산물에 아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음

□ 계량 분석에서 농가의 농업총수입금액의 평균이 5천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과세 제외, 비과세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농업 분야의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구분 기준 수입금액이 6천만원인데, 상기의 평균값(5천만원)은 이에 근접한 수치이고, 타 업종의 기준 수입금액인 3천 6백만원(나균), 2천 4백만원(다균) 보다 높은 수치임
- 농업총수입 3분위 수가 48.5백만원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비과세 기준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농업인이 과세에 편입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높은 비과세 기준점으로 인해 농업인의 수입이 이를 넘는다 하더라도 과거의 관성 또는 대다수의 농업인이 과세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 규정에서 요구하는 소득신고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음
- 비록 계량 분석에서의 통계청 자료 분석이 가구 단위 분석이긴 하나, 홀별이 가구에 한정하여 총수입금액의 기술적 통계량(평균 약 54.9 백만원, 3분위 수 약 55.7 백만원)을 보더라도 현재의 비과세 기준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홀별이 가구의 비중이 전체 분석 대상 표본에서 가장 높은 비중(약 77%)을 차지함

□ 전문가 인터뷰 결과에서도 상당수의 전문가가 수입금액 비과세 기준을 하향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다음의 추가 의견도 있음

- 소득세를 면제하고, 소득신고의무만 부여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답변이 존재하였는데, 실질적인 과세 없이는 신고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음
-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농업인의 세부담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기준점 하향시 하향된 목표 기준점의 근거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비과세 기준금액의 하향 시 현재의 기장의무, 추계과세 허용 기준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업부문의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점은 3억원이고, 기준경비율 적용자 수입금액 기준점은 6천만원임

4. 점진적인 실질과세 적용과 인센티브의 활용

- 해외 사례를 보면 소득세제 변화에 있어 점진적으로 농업인에게 실질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존재
 - 과거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정액세를 부과하거나, 실질 소득과 무관하게 추계과세를 하다가 점진적으로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사례가 보임
- 일본의 경우 처음부터 수지계산에 의한 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고, 표준에 의한 소득 추정을 하다가 장부에 근거한 소득 과세 범위를 확대함
 - 1990년대 이전까지는 표준에 의한 과세를 실시하였는데, 이 표준은 개인의 경작면적과 사육두수에 근거한 것임
 - 1990년대 이후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와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를 병행함
 - 2006년 부터는 전면적으로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를 수행함
- 프랑스의 경우 과거 저소득 농민에게 정액과세를 실시하였으나, 소규모 농업소득(micor-BA) 과세로 소득에 근접한 과세를 적용함
 - 2016년에 폐지된 정액과세는 땅의 면적에 따른 가치와 농업 카테고리별로 농업직업대표인과 과세행정 대표인을 모은 도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어 농업인에게는 수용성이 낮은 결과를 낳을 수 있고, 행정상 비용도 많이 소요됨
 - 반면 2016년에 수입금액에 기반하여 일정률의 비율을 적용하는 소규모 농업소득(micro-BA)는 각 납세자의 수입에 기반하여 정해지는 세금이어서 정액과세에 비해 우호적인 반응을 얻었음(임소영, 2016)
- 따라서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려면 장기적인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소득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 급진적인 농업인에 대한 세제 변화는 조세 저항, 납세 협력 비용의 관리 불능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간편장부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또한 제도기간 중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전문가 인터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 등 세무 업무 이행을 정책지원, 정책사업 참여, 금융지원, 농가수입보장보험 등의 조건으로 넣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소득 신고시 발생하는 비용지원, 신고대행 서비스 제공도 전문가 의견에서 제시된 사항임

5.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2억원) 고려

- 근로장려세제에서 설명된대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려면 신청자의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이며, 이 때 재산 계산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함
-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상당수 전문가들이 이 재산요건으로 인해 현행 근로장려세제 적용 시 농업인들이 근로장려금 수혜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농업의 특성상 토지(농지)의 활용은 불가피한데, 이를 재산에 반영할 경우 농업의 생산 요소로 인해 근로장려세제에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하는 전문가가 상당수 존재함
 - 또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을 지적하는 전문가 의견도 있음
- 앞선 통계청 자료 분석에서 보았듯이 조사대상이었던 전체 표본 중 재산이 2억원이 넘어가는 표본은 약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경영비가 확인되는 전체 표본 11,892개 중 9,286개(78%)가 2억원 이상임
 - 여기서 재산은 통계청에서 “농가재산”으로 분류한 항목임
- 현행 근로장려세제를 농업인에게 적용할 경우 상당수의 농업인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계량분석에서 추정됨

- 현행 근로장려세제를 농업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경우 75% 이상의 농업인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본의 평균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약 20만원에 불과함
- 반면 현재의 근로장려세제 중 재산요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75% 이상의 농업인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본의 평균 장려금은 약 1백만원임

- 따라서 농업소득을 전면 과세할 경우 현재의 재산 요건이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6. 소득세로의 집중

- 농업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중 어느 법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볼 때 소득세법 개정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 의견이 많았음
 - 농기계 등 농업인 매입 건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부분 적용되어 있어 이를 과세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하고, 당장의 소득 파악 목적으로 더 목적적합한 소득세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또한 부가가치세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할 경우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위험도 존재함
 - 농업인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할 경우 해당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위험(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은 더 높음
- 소득세로 집중 시 가장 의무 및 증빙 자료 수취 의무 등에서는 점진적인 제도 변화 목적으로 현재의 간편화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현재의 기준점들이 적정한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제도로도 소규모 농업인에게 복식부기 기장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방법(e.g.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제도 활용)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점(3억원)이나, 기준경비율 적용자 수입금액 기준점(6천만원) 수준은 신고 정보 집계 후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소득세제의 변화가 농업인들에게 세부담 중립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비과세 기준점 하향 또는 과세 포함으로 농업인의 소득 파악 범위를 넓힌다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여 농업인의 세부담을 중화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장기적으로 현재와 동일한 세부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유지된다면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소득 신고를 성실히 할 유인이 사라지는 위험이 있음

□ 소득신고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검증가능한 증빙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농산물 매입처가 발행하는 역발행 계산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7. 농협 조직의 활용

□ 전문가 의견 취합시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유도에 있어 공무원의 활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거나 제한적으로 역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함

- 농업직 공무원의 인력 상황, 업무 강도, 세무 업무 이해도 등 행정서비스 공급 측면 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하는 농업인의 입장 등 행정서비스 수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공무원의 역할은 단순 홍보에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반면, 사업자 등록 등 농업인의 세무업무에 대한 지원에 대해 농협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됨

- 공무원 보다는 지역의 농협 조직을 활용하여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복수의 전문가 답변이 존재
- 농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농협의 위치를 고려할 때,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세무 업무지원, 세무 관련 증빙의 발행에 있어서도 농협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관련 인력이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이러한 지원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농협의 성격상 이러한 지원이 이뤄질 때 업무마찰도 낮을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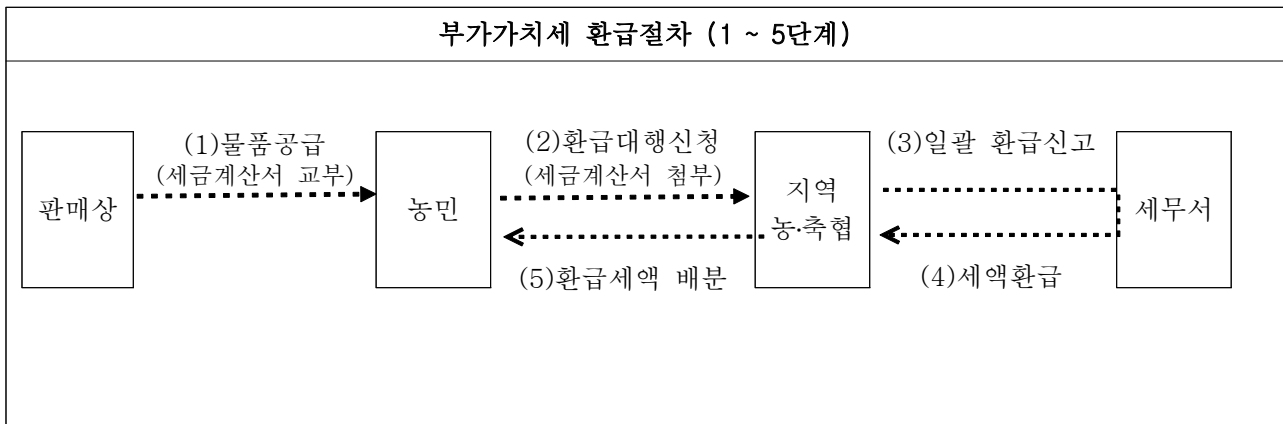
□ 해외사례를 소개한 선행연구에서도 농협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임소영(2016)은 일본 농협(Japanese Agricultural Cooperatives: JA)에서 농가의 매출 및 매입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함

□ 현재 농협은 아래 그림과 같이 농민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일정기간(예: 분기)별로 환급신청대행자(예:

지역농축협 등)로서 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농민이 기자재 구입당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있음⁵⁵⁾

- 농민이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신청서" 에 세금계산서 첨부하여 제출, 농협은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서 환급 신청하며, 일정 수수료를 청구
- 농민은 기자재 구입일의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농협 등에 신청하고 농협은 분기말 또는 그 다음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이러한 농협의 조직의 활용은 고령농, 영세농을 대상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임
 - 사업자 등록의 경우 귀농인, 청장년층의 농업인, 규모가 있는 농업인의 경우 세무서 방문, 홈택스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농협의 지원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단, 농협이 어느 정도의 업무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조직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행 법령의 검토도 필요함
 - 농협이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 수수료 등 서비스 대가나 재정적 지원을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임
 - 법령상 세무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e.g. 세무신고 대리업무)의 경우 농협이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농협이 다른 전문가를 연결시켜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55) 당 내용은 농협중앙회의 전문가와 인터뷰한 내용임

8.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의 활용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아래 사항을 기재해야 함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장 현황,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표 39>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신고확인증 사본 등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 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6.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중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이 표 제1호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8. 재생용 재료 수입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는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자등록 요구 정보에 비해 보다 더 포괄적임
 - 농업경영체등록제도는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6월 농업경영체 등록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관

- 농업경영체등록제도의 목적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하여 맞춤형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임
 - (등록대상)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등재사항)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에 1. 일반현황: 경영주인 농업인의 인적사항(경영주 외의 농업인 인적사항), 2.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보조금 신청농지, 3.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등 농작물 재배 및 보조금 신청 란이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작성하여 등록됨

<표 40>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

<p>1. 다음 각 목의 농업인에 관한 정보</p> <p>가. 성명, 주소(주민등록지 또는 신고 거소지를 말한다)</p> <p>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p> <p>다. 연락처, 영농 이력</p> <p>2. 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에 관한 정보</p> <p>3. 다음 각 목의 농업법인에 관한 정보</p> <p>가. 법인 명칭, 법인 대표자의 성명</p> <p>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연락처, 주소, 주요 사업</p> <p>다.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p> <p>라.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출자자 수 및 출자액</p> <p>마. 상시근로자 수</p> <p>4. 다음 각 목의 농지에 관한 정보</p> <p>가.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경(自耕), 임차], 재배 품목, 시설 현황</p> <p>나. 품목별 재배 면적</p> <p>다. 지목, 농지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p> <p>5. 다음 각 목의 지불금 또는 보조금 신청에 관한 정보</p> <p>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p> <p>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p> <p>다. 삭제 <2020. 4. 28.></p> <p>6. 다음 각 목의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에 관한 정보</p> <p>가.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영, 임차)</p> <p>나. 용도</p> <p>다. 종별 사육규모</p> <p>7. 다음 각 목의 임야[「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중 임산물(林産物)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말한다]에 관한 정보</p> <p>가.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경, 임차), 시설 현황</p> <p>나.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p> <p>다. 산지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p> <p>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관한 정보</p> <p>8.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경우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주요 품목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p>

액 및 주요 판매처. 다만, 농업인이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9.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농산물 가공에 관한 정보: 가공 대상 품목 및 품목별 연간 판매액. 다만, 농업인이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0. 그 밖에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농업경영체등록정보가 사업자등록 정보보다 더 포괄적이므로,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갱신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요구하여 사업자등록에 대한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자등록과 농업경영체등록의 연계를 고려해볼 수 있음
 - 농업경영체 제도 하에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연계로 인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음
 - 이러한 연계로 농업인의 심리적 저항과 행정력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임

9. 소득 평준화(Income Smoothing)

-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연도가 역년 단위로 나뉘어져 해당 과세연도에서 벌어진 소득에 기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해외의 경우 다년간의 과거 소득을 토대로 해당 연도의 소득을 결정짓는 경우가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소규모 농업(micro-BA)의 과세소득은 3년 평균 발생한 매출액에서 87%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과세연도와 이전 두 해의 소득의 평균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3년 평균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이외에 미국, 호주 등의 경우에도 농업분야를 대상으로 소득을 평균화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음
- 위와 같은 제도는 결손금에 한해서만 향후 15년간 이월을 허용하는 우리나라의 단년도 과세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도입을 한다면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누진세율 구조를 지니고 있는 소득세율 체계하에서 소득의 평준화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이를 농업분야에만 적용할 경우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음

VII. 정책 제언

- 현재 우리나라 농업인에 대해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비과세 및 면세 등의 처리로 과세 제외되는 범위가 넓어 이들의 소득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복지 등 소득에 기반한 정책을 정책 당국에서 수행하기가 어려움
 - 비과세 및 면세 처리로 농업인은 소득세 신고 등 세무 신고를 과세 관청 등에 할 필요가 없게 되며, 이에 따라 농식품부 등 농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정보를 공유하기가 어려움
 -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넓은 것으로 보여지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광범위한 비과세 범위로 인해 현장에서는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 같은 이유로 비과세 소득 기준선 경계에서 조금 넘는 농업인도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높은 소득세 비과세 기준점,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해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고소득 농업인 또는 비과세 기준 이상의 소득을 수취하는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이 같은 현상은 전문가 인터뷰 및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됨

- 따라서 현재의 과세 체계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소득 기반 복지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바, 소득세 과세 범위를 현재보다 넓히는 것이 필요함
 - 농업인의 소득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보다 목적적합하게 소득세 과세 범위를 넓히는 것이 타당
 - 부가가치세를 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농업인 소득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목적적합성 측면에서 소득세 과세 범위 확대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재화 및 서비스의 최종소비자까지의 가치사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으로 정책 시행의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면도 있음

- 그러나 현재의 농업인이 세무신고에 미숙할 수 있고, 상당수의 농업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자 등록 및 세무 신고 등에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농어가경제조사 자료에 따르면 농가 경영주의 약 35%가 60대 이상인 반면, 40대 이하는 약 13%에 불과하여 농업인 전체적인 연령분포를 볼 때 자력으로 세

무 신고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반면 농업인과 친밀도가 있고, 접근성이 있으며, 이미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협 조직을 활용하여 세무신고 업무 대행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다만, 모든 농업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고령층/영세농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자등록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를 활용하여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갱신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사업자 등록 정보보다 포괄하는 정보가 보다 더 광범위함
 - 농업경영체 등록은 매 3년마다 갱신⁵⁶⁾되므로, 기존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도 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소득정보 신고(information return) 수준에서 소득 신고가 머무르기보다는 실제 세금 납부가 이뤄지는 세무 신고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즉각적인 과세 확대보다는 현 시점에서 세무신고는 유도하되 세금 중립적으로 제도를 수정(e.g. 비과세-> 소득공제)하고, 추후 조세 지출 검토를 통해 단계적인 추가과세로 이뤄지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급격한 과세 전환보다는 점진적인 과세가 이뤄지도록 단계적으로 과세 정책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현 시점에서는 비과세 제도에서 소득공제 제도 등으로 전환하여 세무 신고를 유도하되, 농업인 입장에서 세 부담 중립적으로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비과세소득의 경우 소득세 신고서에 총수입금액 정보가 기재되지 않으나, 소득공제의 경우 해당 신고서에 총수입금액 정보가 기재되어 적어도 농업인의 매출 정보는 효율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농업인이 소득세 신고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를 낮출 수 있음
- 장기적으로 과세 없이 소득정보만 신고될 경우 해당 신고의 성실성이 떨어질 수 있고, 타 업종과의 형평을 위해서라도 소액이라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함

□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며, 그에 따른 법령 개정 내용을 예시적으로 제시함

- 본 연구의 법령 개정은 예시적 제안일 뿐이며, 조세 법령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농업인, 입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5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해야 하는 과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법령 개정 외의 부분, 즉 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함

<표 41> 단계적 시행 방안 예시

순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요약	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제공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와 연계	비과세→ 소득공제 전환	거래투명성 제고	소득공제액 조정	농업인 세제 안정화 및 관련 정책에 활용
농업인	- 사업자등록(자율)	- 사업자등록(의무)	- 소득세 신고 (소득세 부담은 이전과 동일)	- 계산서 발행	- 소득세 신고 및 소득세 추가 납부	- 소득세 신고 및 소득세 추가 납부
정부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제도 취지 홍보 (소득기반 정책 지원 추진 등) - 자발적 등록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 • 정책사업참여 지원 • 금융지원 등	-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갱신과의 연계	-현재의 비과세 기준 금액을 소득공제로 전환 (e.g. 10억 한도 비과세 → 10억 한도 소득공제)	- 농업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적격증명서류 수취 요구	- 조세특례 평가를 통해 소득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조정 - 근로장려세제 농업인 적용 사항 조정	- 농업인 세제 안정화 - 재정지원 정책 등에 농업인 소득 신고 자료 활용
농협 등	-	- 사업자등록 지원	- 고령층, 영세농 중심으로 소득신고 지원 - 계산서 역발행 등 농업인이 소득신고에 필요한 증빙 발급 지원			
제도	-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및 협의	- 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 예고	- 개정 소득세법 등 시행 (과세 전환, 소득공제 적용)	- 개정 소득세법 등 시행 (과세 전환, 소득공제 적용)	- 개정 소득세법 시행 (과세 전환, 소득공제율, 근로장려세제 조정)	

- (1단계, 2단계) 1단계를 위한 법령개정사항은 필요없을 것으로 보이며, 2단계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자등록이 유도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
 - 앞서 언급한대로 1단계에서는 장기적으로 다년간의 기간을 두어 세제 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정책지원, 홍보, 교육 등의 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며, 충분한 기간의 입법 예고기간 등을 두어야 할 것임
 - 2단계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갱신 시 필요 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도록 함
 - 개정안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1. 다음 각 목의 농업인의 대한 정보”에 “라.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

- (3단계) 3단계를 위해 아래의 법령개정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어업인과 동시에 적용되는 조항의 경우 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선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농업 관련 소득의 과세 제외 및 비과세 규정을 폐지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의 제2호 가,다,마 삭제,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1호의 괄호 부분 삭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삭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 삭제
 - 현재의 농업인 세부담과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상에 소득공제 등의 별도 규정을 신설하고 일몰 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농업인 등의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법 시행령에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및 작물재배업의 범위 신설, 같은법 시행규칙에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항을 신설하여, 소득세법에서 삭제된 비과세 규정에 대한 특례를 유지하되 비과세에서 소득공제로 전환
 - 단, 해당 개정안 적용시 어업인과 동시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농어촌정비법, 농어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법률 등 농업과 어업을 동시에 포괄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 비과세의 경우 농업인만 별도로 과세하는 것에 대해 입법 과정상에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임

- (3단계) 단,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할 경우 정기적으로 이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지출의 평가 업무가 수행되므로, 농업인 세제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단점이 크다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소득세법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특례평가는 일반적으로 매 5년마다 한 번씩 이뤄짐
 - 만약 소득세법에서 개정 내용이 반영된다면, 필요한 시점에 농업인의 소득공제 수준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 (4단계) 사업자등록된 농업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 등의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거래의 투명성 및 소득세 신고자료의 신뢰성을 제고
 - 기존 법률에서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 및 보관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농업인 매출 신고 자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항 제5호 삭제, 제83조(접대비의 범위 등) 제3항 제2호 삭제
 - 「소득세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2항의 “농어민에 대한 지출” 문구 삭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 제2호 삭제,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송금불산입) 제2항의 “농어민에 대한 지출” 문구 삭제, 같은법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제2항의 “농어민에 대한 지출” 문구 삭제, 제2항 제2호 삭제
 - 단, 적격증명서류수취 의무 면제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어민 등의 경우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5단계) 소득세 신고 정보가 취합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과 같은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공제 수준을 조정하여 적정 수준의 세부담 부여 여부 결정
 -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 정책 목적과 대상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 (5단계) 근로장려세제를 농업인에게 적용할 때 농지 등을 포함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농지 제외를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법령 개정

- 앞선 분석에서 재산 요건 고려시 다수의 농업인이 근로장려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바, 세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현재보다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토지(농지) 제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제3항 제1호에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 추가

□ (6단계) 농업인에 대한 소득 세제가 안정화되면 소득세 신고 자료를 통해 소득에 기반한 농업인 복지 정책 수행

- 소득세 신고를 통해 부담하는 세금과 수혜되는 근로장려금 등을 감안하여 소득 정보에 기반한 재정지원 정책 등을 조율

VIII. 결론

-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농업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도 도시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는 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나, 농업인들의 소득 정보가 집계되지 않아 소득 정보에 기반을 둔 재정 지원등의 정책 혜택을 농업인들이 받지 못하고 있음
 -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목적이 달성되려면, 정책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사업의 금액 등에 있어 농업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정보 파악이 필수적임
 - 타 직역의 경우 집계된 소득정보를 통해 근로장려금, 코로나 19 손실 지원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

- 신뢰성 있는 소득 정보 집계의 부재는 농업 소득의 소득세 비과세 및 농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한 낮은 세무 신고 유인에 있으며, 이러한 우리나라의 세제는 다른 국가의 세제와 대비되는 면이 있음
 - OECD(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 기준 금액 이하의 농업 소득을 비과세하는 경우는 드물며, 그 기준이 있는 국가와도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비과세 기준 금액은 높은 편임
 - 또한, 일본, 프랑스 등의 사례에서 농업인들에 대해 실질적인 소득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발견됨

-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도 현재의 우리나라의 세제(i.e. 소득세 비과세, 부가가치세 면세)가 농업인의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안이 있었음
 - 농업인의 소득 파악 목적으로 현재의 부가가치세법보다는 소득세법의 개정이 더 실효성이 있음
 -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에 있어 고령층, 영세농의 경우 대리인이 수행하는 것이 요구됨
 - 사업자등록에 있어 지역의 공무원에게는 제한적인 역할을 맡기고, 지역 농협 조직을 활용하여 농업인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소득지급자를 통해 농업인의 매출을 확인하는 것은 부정적이나, 농산물도매시장, 농협과 같은 큰 거래처의 경우 계산서 역발행을 활용할 가치는 있음
 - 추계신고시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제한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는 있음

- 농업인들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시 토지(농지)의 이유로 재산요건(2억원)의 적용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세무대리인 비용, 기장 업무에 따른 비용 등 세금 외의 비용도 고려되어야 함
 - 비과세 기준을 낮춰서 농업인들에게 소득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며, 소득세 비과세보다는 소득공제 등으로 농업인의 세부담을 조절하는 것이 적절함
 - 사업자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로 신용가점 부여, 정책자금수여, 정책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이 필요함
 - 농업인들의 소득 파악을 위해 농업인을 타 직역과 동일하게 과세 제도로 편입하는 것이 요구되며, 현재의 조세지출지원을 재정사업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타 직역의 소득기반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의 국세청 표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본 전체의 총수입금액(평균)은 21.4 백만원이고, 결정세액(평균)은 63천원이며, 근로장려금(평균)은 1.1백만원, 홀별이가구가 수령하는 근로장려금이 가장 높음
- 농업과 동일한 소득 조정률(30%)이 적용되는 신청자의 경우 총수입금액(평균)은 평균 37.3 백만원이며, 결정세액(평균)은 65천원이며, 근로장려금(평균)은 1.3백만원이며, 홀별이가구가 수령하는 근로장려금이 역시 가장 높음
- 농업인에 대해 현행 소득세 및 근로장려금 현행 제도를 전면 적용하는 경우 농가경제조사 표본 전체 가구의 농업총수입금액(평균)은 50.1백만원이고, 추정농업총소득(평균)은 16.1백만원이며, 추정세액(평균)은 약 3.0백만원으로 나타남. 추정장려금(평균)은 217,194원이며, 추정장려금과 추정세액을 차감한 추정순장려금(평균)은 -2.9백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홀별이가구는 19.81%, 맞별이가구는 2.53%가 근로장려금을 받지만, 단독가구의 경우 약 51.46%가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장려금의 수령자가 낮은 이유 중 농지(토지)로 인한 2억원 재산 요건 미충족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됨
 - 2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농가는 전체 표본의 약 78%임
-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통해 2억원 재산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표본 전체의 추정장려금(평균)은 약 1.1백만원이며, 추정장려금에서 추정세액을 차감한 추정순장려금(평균)은 -2.0백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중위수는 375,000원으로 재산요건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순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장려금의 수혜 가구는 홀별이는 74.85%로 재산요건을 고려한 경우보다 55.04%p 증가하였고(19.81%→ 74.85%), 맞벌이는 19.76%로 17.23%p 증가함(2.53%→ 19.76%)
- 단독가구의 경우 94.69%로 재산요건을 고려한 경우보다 43.23%p 증가하여 대부분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51.46%→94.69%)

□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농업인에 대한 세제가 수정될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보다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집중하여 농업인 소득 파악하는 것이 실효적임
- 현재의 수입금액 비과세 기준을 하향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농업인의 소득세 신고를 유도하면서 농업인의 세부담을 조절하고, 단기적으로는 세부담 중립적으로 제도 변경이 이뤄지되 장기적으로는 신고 정보를 검토하여 조세특례평가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세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함
-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소득신고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계도기간 중에 정책사업 가점 등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농업인에게 제공
- 토지를 활용해야 하는 농업의 특성상 근로장려세제 적용시 재산 요건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의 세무업무에 대한 지원에 대해 지역 농협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상기의 농업인 세제 개선은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추진 과정에서 농업인, 농협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임

- 한편, 그간 비과세 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 세제 개선에 앞서 소득 신고 필요성에 대한 설명 및 농업인 공감대 확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농업인이 원활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체계 마련도 병행하여야 할 것임

참고 문헌

<국내 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센터(<https://datalab.nts.go.kr>)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김미복 · 김수석. 2011.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용. 2004. 농업법인 및 기업농의 활성화를 위한 세무 및 제도 개선안, 한국세무학회

농협중앙회 세무회계단. 2004. 농업인 전용 사업자등록제 도입 검토

박상원. 2011. 농림어업 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주철 · 한정희 · 천정애 · 김용관 · 이영훈. 2021. 농어업 사업소득 비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세무회계연구, 제68권, pp.135-152.

서희열 · 김태용 · 정규언. 2008.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1호, pp.95-123.

서희열 · 정규언. 2006. 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7권 제1호, pp.71-88.

안종석 · 기은선 · 정경화. 2010. 주요국의 농업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양종관. 2006. 한국 조세지원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1호, pp.680-701.

이명기 · 송미령 · 유찬희 · 국승용 · 김정섭 · 김홍상 · 황윤재. 2017.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임소영 · 김윤진 · 이실. 2016. 농업 관련 소득세제의 경제적 함의와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소영 · 김윤진 · 강수진. 2019. 농업분야 부가가치세 제도 발전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응순 · 황진영 · 정균오. 2017. 1차산업 지방소득세 과세 효과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30권 제6호, pp.2009-2032.

장태평 · 정규언 · 서희열. 2011. 우리나라 농산업을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4호, pp.299-325.

조세재정연구원. 2020.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2권

홍정학 · 권승구. 2016. 유통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업소득 과세의 필요성과 과세방안. 식품유통연구, 제33권 제3호, pp.159-179.

<국외 문헌>

Worldbank database (<https://data.worldbank.org>)

- Alston, J. M., & James, J. S. 2002. The incidence of agricultural policy. *Handbook of Agricultural Economics*, 2, pp.1689-1749.
- Berube, A., & Tiffany, T. 2004. The “State” of Low-Wage Worker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Bird, R. M. 1974. *Taxing agricultural land in developing countries*. Harvard University Press.
- Durst, R. L. 1996. How would changes to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ffect rural recipients?, U.S. Dep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 Durst, R. L., & Monke, J. D. 2001. Effects of federal tax policy on agricultur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No. 800.
- Gardner, B. L. 1992. Changing economic perspectives on the farm proble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0(1), pp.62-101.
- Heady, C. 2002. Tax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what can be learned from OECD experience?. Working Paper, pp. 28-29.
- Hoppe, R. A., & Korb, P. 2005. Large and small farms: trends and characteristics. *Structural and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US Farms: 2004 Family Farm Report*.
- Hoppe, R. A., & Banker, D. E. 2010. *Structure and Finances of U.S. Farms: Family Farm Report*, U.S. Dep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 IRS. 2009. *Farmer’s Tax Guide for use in preparing 2009 returns*
- Johnson, D. G. 1991. *World agriculture in disarray*. Palgrave Macmillan UK.
- Krueger, A. O., Schiff, M., & Valdés, A. 1988. Agricultural incentives in developing countries: Measuring the effect of sectoral and economy wide policies.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2(3), 255-271.
- OECD. 2010. *Tax Policy Reform and Economic Growth*
- OECD. 2020. *Taxation in Agriculture*
- Sumner, D. A. 2003. Implications of the US Farm Bill of 2002 for agricultural trade and trade negotiations. *Australi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47(1), pp.99-122.
- Sumner, D. A. 2008. Agricultural subsidy programs. *The Concise Encyclopedia of Economics*, 4.
- Vilsack, T. 2017. *The People’s Department: Growing a stronger and healthier future for Americ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Wright, B. D. 1995. Goals and realities for farm policy. *Agricultural Policy Reform in the United States*, pp.9-44.

<첨부1> 전문가 인터뷰 답변서

1. 현재 농업인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근본 원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소득이 소득세법에 비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세신고 대상 농업인이 거의 없어 객관적인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B	농업인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미가공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비과세, 면세되는데에는 농업인의 영농규모가 영세한 탓에 납세협력비용과 징수비용이 크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C	<p>개별 농가 및 농업인의 농업생산 활동과 농산물 판매 정보 등에 근거한 소득 정보가 국가 차원에서의 확인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p> <p>1. 급속한 경제 발전과정과 농산물 시장 개방 속에서 농업인, 농가,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제적 손해를 겪었고(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총생산액, 부가가치액 측면에서 농업의 성장 정체), 국가는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농업인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서 각종 조세를 면제했습니다.</p> <p>2. 농업 주요 수행 주체인 농가(農家)를 사업자라기보다는 가구로 보는 전통적 인식에 기인합니다.</p>
D	<p>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등록사업자가 아니어서 무자료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기 어려움. 여기에는 지인과의 거래, 품앗이 등 일반인의 노동력 활용 등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p> <p>수입과 비용에 대한 것도 명확히 파악하여 계리하기가 쉽지 않음. 농축산물과 같은 성장물의 경우(한우와 같이 28개월 이상 사육하는 경우) 수입과 비용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음. 즉, 비용은 1년전에 지출하고 수입은 일시에 한번 실현하는 경우 연간 수입을 어떻게 계리할 것인가가 어려움. 이는 비용 발생 시점의 평가와 시가평가의 시점인지 분명하지 않은 회계준칙도 고민임. 특히 수확하지 않은 미실현 소득에 불확실성의 발생과 그 경우 고정투자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산입하는 어려움도 있음.</p> <p>소득과약을 위한 일정한 회계준칙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p>
E	<p>명시적인 원인은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일 것임.</p> <p>비과세 대상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부문의 영세성으로 인해 과세에 따른 편익보다 납세 관련 비용이 크기 때문일 것임.</p>
F	<p>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농, 영세농의 경우 경영기록 부재로 회계연도 단위의 경영성과 측정에 어려움이 있음</p> <p>영농형태 역시 대부분의 농가가 다품목 소량 생산과 다양한 유통 채널 활용으로 정확한 수입 추정이 어려움</p> <p>투입에 있어서도 투입재의 자가생산이나 농기계 등과 같이 하나의 투입재를 여러 생산활동에 함께 활용하는 등에 따른 정확한 비용 산정의 어려움</p> <p>농업경영의 특성상 가계와 경영의 분리가 어렵고 이전소득을 포함한 농업외소득이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 산정이 어려움</p>
G	<p>① 다양한 판매방식에 의한 전산시스템 적용 불가</p> <p>② 정부 지자체 행정직원을 통한 농업인 개별접촉 방식의 수작업 통계의 허점과 한계</p> <p>③ 조세제도와 연계되어 소득노출 시 각종 보조금 등 혜택에서 제외 우려</p> <p>④ 통계참여제도의 미비, 농업인 인식부족 등 복합적임</p>

2. 농산물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이어서 농업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유인이 없습니다. 만약 농산물 판매를 과세로 하되 이를 영세율로 하여 농업인들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을 늘린다면 농업인들의 사업자등록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상에 농업인이 매입하는 법정 항목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어 상당수의 매입거래에 대해 매입세액이 거래징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6page 관련 법령 참조)

A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은 기초생활필수품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율을 0%로 하고 영농과 관련한 매입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등록이 증가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의무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이 있어 강제하지 않으면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의무로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B	현재와 같이 농어업 기자재 영세율 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라는 명목으로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사후환급 제도도 운영되고 있어 매입세액 공제와 중복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다면 영세율 제도와 사후환급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령영세농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유인이 크지 않으므로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C	사업자적, 경영자적 의식이 높고 경영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업인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규모가 작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농(농업 종사 가구원 중 65세 이상 비중 50.2%, 2020년 농업총조사)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환급의 이득이 크지 않고 사업자등록 등 각종 절차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비용 증가로 인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D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현재는 면세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같이 기자재, 시설 등 중간투입제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마련하여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고 있음. 그 경우 매입과 매출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급대상이 되지 않거나 소액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세무관계 업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함. 영세율을 적용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도 높아지고, 특히, 외국농산물의 둔갑, 부정유통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단 세입이 없는데 정부가 세무행정을 하는 비용이 문제
E	농업인에게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농업인이 해당 자재에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일은 많지 않을 것임.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유인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농업인이 지출하는 비용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인건비인데, 지출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매입세액과는 거리가 있어 보임.
F	1번에서와 같은 이유로 많은 경우 농업의 경우 과세에 어려움이 있고 농업인의 대다수가 고령농 및 영세농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한 행정비용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됨 축산과 같이 유통 경로가 명확하거나 농협 등을 통한 계통출하 비중이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여 과세제도 도입을 통한 정확한 소득파악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됨을 보여주고 이를 확산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임 영세율 적용을 통한 매입세액 환급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농가 유형별로 도움이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농가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기존의 경영체등록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과 새롭게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의 차이나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G	농산물판매에 대한 세금을 내고 환급제도를 통하여 본인이 낸 어떤 형태로든 환급된다면 가능하다.

3. 농업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의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1)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행하는 방법
- 2) 대리인이 수행하는 방법
- 3)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이 중 어느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선택하신 방법의 이유는 무엇인지요?

A	귀농인이나 젊은 세대는 본인이 어떠한 방법이라도 가능할 것이나 기존의 농업인들의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 및 세무관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농협 등 생산자 단체 등이 대행하거나 세무대리인이 대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B	각각의 방법은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고령농업인의 경우, 대리인이 수행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고 청장년층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편의성이 높을 것이므로 전산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연령대라면 홈택스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고령층은 서식의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고 전산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행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C	1. 사업자적, 경영자적 의식이 높고 경영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업인은 1)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행하는 방법 또는 3)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영세농가는 2) 대리인이 수행하는 방법이 적합할 것입니다.
D	대리인이 수행하는 방법이 적합할 것임. 농업부문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업무를 요구하게 되면 현재 취약한 상태인 농촌지역에서 세무업무가 폭증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간이신고를 할 수 있는 의제수단이 필요함. 즉, 지역의 농협이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교육이수 조건만 충족하면 대리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기업과 같이 복잡하지도 않고, 건당 업무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도 이런 대응이 필요함. 농협은 조합원인 농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마찰이 발생하지 않음. 일본의 경우 지역농협이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줌.
E	대리인이 수행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임. 농업인들은 납세경험이 없고, 고령자가 많아 홈택스 활용이 쉽지 않으며, 지역단위(읍면단위)에 세무서가 없기 때문임.
F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경영체나 축산농가 등 대규모 농가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고령농들은 기존에 경영체등록과 같이 행정을 통한 등록에 대해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됨.
G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어떤 형태든 농업의 속성상 field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컴퓨터작업이나 서류 등 행정에 소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또한 육체적으로 피로한 몸을 매일 연속반복되는데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류나 행정에 대한 기피심리나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 따라서 상기 열거한 어느 방법도 최선의 방법은 없으며, 홈택스를 이용하도록 교육과 행정지도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4. 상기 3과 관련하여 만약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p>현재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직불금 등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농업인이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농, 후계농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농가에 대하여 직불금 외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에 대한 저항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p>
B	<p>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시행중인 공익직불금은 사업자 등록을 수혜조건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과 연계를 할 명분이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청년창업농 대상 영농정착지원금이나 정책보험 가입 요건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제시하고 장부작성까지 하는 농업인에게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C	<p>직불금 등 각종 농업인에 대한 정부 지원과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효과적일 것입니다. 현재도 농업경영체등록과 정부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단, 농업경영체 등록에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 행정력 중복과 농업인의 심리적 저항 또는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과 농업경영체등록을 연계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D	<p>직불제 지원과 연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불제에서는 소득신고가 불필요한 영세소농에 대한 일정한 고정형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과 연계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항인 것 같음.</p>
E	<p>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함. 단, 비용이 소요되거나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야 함. 과세 연계가 예상될 때에는 충분한 소통의 시간이 필요함.</p>
F	<p>사업자등록을 직불금 수령의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경영체등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농가들이 등록을 할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직불금을 효과적으로 지급하는 수단 또는 직불금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업자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p>
G	<p>모든농민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농업인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모든 정책은 농업인이 처한 상황에서 실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유리한 유의미한 정책이 필요하다.</p>

5. 상기 3과 관련하여 각 지역의 공무원(e.g. 농업직 공무원)들을 활용하여 농업인들이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시는지요?

A	공무원이 유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위한 정책으로 오해 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의 농협협동조합, 자조금단체,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B	공무원의 활용 방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사업자 등록에 대한 안내 또는 홍보만 제공하는 것이라면 농업기술원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일 것이나 인력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지원을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C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등록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농업직 공무원과 협력하되, 농업직 공무원의 역할은 농업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에 홍보(사업자등록 시 혜택 등)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D	지역농협이 가장 적합합니다.
E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함. 다만, 업무의 과중이 예상되므로 업무대행도 검토할 수 있음.
F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경영체등록을 고려할 때 행정을 통한 사업자등록에 대해 대다수의 고령농이나 영세농은 더 높은 수용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G	사업자등록을 유일한 목표로 한다면 농업지도직 공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6.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 신고가 농업인 당사자의 업무 미숙, 행정 비용 등으로 어려울 경우 농업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농업인의 매출을 과세관청에 통보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참고로 보험모집인과 같은 인적용역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지급자에 의해 소득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 연구진은 농산물 유통의 특이성, 즉 생산자->산지상인->도매시장->소매상-> 소비자로 이어지는 구조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A	농업인의 매출거래처가 다양화되고 있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농업인의 매출을 과세당국에 통보하는 것은 농산물도매시장 등 농가와 거래하는 거래처의 행정비용을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농협의 경우에는 계산서를 농가가 발행하지 않고 역발행하여 농가에게 공급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식을 하고 나머지 거래처는 농가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B	그것은 시도해 볼만한 일이지만 미가공 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황에서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미가공 식료품을 취급하는 유통상인이 해당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통업자에게 농업인의 소득파악을 위하여 과세관청에 통보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C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 또는 중개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창출하는 산지상인 또는 도매시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과 산지상인 및 도매시장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농업인은 산지상인, 도매시장 등 다양한 판매처와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신고의 주체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농업인이 소득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먼저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합니다.
D	일본과 같이 청색신고제도와 백색신고제도로 구분하여 간이 신고(백색)를 하는 농가와 엄격히 자료에 기반한 소득신고(청색신고)를 하는 농가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농업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개념은 모호함. 악용의 소지가 많으므로 부적합함. 농업노동자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농작업대행자 및 일고 등 농업노동자에 대해서는 농가가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임. 이들의 소득 파악도 복지지원을 위해 중요함.
E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함. 농협, 도매시장, 기타 상인 등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농업인 매출을 통보하게 하면 농업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략될 것으로 생각함. 다만, 농업인이 중간유통업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것임. 최근 들어, 6차 산업에 대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이나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F	다양한 거래방식이나 복잡한 유통경로,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음. 특히 직거래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정책과의 부합성도 낮음.
G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농업인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동 신고가 되면 농업활동은 어떤 형태로든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여건의 농업인에게 더욱 힘든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과세가 아닌 다른 행정적 목적으로 사용 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7. 상기 6에서 농업인의 비용은 추계율(e.g.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되, 만약 농업인이 더 큰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는 경우 실제 증빙으로 비용을 입증하라고 요구를 한다면 이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A	<p>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를 통하여 매출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도 사업장현황 신고시 매출을 신고하도록 하고 수입금액(매출)이 일정금액(3억 등)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라 판단됩니다.</p> <p>장부기장시 적격증빙의 수취의무(3만원 초과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를 완화하여 무통장입금에 의한 경비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농업인들의 농작업대행에 따른 비용지출과 일용직 인건비의 경우에도 지급조서 제출 없이 무통장입금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본경비율에 의한 소득산정은 농업인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p>
B	<p>이것은 현실적인가 아닌가의 문제라기보다는 농업인이 스스로 장부작성에 의한 소득신고의 필요성을 느끼는가의 문제이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납세협력 측면에서 농업인이 얼마나 신고절차와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이는 청년농이나 혹은 규모가 큰 일부 전업농의 경우에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가 가능할 것인지를 불분명합니다.</p>
C	<p>제도 도입 초기에 중·소·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p> <p>한 농가가 다양한 품목을 소량 재배하는 경우도 많고, 품목 생산 믹스가 복잡하기 때문에 농가가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p> <p>기본적으로는 농가가 투명하고 객관화된 경영장부 작성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p>
D	<p>비용을 추계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많음. 농촌진흥청의 소득자료 등에서도 적용하고 있음.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에게는 실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p>
E	<p>수입보다 비용을 증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일정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임. 품목에 따라 또는 품목군에 따라 경비율을 추정해보고, 경비율 적용의 적절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 추가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나 그에 따른 수고와 비용을 감안할 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됨.</p>
F	<p>농업의 경우 노동 투입 등 비용의 추계가 어렵고 특히 품목별 투입비용의 분리가 매우 어려움</p>
G	<p>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p>

8. 농업인의 소득을 직접 측정할 수가 없다면, 소득과 가장 관련이 높은 대용치(proxy)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이 대용치의 한계점은 무엇인지요?

A	<p>작물재배업의 경우, 재배작물, 재배면적과 재배방식(시설재배 등)이 대용치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며 축산업의 경우 축종과 사육두수가 대용치로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 농가의 생산성에 따른 소득효과와 가격변동에 따른 소득변동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p>
B	<p>개인의 재배품목과 수확량에 전국 평균 가격을 적용하여 추산하는 방법이 소득의 대용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농업인에 따라 실제 수취하는 가격과 전국 평균 가격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 수용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p>
C	<p>매출액이 가장 관련이 높은 대용치일 것입니다. 매출액에 품목별로 다른 소득율을 곱하면 소득이 간접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농업회사법인의 원예, 과수 등 법인세에 대해서는 매출액 소득율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p>
D	<p>7번 질문과 비슷하게 표준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면적에 곱하여 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음. 농작물재해보험 지급에도 적용하고 있음. 이 경우 평균치를 적용함으로써 과소추계도 있고, 갈등의 요소가 남아 있는데 영농실패, 재해 등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 과잉추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p>
E	<p>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음. 농가의 재배기술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평균적인 수입을 기준으로 약간의 조정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다만, 상기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품목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식량작물이나 주요 축산물의 경우에는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나 생산비조사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품목의 대부분이 위 자료들에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일부 특수한 작목이나 소규모 작목은 품목군에 포함시켜 처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음.</p>
F	<p>경영규모를 고려할 수 있으나, 면적의 경우 재배 품목에 따라 소득이 상이하기 때문에 영농형태의 고려가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됨</p>
G	<p>답변없음</p>

9. 현재의 근로장려세제는 아래의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농업인들에게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A	<p>농업은 기본적으로 자본재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지와 축사와 같은 기본 투자가 필요한 산업으로 귀농 등의 경우,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농지 및 시설을 투자하고 있어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세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농업의 경우에는 재산을 합계액에서 정책자금차입금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장려세제 기준 재산합계액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p> <p>농업소득 산정시 수입금액에 소득율을 30%로 일괄적용하는 경우는 농산물가격변동에 따른 소득의 변동성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산정시 사용하는 기본경비율을 차감한 소득율로 업종별조정율로 상요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 산정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p>
B	<p>재산 요건으로 인해 상당수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시된 재산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단위 면적당 소득이 낮은 논벼 농사의 경우, 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다만 통계를 이용하여 수혜 가능 농가를 추산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타 분야와 비교하여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
C	<p>농업은 토지(농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재산 요건을 고려할 경우 많은 상당수의 농가가 제외될 수 있으므로, 토지와 관련된 재산 요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농업인(농가)은 일반 가구와 달리 토지가 재산의 성격도 있으나 생산요소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재산 요건은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p>
D	<p>농업도 보편적 복지체계에서 근로소득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EITC제도 적용 등이 필요함. 여기에는 농작업담당자인 농업노동자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함.</p> <p>소득기준 적용에서 재산요건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필요할 것임. 농지는 재산이기도 하지만 소득창출 투입재이기 때문에 이중 계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농지를 활용하고도 소득이 낮다는 것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에 조정이 필요할 것임.</p>
E	<p>고민해본 바가 없어 답변이 어려움.</p> <p>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의 비율, 그리고 소득 분포 및 근로장려세제액의 분포 등이 종합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만 답변이 가능할 것임.</p>
F	<p>재산합계액 제한은 지역에 따라 상이한 지가 때문에 일괄적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됨.</p>
G	<p>잘 모르겠습니다. 재산합계액 2억원은 토지기준시가의 상승으로 너무 적은 듯합니다.</p>

10. 농업인들의 매출 결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과 같이 추적 가능한 적격증빙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 또는 강제화하는 방법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A	<p>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3억원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강제하고 그 미만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하는 방식이 소규모 농가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소비자 대부분이 카드결제를 원하고 있어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카드결제, 현금영수증발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 인터넷판매, 소비자직거래를 하는 농가는 스스로 카드결제에 참여할 것입니다.</p>
B	<p>판매 시 국세청 적격증빙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만 남기도록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인의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정책보험을 운영하거나 직불금을 준다고 할 때 적격증빙자료에 의한 수입만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한다면 적격증빙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p>
C	<p>다양한 농업인 지원 정책과 연계할 시 농업인 입장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출 결제는 구매자(산지상인, 도매시장 등등)가 하는 것이므로 농업인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할 수 있도록 유도 또는 강제화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 경우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타 분야(업종, 산업)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p>
D	<p>이를 인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임. 그 외 농협 계좌를 통한 거래결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도매시장 정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함.</p>
E	<p>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농축산물의 직판을 의미함. 직판이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간이매장이나 외부에서 이루어질 경우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카드결제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비과세 하에서 사업자등록을 유도 또는 강제하기 위해서는 과세체계에 편입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함.</p>
F	<p>포인트 적립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충분히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앱 등을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p>
G	<p>아직도 개인간 비공식 결제, 대물변제, 현금요구 환경이 많다보니 카드사용 일정비율을 정해 놓고 지속적으로 카드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p>

10-1. 위 10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p>일정규모 미만 농가의 카드결제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대체적인 방법에 의한 수입금액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p> <p>출하처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도매시장, 공판장, 농협 및 축협: 거래처에서 계산서 역발행 · 사업자판매분: 거래상대방이 계산서 요청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산서 발행하고 있음 · 인터넷판매, 소비자직거래: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 기타거래분: 무통장입금, 현금거래분 <p>— 전체 농산물 판매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p>
B	답변없음
C	<p>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출 결제는 구매자(산지상인, 도매시장 등등)가 하는 것이므로 농업인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할 수 있도록 유도 또는 강제화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 경우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타 분야(업종, 산업)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p>
D	답변없음
E	<p>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농축산물의 직판을 의미함. 직판이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간이매장이나 외부에서 이루어질 경우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p> <p>카드결제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비과세 하에서 사업자등록을 유도 또는 강제하기 위해서는 과세체계에 편입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함.</p>
F	답변없음
G	카드사용환경 미비, 개인간 대물변제 등 다양한 지출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음.

11. 농업인이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납부하는 세금 외에 어떠한 비용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지요?

A	직접비용으로 장부기장과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기 위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비용이 있으며 간접적으로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카드결제기 구매비용과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관련 증빙을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등 장부기장을 위한 자료준비 등에 따른 기회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B	농업인이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사회보험료의 발생 또는 인상이 예상됩니다.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거나 과거보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	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 등 대리인을 활용할 경우 각종 수수료 비용과 정보 수집 및 증빙을 위한 시간적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D	세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비용을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비용일 것임. 농협이 일정 부분 대행을 하면 비용이 절감될 것임.
E	장부의 기장 또는 기장 위탁에 따른 비용 소득신고 대행에 따른 비용 장부기장 교육 및 소득신고 교육에 따른 비용 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교육에 따른 비용 소득세 편입에 따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비용
F	경영기록이나 회계 등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 세무사 등과 같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담 가중이 예상되며, 세무서비스를 행정을 통한 지원이나 서비스 비용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건비 : 외국인, 내국인을 수시로 현장에 투입해야 함. 이 경우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을것임. ② 자재비 또는 유사 경비 : 비료, 농약, 자재, 도구, 농기구, 철물 등 잡화물품을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인근 영세업자로부터 외상구매가 흔히 있음. ③ (간)식비 : 인부 간식, 점심 등 제공이 빈번히 일어남. ④ 수리비 등 농기계, 시설 유지관리비 : 하우스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개인 기능공을 통하여 출장서비스 받는 경우, 정확한 자재, 부품비와 출장 인건비 산정이 어려움. 통합하여 일정금액 합의하여 현금 또는 통장입금 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상호 노동력으로 상쇄하기도 함. ⑤ 컨설팅 등 교육 비용 지불 ⑥ 공사비 또는 대금지불, 농자재로 구분하기 어려움 품목의 대금지불 : 토지의 경지정리, 무너진 축대 보강, 중장비 사용, 보강토 또는 밭파석 등 석자재 구입 및 운반비 포함하여 대금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운반비와 석재값을 구분하기 어려워 주변 업자나 차주에게 의뢰하여 지불함. 농로 등 개보수를 위하여 콘크리트 레미콘 사용 시 레미콘비용과 운전자에게 비공식적 팁이나 추가운임 요구하는 사례가 흔히 있음. ⑦ 작업복 의복비, 안전화, 식물소재구입, 주변 농민으로부터 현찰구매 또는 상호 대물교환 ⑧ 기타 농업목적의 출장 경비

12. 소득세법 개정방안의 하나로 비과세 수입금액(현 10억>1억)을 축소하되, 1억에서 10억까지는 비과세가 아닌 소득세 면제(소득신고 의무부여)로 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비과세 수입금액을 축소하여 소득신고 의무대상을 넓히되, 입법기술 변경(비과세→면제)을 통해 농업인의 세부담 증가 최소화
 - 비과세 수입금액을 영세농을 제외하는 수준(1억~2억)으로 축소하되 10억 원까지는 소득세 면제, 향후 비과세 수입금액 단계적 축소
 - 비과세와 면제는 과세대상 소득에 불포함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같은 효과이나 면제는 납세 신고의무 존재

A	<p>소득세 신고를 법에 강제함으로써 농가소득과약이 용이할 수 있으므로 비과세 축소하고 소득세 면제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신고에 따른 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소득세 신고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농협 등이 기장업무대행)하고 소득세 신고에 따른 소득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등 보험료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 외에 추가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p>
B	<p>면제 방식은 세부담은 없으나 소득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세부담이 없다는 점이 소득신고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의 의무가 없으므로 농업인 입장에서는 소득신고를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고 국세청은 소득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과할 유인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세한 농업인에 대해서까지 소득미신고에 따른 세무조사 등의 후속조치를 하기에는 국세청의 행정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타 분야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고 특정 산업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p> <p>따라서 사전에 면제구간을 정하는 방식보다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설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되 사후적으로 세부담을 없애주는 것이 소득신고를 보다 더 확실하게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또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소득세 감면을 위해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므로 이를 농업에 적용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p>
C	<p>매출액이 일정액 이하인 농업인(농가)에 대해 소득세 면제(소득신고 의무부여)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10억원은 현재 기준과 같아 너무 높으며(세입 차원에서 증가는 없이 세제 행정 비용 및 농업인 세제 신고에 따르는 각종 비용만 증가), 이를 좀 더 낮추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또한 농업인이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과세가 없다면 신고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 정보를 활용한 농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면제 기준은 점차적으로 나뉘갈 필요가 있습니다.</p>
D	<p>수입금액을 축소하고,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수입금액 1억원으로 하면 대상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제사업자의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10억보다는 7억원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수입에서 제외되고 있는 곡물 생산도 포함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p>

E	<p>비과세 수입금액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함</p> <p>1억원에 대한 기준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면밀한 분석과 논리로 기준액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p> <p>납세의무가 주어질 경우 자료 수집 및 기장, 증빙, 신고에 따른 비용 발생 등 납세 협력 비용이 소요됨. 과세당국에서는 과세액에 차이가 없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식될 것임.</p> <p>비과세에서 면제로 전환할 경우 시기적인 문제이지만 면제 금액의 축소가 예견되기 때문에 저항이 클 수 있음. 1억원에 대한 기준과 연계하여 논리가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p>
F	12에서와 같이 대규모 전업농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개선해나가는 방향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함
G	답변없음

13. 농업인에게 사업자등록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A	<p>가. 농업인 신용평가지 신용가점 부여 나. 정책자금 등 지원시 우선권 부여 다. 지원사업선정시 가점부여 라. 소득세 신고 비용지원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운영 로컬푸드 입점 등 우선권 부여</p>
B	<p>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정책금리 인하, 대출한도 증액, 대출기간 연장 등의 금융 관련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농업인은 주로 상업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영자금 조달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만 대상으로 수입보장보험 등 수입자료를 기반으로 농가 단위의 소득안정제도를 실시한다면 사업자 등록 수요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p>
C	<p>농업인 소득 파악을 위한 세제 개선은 무엇보다 소득 및 경영 안정과 농업인의 기업가적 경영을 위한 정책 확대를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 농업재해보험, 농신보 등 다양한 농업정책 대상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 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득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파악될 경우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보다 많은 정책(예: 농업소득안정계정)을 개발하여 사업자 등록 동기부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소득안정계정 도입> 최근 3개년도 평균 등 개별 농업경영체의 기준소득을 설정하고, 소득과 보장 수준에 비례하여 개별 농업인 계정 지원 기준 소득의 80%, 85%, 90% 등 소득 보장 수준을 농업경영체가 선택 소득과 보장 수준에 따라 농업경영체와 정부의 계정 적립 규모 차별화 농업소득안정계정을 활용하여 소규모 위험 대응 농가단위 경영안정 강화 농업경영체의 소득이 기준소득 또는 보장 수준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농업경영체가 적립금을 납부 농업소득이 보장 수준 미만인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립된 개별 계정에서 소득 보전 · 계정 인출 시기와 방법, 규모 등에 대한 상세 규정 필요 <참고> 황의식 외. 2022. 농업 혁신과 농촌 재생을 위한 농정 전략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p>
D	<p>재해보험(농작물, 축산) 보험료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득파악이 가장 필요한 정책사업이 재해보험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p>
E	<p>정책사업 참여의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이미 농업경영체등록제에서 경험한 바 있음. 다만, 농업경영체등록은 내용과 절차가 단순하고 임의등록방식이기 때문에 농가에게 큰 부담이 없으나, 소득신고는 기장과 신고라는 생소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임. 농가수입보장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도 한 방법임. 그러나 이 보험상품의 설계 및 운용은 소득신고 자료 대비 더 많은 정보가 요구되고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용에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정책사업 참여에 대한 자격조건 부여 또는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비용의 발생 부담이 없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p>
F	<p>답변없음</p>
G	<p>사업자등록 농업인에게 각종 사업예산 편성하고 지원정책을 신규로 실시 체계적이고 기업농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위한 지원정책 발굴</p>

14. 상기에 서술된 부가가치세 개정 또는 소득세 개정 중 어느 방안이 농업인 소득 파악에 실효성·효과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A	<p>소득세 개정을 통하여 상위 10%의 농가가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소득세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농축수입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하고 세율은 0%로 하는 것이 실효성과 효과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농가(비과세 대상이나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은 농가포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닌 농가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한다면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p>
B	<p>당장 소득파악의 관점에서는 소득세 개정이 우선되는 것이 실효성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개정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형태의 소득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p> <p>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면서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자료를 활용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활용한다면 소득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p> <p>부가가치세 과세는 사업자가 매출과 매입을 신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소득세 과세의 기초자료가 확보되므로 소득파악에 실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 거래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이 일반 사업자로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 신고를 하는 것은 소득파악의 기반을 만드는 일 이 됩니다.</p> <p>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물가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은 장기 과제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p>
C	<p>부가가치세를 개정하면 소득 파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부가가치세 개정은 소득세 개정보다 제도의 성격 상 농업 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조세특례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세율에 따라 농산물 수요와 공급, 농산물 가격, 소비자 후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p>
D	<p>소득세는 지금도 도입된 것이어서 적용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부가가치세 부과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재부 등에서는 물가상승 우려 등으로 기피할 것으로 생각됨. 소득세 도입 후 부가가치세를 도입</p>
E	<p>단계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개정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 개정이라는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함.</p>
F	<p>답변없음</p>
G	<p>답변없음</p>

15. 기타 농업인들의 소득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제도, 환경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p>A</p>	<p>농업인들의 고령화, 컴퓨터운영능력, 읍면지역 및 농가재상의 현금거래관행, 일용직 및 외국인 고용시 지급조서의 제출의 한계(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생활보호 대상자 등이 소득 신고에 대한 저항이 높음)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소득세 체계에 의한 정상적인 장부기장과 세무신고가 어렵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의 세무신고대행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기 어려운 형편입니다.</p> <p>가. 비과세 대상금액을 축소 및 통일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10억원, 축산업은 축종별 마리수에 대한 비과세와 소득금액 3천만원에 대한 비과세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의 농가평균 수입금액 등을 파악하여 농가 중 일정비율 이상(상위 20% 등)이 신고가 가능하도록 비과세 수입금액을 축소하고 작물재배 및 축산업 동일하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p> <p>나. 농업생산자 단체가 농업인의 장부기장 및 세무대리를 가능하도록 세무사법 등을 보완 농업인들의 세무신고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생산자단체인 농협, 축협, 임협 등이 직원들을 고용하여 농업인들의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고 농협 등이 대리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집계표 등 관련자료를 세무대리인(현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이 세무신고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p> <p>다.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면제 규정의 신설 비과세에서 면제로 전환하여 소득세부담 경감- 일정수입금액 이상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소득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대하여 소득세감면을 추가로 제공하여 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세를 축소하고 소득세 감면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세 신고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p> <p>라. 농업인 금융신용확대 소득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 농업인들의 금융이 신용대출이 아니라 담보대출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세 신고를 하는 농업인들에 대하여 소득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자유롭게 금융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과세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소득율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방법과 농업의 특성상 연도별 소득의 변동성을 고려한 농업인들의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p> <p>마. 가족간의 동업자 제도 도입 한세대에 의한 농업이 아니라 부모세대와 성인이 된 자녀세대가 동일한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간에 동업자로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시 동업자로 인정하고 동업율에 따라 각자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업을 자연스럽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p> <p>바. 가업상속공제제도 현재 농업 중 종자와 묘목을 제외하고는 가업상속공제가 아닌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10년(기존 2년) 이상 영농한 부모로 영농기간이 가업상속공제에 맞추어 영농기간이 확대되었으며 영농상속공제금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p>
----------	--

	<p>소득세 신고를 수행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금액을 확대하여 대규모 농가의 소득세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영농 기업이 세대간에 원활하게 승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p> <p>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농업인은 영농상속공제제도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대신할 수 있도록 공제금액을 10년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초과 500억원 으로 일반 기업의 50%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p>
B	<p>농업인의 소득 과약을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세 없는 상황에서는 소득신고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세가 전제되어야 검증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자료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세제 개편을 제외한다면 납세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에 대한 세무 회계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상담과 일부 절차에 대한 대행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p>
C	<p><input type="checkbox"/> 농업인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개편</p> <p>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으로 농업인 지원 정책 효과성 확대</p> <p>다양한 조세특례를 통한 농업부문 조세지출지원을 재정사업지출로 전환</p> <p>농업분야 소득세·부가가치세 세수를 기반으로 농식품 분야 재정사업 지출지원 확보</p> <p>필요한 재원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부문 소득세* 및 농축산물 부가가치세** 부과금을 농특회계 세입 재원으로 확보하여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사업 연계 강화</p> <p>* 현 과세범위 작물재배업 부과금을 농특회계 세입 일차적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 추진</p> <p>** 현 수입농산물 관세액,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전액은 농특회계 세입 원입.</p> <p>저소득층의 농축산물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추가 세수를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품 직접 지원 재원으로 활용</p> <p>부가가치세 세수 재원 확보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정책 강화 뿐 아니라 투명한 농산물 유통으로 수급정책 효과 배가</p> <p><input type="checkbox"/> 지역대학 및 농협 등과 연계한 농촌지역 세제 인프라 확충</p> <p>농업인의 소득신고를 위하여 신고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p> <p>소득신고를 위한 기초증빙자료의 수집 및 보관, 장부기장, 서식작성 및 제출 등 일련의 행정업무가 납세자에게 정신적·경제적 비용을 야기</p> <p>특히, 초고령사회이고, 금융접근성이 매우 낮은 농촌지역 특성 상 납세협력비용이 더 크게 발생</p> <p>지역대학 및 농협, 농업인 단체, 세무전문가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편리하게 소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p> <p>< 참고 > 황의식 외. 2022. 농업 혁신과 농촌 재생을 위한 농정 전략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p>
D	<p>농업은 연도별로 손해도 보고, 소득이 갑자기 증가하기도 하는 변동성이 높은 산업임. 따라서 당년도 주의의 과세보다는 3~5년 연결하여 납세하도록 하여, 재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세 분 중 일정부분을 환급하여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p>
E	<p>답변없음</p>
F	<p>법인경영체, 대규모 전업농이나 축산농가,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마을 단위 사업체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범실시 하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임</p>
G	<p>소득과약의 목적이 통계를 위한것이지 개별 농업인에게 과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본래의 취지를 이해시키기 위한 사전 교육, 인식제고가 필요함.</p>

<첨부2> 해외제도 요약(OECD(2020))

1. 소득세

국가	특례규정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생산자(Primary producers)에 대한 소득평준화 제도(income averaging system) - 농장 관리 예금 제도(Farm Management Deposit Scheme)_소득 안정화 도구 - Double wool clip의 조기 판매 이익 과세이연 - 가축의 강제처분 또는 폐사로 인한 소득의 과세이연 - 손실, 목재 또는 가축에 대한 보험 보장 확대 - 지속가능한 농촌용수 및 기반시설 프로그램(Sustainable Rural Water Use and Infrastructure Programme)으로부터의 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다양한 활동에 대한 세금 공제(예: 물 관리 비용(water management cost)에 대한 감가상각 가속화, 펜싱(fencing) 및 사료 저장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가속화).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는 시장 가치가 아닌 농장의 평가 가치(Einheitswert)를 기반함 - 평가액 75,000유로 미만일 경우 과세소득은 평가액의 42%(완전단일세율) - 평가액 75,000유로에서 130,000유로 사이의 농부는 과세 소득의 70%(축산 농장의 경우 80%)를 비용으로 절감 가능(부분 단일세율). - 소규모 생산자는 현금 주의 회계 적용 가능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의 80%가 단위 평가당 부문 평균(sector average per unit valuation)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 - EU 직접 지원금은 12.5%, 기타 EU 지원 조치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이 부과 - 자본 및 이자 보조금은 면세 - 이익에 대해 이전 3년 동안의 손실공제가 가능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주의 회계 - 연 1회 세금분할 납부(4회 아님) - 소득 대비 농업사업손실 50% 공제 가능(농업이 주요 소득원인 경우) - 20년 이월, 3년 소급 손실공제 (농업이 개인소득의 주된 원천이 아니고 농업에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 손실 발생 연도에 현금주의를 회계를 하고 있는 농민의 소득 평준화(income smoothing) 가능(재고 조정 가능) - 특정 유형의 자본적 지출 공제 가능 - 과세 연도가 끝날 때까지 세금납부를 지연시키는 이연 현금 구매 티켓(Deferred Cash Purchase Ticket) 가능 - 가축 손실로 인한 수입 이연 - 가뭄과 홍수로 인한 사육 가축의 판매로 인한 세금 유예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농부에 대해 추정 소득(presumed income)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
콜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소득결정에 있어 특별한 계산 방법 적용 - 풍력, 바이오매스 및 농업 잔류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판매로 인한 소득에 대한 면제 - 2014년 이전에 재배된 새로운 다년생 작물에 대한 우대 세율 - 주식시장에 상장된 농업 회사에 대한 투자는 세액 공제 적용 가능 - Zones Most Affected by Conflict 중 하나에 신설된 신규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 Rural Capitalisation Incentive의 일환으로 농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면제 - 26만 달러 이상의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은 10년간 소득세 면제

코스타리카	유기농 생산자는 다양한 생산 단계에서 사용되는 장비, 기계 및 투입물에 대한 수입관련 세금과 작업 차량에 대한 수입 관련 세금이 면제
크로아티아	- 소득이 HRK 300,000 이하인 농부는 정률(flat rate)로 세금 부과 - 소득이 HRK 80,500 이하인 소농은 소득세가 면제 - 비선호 지역에 있는 농부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
체코	- 자영업 농민은 소득의 80%의 정액요금을 비용으로 공제 가능 (농업인 전용은 아니지만 농업인에 적용되는 최대금액이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큼).
덴마크	특혜 없음
에스토니아	개인 농업인은 자체 생산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에서 2,877유로까지 공제 가능
핀란드	특혜 없음
프랑스	- 2년 평균 매출액이 350,000유로 미만인 농부의 현금주의(Cash accounting) 회계 적용 - 3년 평균 매출액이 82,800유로 미만인 농부 중 micro BA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농민에 대해 소득 평준화(income smoothing). 과세 소득은 과세 연도 및 이전 2년 동안의 3년 평균 수입에서 비용에 대한 고정 요율 87% 공제한 수치임 - 농업인이 소득의 최소 50%에서 100%까지 공제가 가능한 예방적 저축(DEP, déduction pour épargne de précaution)을 적용하려면 저축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비에 대해 10년 이내에 사용 - 소득 평준화 제도(income smoothing measures) 적용 - 정착 보조금을 받고 농사를 짓는 젊은 농부들은 처음 5년 연속으로 그들의 과세 농업 소득을 줄일 수 있음 - 5년에 걸쳐 세금 이연 가능
독일	- 20 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정률(flat rate)를 적용하여 과세 소득을 추정 - EUR 30,700유로 미만의 매출(Gross income)이 있는 독신 농업인에 대해서는 EUR 900 공제 가능(EUR 61,400 미만의 매출(Gross income)이 있는 혼인한 농업인 부부의 경우 EUR 1,800 공제 적용) - 소득 평준화(income smoothing) 제도
그리스	- Pillar I에 따른 투자 보조금 및 기타 보조금은 과세되지 않음 - 이익에는 EU의 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Pillar I에 따른 직접 원조 보조금 금액 즉 기초 및 EUR 12,000을 초과하는 녹색 보조금과 결합 원조 금액을 포함함
헝가리	- 소득이 800만 HUF 미만인 소규모 농업 생산자(전체 농부의 89%)와 농업 소규모 소유자(소규모 범주 내 하위 집합(해당 범주의 97%를 차지))에 특별 세제 적용 - 농지임대소득은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면제
아일랜드	- 1차 생산자(Primary producers)에 대한 소득평준화 제도(income averaging system) - 특정지출에 대한 자본충당금 설정 - 농업용 건물 및 기타 공사에 대한 자본충당금 설정 - 재고(Stock) 증가에 대한 세제 특례: 일반 재고 25% 적용, 특정 청년 훈련 농업인에 대해 100% 적용, 등록 농가 조합 50% 적용, 농업 중단으로 인한 재고 이전 - 가축의 강제처분 또는 폐사로 인한 소득의 이연 또는 이연기간 동안 100% 재고 세제 특례 - 상속농장 파트너십(Succession Farm Partnerships Scheme) 제도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이스라엘	- 장비 및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가속화 - 농업기업 배당금 5년간 세율 인하(25% 또는 30% 대신 20% 적용) - 개인소득세 인하(누진세율 최고 구간에 47%가 아닌 30% 세율 적용) - 농업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청된 외국인 거주 전문가들은 세율 인하 적용
이탈리아	- 농림 소득은 부동산 소득으로 정의되며 실제 수익률이나 발생 소득이 아닌 지적 기준으로 결정되며, 수확은 토지와 건물의 평균가치로 추정되며 매우 낮은 편임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자영업자에 대한 급여 및 보상 전액 공제 - 농부들은 농업 수입의 손실을 3년간 이연할 수 있음 - 작물 소득 안정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가 해당 직불금을 농업 확장에 사용하였다면 해당 지급액을 누적하여 농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농업인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자산 손실을 3년간 이연할 수 있음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로부터의 소득은 과세 제외 - 식물재배소득은 매출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비과세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이 EUR 3,000 이하인 소규모 농가는 소득세 면제 - 농업과 농촌 개발에 대한 국가 원조와 EU 지원은 소득세 면제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R 45,000 미만의 수입(매출)은 소득세 면제 - 직접 및 기타 농업 보조금 지급에는 소득세가 부과됨
멕시코	“농림어업체제“(AGAPE: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Regime)에 따른 농업활동에 대해서는 면세 또는 세율인하로 특별세제 적용
네덜란드	특정 삼림과 자연 프로그램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은 소득세에서 면제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평준화 제도(income equalization scheme) 적용 - 농업을 위한 토지 개량은 즉시 소득에서 공제됨(자본으로 처리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각되지 않음) - 농장의 침식을 위해 나무를 심거나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은 소득에서 즉시 공제 - 농부들은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 최대 7,500 뉴질랜드 달러의 공제 청구 가능 - 농업, 원예, 양식 및 임업 개선에 대한 지출에 대한 공제는 감소된 가치에 비율을 곱하여 공제 금액 계산 - 기상악화 및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 지원 - 농가(farmhouse) 관련 비용이 농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면 공제 가능 - 가축을 평가하는 복수의 방법 적용 - 자연 표준 비용 체계 또는 집단(herd) 체계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소득이 NOK 90,000 이하인 농부는 과세소득에서 100% 공제 가능. NOK 90,000 초과하는 소득은 최대 NOK 190,000(소득 수준으로 NOK 353,000)에 도달할 때까지 38% 공제 가능. NOK 353,000을 초과하는 소득은 NOK 190,000까지 공제할 수 있어 농부당 NOK 42,000(약 USD 4,580)의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새롭개 토지를 개척하는 비용은 공제 - 비선호 지역에 투자보조금을 사용하여 건설된 건축물의 총비용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이 되어 세제 혜택 제공(건축물의 장부가액에서 보조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님) - 모피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평준화(Income equalization)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물품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소득세 부과(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2~5%에 불과) - 과세 소득은 평균 생산 기준 또는 계정을 기준으로 설정됨 - 95%의 농업인에 대해 농업 소득은 수입을 기준으로 과세되지 않고 대신에 재산세 과세
슬로바키아	- 특혜 없음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가족 농장 소득은 농지와 임야의 ha(토지 지적 기준)당 계산된 대표소득(경제 계정에서 가져옴)의 5년 평균을 기준으로 정해짐 - 농업보조금(친환경적 생산을 지원하는 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의 약 50%가 과세소득에서 제외 - 기계 및 장비에 대한 투자는 소득에서 공제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 소득 계산을 위한 추정 방법이 적용되는데 매출에서 각 농업 생산 시스템의 평균 비용을 추정한 고정 지수 숫자 곱한 다음 생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수 조정을 수행 - 농업 소득의 2%를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돈 및 양계업 소득의 1% 원천징수 - 농부들은 매 분기마다 그들의 매출액의 2%의 세금을 납부 - 특정 EU 농업보조금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포함되는 보조금의 경우 승수로 조정됨 - 청년농업인 5년간 과세소득 25% 감면 적용
스웨덴	- 특혜 없음
스위스	- 특혜 없음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 목적으로 소득 평준화(income averaging) - 취미로 하는 농업을 하는 농부(Hobby farmers)들은 농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다른 곳으로부터의 수입에 공제 가능 - 가축을 재고가 아닌 자본 자산으로 취급 가능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주의 회계 적용 가능 - 소득 평준화(income averaging) - 매입 첫째 자본 자산 공제 가능 - 특정 농장 자산 개발 비용을 비용이 발생한 연도의 과세 소득에서 공제 가능(사육 또는 가축을 특정 나이까지 기르는 것과 관련된 비용 등) -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토양 및 물의 보전에 관한 지출에 대한 공제 가능 - 농업에 사용되는 자산(i.e. 농지, 건물, 기계 및 낙농, 육종 또는 스포츠 목적으로 보유된 가축)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경상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보다 유리한 세율의 자본 이득세 과세

2. 부가가치세

국가	기본세율	매출세액	매입세액
호주	10%	- 대부분의 식품은 GST 면제	- 일부 농지는 GST 면제
오스트리아	20%	- 식료품에 대해서는 낮은 VAT을 적용 - 농업인들은 flat rate scheme에 따라 보상 비율(compensation percentage) 적용 가능	
벨기에	21%	- 일부 식품의 경우 낮은 VAT을 적용 - 농부들은 flat rate scheme에 따라 보상 비율(compensation percentage) 적용 가능	- 낮은 VAT 율은 일부 농업 투입물에 적용
캐나다	5%	- 대부분의 농산물에 0의 연방 GST 적용	- 대부분의 농장 매입건에 대해 0의 GST 적용
칠레	19%	- 특례 없음	- 특례 없음
콜롬비아	19%, 5%	- 대부분의 농가 생산품에 대해 VAT가 부과되지 않음	- 대부분의 농장 투입물과 농업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에 대해 VAT가 부과되지 않음
코스타리카	13%, 4%, 2%, 1%	- 모든 기본 식료품의 판매에는 낮은 VAT가 적용	- 농업 투입물의 판매에는 낮은 VAT가 적용 -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 기계류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
크로아티아	25%	- 선별된 식품에 대한 낮은 VAT가 적용	- 농업 투입물(사료, 종자, 비료 등)에 낮은 VAT가 적용
체코	21%	- 대부분의 농산물(음식 및 음료), 동물 사료, 살아있는 동물, 씨앗, 식물 및 식품 준비 첨가물에 낮은 VAT 적용	- VAT 특례 없음
덴마크	25%	- 특례 없음	- 특례 없음
에스토니아	20%	- 특례 없음	- 특례 없음
핀란드	24%	- 식품에 낮은 VAT 적용	- 동물 사료에 낮은 VAT 적용 - 농업에 사용되는 전기 관련해서는 환급
프랑스	20%	- 식품에 낮은 VAT 적용 - 판매 수량에 기반한 농업의 두 가지 VAT 보상 제도: RFA와 RSA	- 유기비료 및 투입물에 대한 낮은 VAT 적용
독일	19%	- 식료품에 적용되는 낮은 VAT 적용 - 농부들은 flat rate scheme에 따라 보상 비율	
그리스	24%	- 감소된 VAT는 농업 생산품에 낮은 VAT 적용 - 매출액이 15,000유로 미만이고 총 보조금이 5,000유로 미만인 농가는 국가가 매출액에 추가 비율을 적용하여 환급 가능	- 낮은 VAT가 농업 매입 건에 적용
헝가리	27%	- 특정 농산물에 대한 낮은 VAT 율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VAT 등록 농부는 매입액에 대해 납부한 VAT를 보상하기 위해 가공업자에게 판매되는 농작물 및 축산물에 대해 일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아일랜드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 또는 낮은 VAT를 식료품에 적용 - Flat rate scheme에 따라 농부들은 보상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관련 매입액에 0 또는 낮은 VAT 적용 - 농장 건물 및 구조물 등에 납부한 VAT를 환급 요청할 수 있음
이스라엘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한 과일 및 채소에 대해 0의 VAT 적용 	
이탈리아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에 낮은 VAT을 적용 - 농민들은 flat rate scheme에 따라 11가지 다른 보상을 적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매입 건에 대해 0의 VAT 적용
일본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낮은 VAT을 적용(8%) 	
한국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및 가공되지 않은 식품에 대해 VAT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매입액에 대해 0의 VAT 적용
라트비아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한 과일과 야채에는 낮은 VAT율이 적용 - 농부들은 flat rate scheme에 따라 보상 비율 적용 - 곡물 및 기름 종자 공급에 대한 VAT는 곡물 수령자가 지불해야 함(VAT reverse charge mechanism). 	
리투아니아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ha 미만 또는 매출액 45,000유로 미만의 농가는 부가가치세 납부자로 등록할 의무가 없으며 flat rate scheme에 따라 일정 비율의 compensation percentage를 적용할 수 있음 	
멕시코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생산품에 0의 VAT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투입물에 대해 0의 VAT를 적용
네덜란드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농산물(식료품, 화훼 포함)은 낮은 VAT를 적용 	
뉴질랜드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혜 없음
노르웨이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음료에는 낮은 VAT를 적용 - 농민은 다른 산업의 납세자에 비해 긴 VAT 과세기간을 가지고 있음 	
폴란드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VAT율은 여러 가지 기본 식품에 적용 - 농민들은 Flat rate scheme에 따른 보상 비율(compensation percentage)를 적용할 수 있음 	
슬로바키아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VAT율이 식품에 적용 	
슬로베니아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소득이 7,500유로 미만인 농가 농가는 Flat rate scheme에 따라 보상비율을 적용(판매 가격 대비 8%) - 낮은 부가가치세율은 모든 식용 농산물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농업 매입액에 낮은 VAT를 적용

스페인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VAT율은 식품에 적용 - REAGP 산하 농가는 Flat rate scheme 하에 보상 비율을 적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VAT율은 농업 매입액에 적용
스웨덴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및 비알코올 음료에 낮은 VAT율 적용 	
스위스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개인 농장에서 재배), 소 판매업자에 의한 소 판매, 가공을 위한 우유 수집 센터에 의한 우유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 식품은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현장 작업)는 낮은 VAT율 적용 - 농업에 사용되는 특정 매입 건은 낮은 VAT율 적용
영국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식료품에 0의 VAT율 적용 - 농업에 두 가지 VAT 보상 제도: Agricultural Flat Rate Scheme(비 VAT 등록 농부) 또는 Flat Rate Scheme(모든 VAT 등록 사업자) 	
미국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주에서 가정용 식품에 대한 판매세의 일부 또는 전액 면제 	